

---

충청남도 농림축산국 - 농업기술원  
업무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

2020. 12.



**충청남도의회**



# 제 출 문

충청남도의회 귀하

충청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의뢰로 본 보고서를  
『충청남도 농림축산국 - 농업기술원 업무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 12.

연구기관명 : 지역재단

연구책임자 : 서 정 민 지역순환경제센터장

공동연구원 : 박 진 하 지역순환경제센터 실장

배 재 은 지역순환경제센터 팀장

연구보조원 : 김 완 택 기획관리실장



# ◆ 목 차 ◆

I. 연구 개요	3
1. 연구 배경과 목적	3
2. 연구 기본인식과 주요내용	5
II. 자치분권에 따른 재정분권 동향	9
1. 자치분권에 따른 지방농정 추진여건 변화	9
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포괄보조금제도 개편 방향	14
3. 계획협약제도 도입의 의미와 주요내용	25
III. 농정 틀 전환과 농정추진체계 논의 동향	31
1. 농어업·농어촌 분야 대전환을 위한 그린뉴딜의 방향과 과제	31
2. 직접지불제 확산에 따른 농정 추진체계 변화 방향	35
3. 정책 융복합(협치) 확산과 중간지원조직 제도화 촉진	38
4. 농정거버넌스에 관한 논의 동향	49
IV. 농림축산국-농업기술원 현황 진단	57
1. 농림축산국-농업기술원 기본 현황	57
2. 중앙 농정추진체계 재편 논의 동향	73
3. 충남 농정목표와 농정추진체계 분석	88
4. 충남 농정 운영의 특징과 과제	93
V. 농림축산국-농업기술원 업무협력 활성화 방향	103
1. 충청남도 자치농정 틀 재정립	103
2. 농림축산국-농업기술원 업무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108
3. 농림축산국-농업기술원 업무협력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	121
참고문헌	127
[부록] 농림축산국-농업기술원 사업예산 분석(2020년 기준)	131

## ◆ 표목차 ◆

[표 1] 2020년 재정사업 지방이양 현황 .....	2· 1
[표 2] 균특회계 편성체계 .....	41
[표 3] 2021년 지역자율계정 포괄보조사업 목록 .....	6· 1
[표 4] 2021년 기준 시도 차등지원 평가항목(안) .....	8· 1
[표 5]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2018.2.28.)에 따른 균특회계 변경 사항 .....	9· 1
[표 6] 재정분권(2018년 10월)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지방이양 대상사업 ..	2
[표 7] 2018년 기준 부처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규모 .....	2· 2
[표 8] 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지방이양사업 포괄보조사업 내역(2019년 기준) .....	3· 2
[표 9] 기존방식과 계획계약방식의 비교 .....	7· 2
[표 10] 아젠다별 협약대상 사업군 .....	1· 4
[표 11] 농림축산국 - 농업기술원 기능별 조직 현황 .....	7· 5
[표 12] 농림축산국 - 농업기술원 간 사무분장 내역 .....	9· 5
[표 13] 농림축산국 - 농업기술원 기본현황 비교 .....	0· 6
[표 14] 농림축산국-농업기술원 사업예산 분석(2020년 기준) .....	1· 6
[표 15] 전북 농축산식품국 - 농업기술원 기능별 조직 현황 .....	2· 6
[표 16] 전북 농축산식품국 - 농업기술원 사무분장 내역 .....	3· 6
[표 17] 전라북도 농식품인력개발원 주요연혁 .....	4· 6
[표 18] 전라북도 농식품인력개발원 조직별 인원 현황 .....	5· 6
[표 19] 전라북도 농식품인력개발원 2020년 교육과정 .....	5· 6
[표 20] 충남, 전북 농가 및 농가인구 현황(2019) .....	6· 6
[표 21] 충남과 전북 경지면적 현황(2019) .....	6· 6
[표 22] 충남과 전북 농업소득 현황(2019) .....	7· 6
[표 23] 충청도와 전북도 농정조직 현황 비교 .....	8· 6
[표 24] 충남 농림축산국 조직 인원 현황 .....	8· 6
[표 25] 전북 농축산식품국 조직 인원 현황 .....	8· 6
[표 26] 충남 농림축산국 조직도 .....	9· 6
[표 27] 전북 농축산식품국 조직도 .....	9· 6
[표 28] 충남 농업기술원 조직 인원 현황 .....	0· 7
[표 29] 전북 농업기술원 조직 인원 현황 .....	0· 7
[표 30] 충남 농업기술원 조직도 .....	1· 7

[표 31]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조직도 .....	27
[표 32] 중앙정부 전담 농정행정 분야 .....	37
[표 33] 농정사업의 유형화와 추진체계 방향 .....	47
[표 34] 농림축산식품부 조직개편 대안별 장단점(중장기 비교) .....	18
[표 35] 도별 농업 부문 예산 규모와 비중(2019년 기준) .....	9
[표 36] 도별 사업유형별 재정규모(2019년 기준) .....	9
[표 37] 농림축산국-농업기술원 사업예산 분석(2020년 기준) .....	9
[표 38] 충남 도내 시군별 공동체 통합부서 신설 현황(2020년 기준) .....	9
[표 39] 충남 도내 시군별 공동체 통합부서 신설 현황(2020년 기준) .....	11
[표 40]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주요내용 .....	11
[표 41] 협업 포인트 운영 규정 주요내용 .....	11
[표 42] 농림축산국-농업기술원 업무협력 모델 .....	121

## ◆ 그림목차 ◆

[그림 1]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	01
[그림 2] 지속가능 농정 철학과 패러다임 .....	3
[그림 3] 2019년 쌀 직접지불 추진 체계 .....	3
[그림 4] 포괄지원협약(계획협약)제도 본격 실시 .....	3
[그림 5] 농촌협약 정책의 기본방향 .....	3
[그림 6] 농촌협약의 기본개념도 .....	4
[그림 7] 농촌협약 기본구조 .....	4
[그림 8] 농촌협약 추진 절차 .....	4
[그림 9] 광역 지자체 기능 강화와 광역 중간지원조직 지원 확대 방향(예시) .....	4
[그림 10] 전라북도 농식품인력개발원 조직 .....	6
[그림 11] 미래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조직 재설계(중장기 1안) .....	7
[그림 12] 미래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조직 재설계 (중장기 2안) .....	7
[그림 13] 미래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조직 재설계 (중장기 3안) .....	7
[그림 14] 조직 개편안(1안) : 1관 3국 5담당관 15과 .....	8
[그림 15] 조직 개편안(2안) : 1관 3국 5담당관 16과 .....	8
[그림 16] 지방이양과 농림축산식품부 조직관리의 방향 .....	8



# 제 1 장

## 연구 개요

---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기본인식과 주요내용





# I. 연구개요

## 1. 연구 배경과 목적

### 1) 연구 배경

#### ■ 자치분권에 따른 농정<sup>1)</sup>의 지방분권화 확대<sup>2)</sup>

- 문재인 정부는 2018년“자치분권 종합계획”발표,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자치분권의지 표명. 같은 해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중앙-지방 간 기능조정** 추진 방향 발표
- 지방의 자율성·책임성 강화 및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재정분권과 국가 기능의 지방이양 추진
- 지역밀착형 사업을 중심으로 기능과 재원을 지방에 이양하여 2022년까지 국세 :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조정
- 조속한 성과 창출을 위해 1단계(‘19~’20), 2단계(‘21~’22)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
- 2020년 지방이양 대상 사업 최종 결정을 통해 10개 부처, 3개 청, 39개 세부사업(110개 내역사업)을 지방이양 결정
- 이러한 국가 행정체계 전반 자치분권 기조가 확대됨에 따라,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사무는 5개 세부사업, 13개 내역사업임
- 2020년 지방으로 이양된 자원 규모는 약 3.5조원이며, 이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관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비가 7,736억원 규모로 전체 재원의 20%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중앙주도 일률적 농정추진 방식에서 탈피, 행정체계 전반에 걸친 자치분권 확대에 대응하여 충남 기존 농정 추진체계에 대한 점검과 자치농정체계 구축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 필요

1) 본 보고서에서 “농정”은 기존 농업정책에 국한된 의미가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할하는 농촌정책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2) 농림축산식품부(2019). 『지방분권시대, 농촌정책이 가야 할 길, 제25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자료집.』

## ■ 공익형 직불제 도입과 농정 틀 전환 방향

-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과 1995년 WTO체제 출범 이후 한국 농업·농촌 정책은 생산 확대와 경쟁력 확보라는 산업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추진되어 옴
- 그러나, 최근 기후위기와 그린뉴딜,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순환형 먹거리 체계 구축, 후계농 육성 등 새로운 농정 이슈들이 대두되면서 기존 농정 틀 전환에 대한 농업계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음
- 특히, 2020년 중앙단위 ‘공익형 직불제’의 전면 도입과 지자체별 농민수당 또는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계기로 기존 농정 틀의 근본적인 전환과 이에 대응한 농정 추진체계 변화에 대한 논의가 확산됨
- 농정 틀 전환과정에서 기존 산업적 관점에서 ‘농업’에 대한 초점이 ‘농촌’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농정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음
- 이러한 중앙의 농정 틀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자치분권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효과적인 충남 농정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혁신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2) 연구 목적

### ■ 충남 농업·농촌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한 진단

-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확대에 따른 중앙사무의 지방이양과 재정분권을 둘러싼 논의 동향과 충남 지방농정의 대응 방향에 대한 검토

### ■ 충남 지속가능한 농정추진체계 전환을 위한 농정기구 간 협력 방안

-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계기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직불제 중심 농정으로의 전환’과 ‘농촌정책으로의 전환’, ‘통합적 먹거리 정책으로의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충남 농정기구 간 협력 방안 검토

### ■ 충남 농정기구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 제안

- 지속가능한 충남 농업·농촌 실현을 위해 농림축산국과 농업기술원 간 업무협력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제 제안

## 2. 연구 기본인식과 주요내용

### 1) 연구 기본인식

#### ■ 자치분권과 농정 분권화에 대응, 충남 농정추진체계 개편을 위한 기초연구

- 중앙주도 획일적 농정추진체계에서 탈피하여 지역주도 자치농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최근 ‘자치분권’ 기조에 따른 충남 농정추진체계에 대한 검토와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기본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를 수행함

#### ■ 직불제 중심 농정 틀 전환을 위한 충남 농정 비전과 목표 재설정

- 사람과 환경 중심 농정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중앙정부의 기본인식에 공감하며, 향후 공익직불제 중심 농정 틀 전환에 적극 대응, 기존 충남 농정 비전과 목표의 재설정과 이에 따른 농정기구 간 기능과 역할 변화 방향을 검토함

#### ■ 지속가능한 충남 농업·농촌 실현을 위한 농정‘융복합’과‘협치’제도화

- 그동안 농정 추진과정에서 산업으로서 농업과 공간으로서 농촌 정책이 분리되어 추진되고, 농업정책 내에서도 연계정책 간 칸막이로 인해 정책의 실효성을 얻지 못한 사례가 지속 발생
- 또한, 지방농정 추진과정에서 농업인과 지역주민, 행정 등 관련 주체 간 협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여전히 형식적 운영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함
- 본 연구는 향후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실현을 위해서는 관련 정책 간 ‘융복합’과 관련 주체 간 ‘협치’가 핵심 가치라는 인식 하에 진행함

### 2) 연구 주요내용

#### ■ 본 연구는 크게 5장으로 구성

- 제1장은 연구개요로 연구 추진배경과 목적, 본 연구의 관점 제시
- 제2장은 자치분권에 따른 재정분권 방향과 이에 따른 지방농정의 영향에 대해 살펴봄. 특히, 포괄보조금제도의 변화 방향과 중앙과 지방 간 계획협약제도 도입 등 향후 변화방향에 대해 검토함

- 제3장은 최근 중앙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틀 전환에 따른 농정 추진체계 개편에 관한 논의 동향을 검토함. 또한, 최근 중앙 부처 간 정책 융복합 추세와 지자체 단위 중간지원조직 제도화 방향에 대해 살펴봄
- 제4장은 충남 농림축산국과 농업기술원의 운영 현황을 진단하고, 농업·농촌 여건변화에 대응한 현 시점 충남 농정추진체계 관련 이슈를 정리하고 개편방안을 제시함. 또한, 자치분권과 농정 틀 전환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등 중앙단위 농정조직의 재편 방향에 대한 살펴봄
- 제5장은 지자체 단위 자치농정패러다임 확산과 직불제 중심 농정체계로의 전환에 대비한 충남 농정기구 간 업무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안함. 관련 조례 제정과 인사제도와 연계한 인센티브 도입 등 제도 개선방안 제안. 또한, 농정조직 간 업무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로드맵 제시
-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를 정리하고, 향후 충남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충남 농정추진체계 개편을 위한 추가 과제를 제안함

## 제2장

# 자치분권에 따른 재정분권 동향

1. 자치분권에 따른 지방농정  
추진여건 변화
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포괄보조금제도 개편 방향
3. 계획협약제도 도입의 의미와  
주요내용





## II. 자치분권에 따른 재정분권 동향

### 1. 자치분권에 따라 지방농정 추진여건 변화<sup>3)</sup>

#### 1)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 ■ 지방의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

- 자치분권 관계법령의 조속한 입법으로 자치분권의 실질적 도약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주민의 권리 명확화 ▲직접 참여제도 개선 ▲지방의회 역량 강화 등
주민조례발안법   (제정)	▲주민이 조례(안)을 의회에 직접 제출, 청구요건 완화, 심의·의결기간 규정
주민투표법  ·  주민소환법   개정	▲주민투표·소환 청구요건 완화·확정요건 도입, 주민투표대상 확대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571개 사무(66개법률) 이양,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지방사무 원칙

\* 자료 : 행정안전부, 2019년 업무보고

- 지방이양 필요사무 지속 발굴과 명확한 사무배분을 통한 책임자치 구현
- 법령 제·개정 시 자치권 침해여부를 심사하는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도입
- 자치단체 조직·인사운영의 자율성 확대로 사무이양의 완결성 제고
- 광역단체 실·국 설치 자율범위 확대, 기초단체 기구설치 탄력성 강화
- 중앙-지방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중앙지방협력회의’ 도입 추진

##### ■ 2020년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2021년부터 시행 예정

- 지방이양일괄법을 통해 지방관리항 향만시설의 개발과 운영권한, 지역 내 개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 사무,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등 16개 부처 46개 법률 400개 사무 지방이양 결정

##### ■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추진

-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등 6대 추진전략, 33개 과제로 구성,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이행상황 점검·평가 결과 반영

3)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2020) 『자치분권 시행계획』에 기초하여 요약 정리함.

[그림 1]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b>비전</b>	<b>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b>	
<b>목표</b>	<b>주민과 함께 하는 정부 · 다양성이 꽃피는 지역 · 새로움이 넘치는 사회</b>	
<b>추진과제</b>	<b>1. 주민주권 구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주민 참여권 보장</li> <li>② 숙의 기반의 주민참여 방식 도입</li> <li>③ 주민자치회의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li> <li>④ 조례 제·개정 시 주민직접발안제도 도입</li> <li>⑤ 주민소환 및 주민감사청구 요건의 합리적 완화</li> <li>⑥ 주민투표 청구대상 확대</li> <li>⑦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li> </ul>
	<b>2.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중앙-자치단체 간 사무 재배분</li> <li>② 중앙권한의 기능 중심 포괄 이양</li> <li>③ 자치분권 법령 사전협의제 도입</li> <li>④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li> <li>⑤ 대도시 특례 확대</li> <li>⑥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li> <li>⑦ 교육자치 강화 및 지방자치와의 연계·협력 활성화</li> </ul>
	<b>3.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li> <li>② 지방세입 확충 기반 강화</li> <li>③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li> <li>④ 국고보조사업 개편</li> <li>⑤ 지방교부세 형평 기능 강화</li> <li>⑥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및 합리적 개편</li> </ul>
	<b>4.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중앙-지방 협력기구 설치·운영</li> <li>② 자치단체 간 협력 활성화 지원</li> <li>③ 제주·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li> </ul>
	<b>5.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의정활동정보 공개</li> <li>② 자치조직권 강화 및 책임성 확보</li> <li>③ 지방인사제도 자율성 및 투명성 확보</li> <li>④ 지방공무원 전문성 강화</li> <li>⑤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 제고</li> <li>⑥ 지방재정정보 공개 및 접근성 확대</li> <li>⑦ 자치분권형 평가체계 구축</li> <li>⑧ 자치단체 형태 다양화</li> </ul>
	<b>6.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 제도 개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 모색</li> <li>② 지방선거제도 개선방안 모색</li> </ul>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 시행계획』, (2019년).

## 2) 중앙사무의 지방이양과 재정분권 동향

### ■ 지속적인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 국가사무와 자치사무 등 사무수행체계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법령상 사무 총조사」가 하반기 완료 예정, 조사결과 바탕 기관위임사무 등 지방이양 추진
- 올해 1월9일 제정된 『지방이양일괄법』은 2021년 시행에 앞서 관계부처와 자치단체의 추진상황을 점검·지원하고, 올해 하반기 지방이양비용평가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 지방이양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비용을 조사·산정 예정
- 2018년부터 올해까지 지방이양이 확정된 사무를 중심으로 이양대상사무를 목록화 하여, 연내 법안 마련을 목표로 후속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추진
- 수요자 중심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기능을 발굴·심의하고, 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과의 협업 제도화 방안 마련

### ■ 재정분권의 성과를 전국이 고루 누릴 수 있는 지방재정 혁신

- 2018년 10월 발표된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10%p 인상하는 1단계 재정분권 완료. 2019년 3.5조원 재정분권 완료, 이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재원규모는 7,737억원에 달함
- 2020년 기준 지방세 8.5조원 확충이 마무리되었고, 국세-지방세 7:3 달성을 위한 2단계 재정분권이 2020년 연내 추진 예정임
- 지방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최저기준(National Minimum) 보장적 복지사업에 대한 국가-지방간 부담체계를 개선하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지역밀착형 사업 등은 지방으로 과감히 이양하여, 지역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도록 유도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를 보완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sup>4)</sup> 도입
- 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지역상생발전기금 개편으로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

4) 고향사랑 기부제는 거주하는 지역과 고향이 다른 개인이 고향에 일정금액을 기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지역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계획임

- 지방소비세 6%p 추가 인상과 출연규모 및 자치단체 출연율 조정 추진
- 확충된 재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지방재정제도 계획성 제고
- 교부세 통보(12월 → 9월), 예산편성지침 시달(7월→6월) 등 예산 일정 조정
- 중앙과 지방 간 재정관계 재정립 차원의 재정분권 추진 검토

[표 1] 2020년 재정사업 지방이양 현황

(단위: 억 원)

소관	회계·기금	세부사업수		예산규모
		내역사업수		
농림축산식품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5	13	7,737
국토교통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5	5	7,519
환경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6	13	5,417
문화체육관광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4	15	3,942
	문화예술진흥기금	1	1	94
산림청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	32	2,071
행정안전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	1	2,585
해양수산부	일반회계	1	1	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5	13	2,359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	2	67
중소벤처기업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	1	1,274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	1	1,237
여성가족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	1	782
농촌진흥청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	9	352
문화재청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	1	245
고용노동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	1	2
합계		39	110	35,683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9), 『2020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

## ■ 중앙과 지방 및 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중앙-지방이 대등한 관계에서 소통과 협력 강화
- 자치단체 간 공동·협력사무 활성화, 광역적 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자치단체 간 다양한 협력과 행정·재정 지원 방안 마련으로 자치단체 간 협력 활성화

## ■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 자치단체의 조직·인사·재정의 자율성을 확대하되, 방만한 운용 방지를 위해 관련 정보 공개 확대
- 실국 설치기준의 일정범위(20%) 내에서 시도 기구 추가설치를 자율화하였으며, 시도지사가 자체 성과평가를 통해 상시기구 전환 여부 결정
- 자치단체 정원 관리 자율화에 따른 인력관리제도 개선 추진. 행정 환경과 사무 등 변수를 고려하여 적정인력 산정모형을 마련할 수 있게 됨
- 시도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시도 의회로 이양하여 의회 운영 자율성 확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하되, 의정활동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지방의원 겸직금지 대상을 명확화 하는 등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 자치단체 형태를 지역별 인구규모, 재정상황 등 여건에 따라 주민이 주민투표를 통해 선택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형태의 다양화 방안 마련

## 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포괄보조금제도 개편 방향

### 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기본구조<sup>5)</sup>

####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편성체계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는 2004년 1월 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한 특별회계로 2005년 예산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르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 “광역화, 효율화, 자율화”를 기조로 신지역발전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 예산부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전면 개편된 뒤, 지자체 자율성 제고 및 새로운 지역발전정책들을 뒷받침하기 위해 2015년 예산부터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
- 2018년 재정분권에 따라 다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개편

[표 2] 균특회계 편성체계

편성방식 \ 계정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지자체 자율 편성	시·도	①시·도 자율편성사업	-	③시·도,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 시·군·구 기반구축사업 등 포함	④시·도,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 시·군·구 기반구축사업 등 포함 ⑤특별지방행정 기관이관사무 수행경비
	시·군·구	②시·군·구 자율편성사업	-		
부처직접편성		-	⑥부처직접 편성사업	⑦부처직접 편성사업	⑧부처직접 편성사업

\* 자료: 기획재정부(202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

5) 기획재정부(202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참조하여 정리

### ■ ① 시·도 자율편성사업 [지역자율계정]

- 지역의 일반적 개발사업으로 각 시·도가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편성

### ■ ②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지역자율계정]

- 성장촉진지역 등 시·군·구 관련 기반구축사업으로, 해당 시·군·구가 지출한도(계속소요)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 편성. 단, 신규 소요는 부처가 공모를 통해 선정

### ■ ③, ④, ⑤ 자율편성사업 [세종·제주계정]

- 세종 및 제주계정 대상사업 중 부처 직접편성 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업군별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편성
- 단,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의 신규소요는 부처가 공모를 통해 선정

### ■ ⑥, ⑦, ⑧ 부처직접편성사업 [지역지원계정, 세종·제주계정]

- 광역협력권 지원을 위한 시·도간 연계사업 등 국가적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으로 각 부처가 시·도 발전계획 및 중장기 투자계획 등에 의거 지자체 요구 등을 받아 부처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

### ■ 균특회계 기본 구조상의 특징

- 범국가적인 통합 관리가 필요한 사업은 타 회계로, 지역 연계투자로 효율화가 가능한 사업은 균특회계에서 수행
- 지역자율계정은 시·도 및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으로 구성하고, 지역지원계정은 부처 직접편성사업으로 구성
- 균특회계 안에서도 재정효과가 특정지역에 국한되고, 지자체 자율성이 요구되는 사업은 지역자율계정에 포함
- 경제,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 및 권역의 협력이 필요한 사업은 지역지원계정에 포함

[표 3] 2021년 지역자율계정 포괄보조사업 목록

구분	부처	세부사업명	보조율	예산 내역사업
시도 자율 편성 사업	국토부	① 도시형교통모델	50%	·공공형택시지원 등
		② 주차환경개선지원	50%	·공영주차장건설지원
	농식품부	③ 반려동물산업육성	30~40%	·동물보호센터 건립지원
		④ 농촌형교통모델	50%	·농촌교통지원
	농진청	⑤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지원	50%	·농촌지도기반 조성
	문체부	⑥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40%	·공공도서관 등 (단, 작은도서관조성 국비70%)
		⑦ 체육진흥시설 지원	30%	·생활체육공원 등
		⑧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	50%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
	산림청	⑨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50%	·지자체 자연휴양림 조성 등
		⑩ 임도시설(국유림 제외)	70%	·임도시설(간선임도)
	해수부	⑪ 해양 및 수자원 관리	50%,70%	·연안정비 등
	행안부	⑫ 지역사회활성화기반조성	50%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조성 및 조사연구
	환경부	⑬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70%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등
시군구 자율 편성 사업	국토부	⑭ 성장촉진지역 개발	100%	·지역개발 지원 등
		⑮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50%	·우리동네살리기
	농식품부	⑯ 일반농산어촌 개발	70%	·농촌중심지 활성화 등
		⑰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70~80%	·취약지역개선 등
	행안부	⑱ 특수상황지역 개발	80%	·기초생활기반 확충 등

※ 자료: 기획재정부(2020), 『2021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 .

## 2) 재정분권에 따른 균특회계 개정 내용<sup>6)</sup>

### ■ 재정분권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2018. 2.28)

- 회계, 계정, 위원회 등 관련명칭 변경
  - \* 지역발전특별회계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생활기반계정 → 지역자율계정, 경제발전계정 → 지역지원계정
  - 지역발전위원회·기획단 → 국가균형발전위원회·기획단
- 균특회계 예산 편성 과정 상 균형위 의견제시 역할 강화
- 지자체는 4.30일까지 예산신청서를 중앙행정기관과 균형위에 제출
- 중앙행정기관은 지자체의 예산신청서 및 균형위의 의견을 기초로 작성한 예산 요구서를 5.31일까지 기재부에 제출
- 균형위는 균특회계의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을 5.31일까지 기재부 및 과기정통부에 통보
- 기재부는 지역위의 의견을 들어야 함 → 기재부 및 과기정통부는 균형위의 의견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 및 조정·배분하여야 함

### ■ 포괄보조 세부사업 추가

- ('18지침) 37개(시·도 31, 시·군·구 6) → ('19지침) 43개(시·도 37, 시·군·구 6)
- '18예산 편성 시 타 회계로부터 이관된 사업\* 추가
  - \* (국토부) 지방하천정비, 공공형택시지원, (농식품부) 농촌형교통모델, (문체부) 지역문화행사지원, (해수부) 수산물안전검사체계구축 등 5개 세부사업
- 사회적 가치 관련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 신설

### ■ 지자체의 사업선택 자율성 보장

- 문화·체육시설 건립 관련 문체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대상사업을 관련 법령에 명시된 경우로 한정
  - \* (변경 전) 국립박물관, 국립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공공도서관 등
  - (변경 후) 국립박물관, 국립미술관

6) 기획재정부, 「2019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을 참조하여 정리.

## ■ 균형위 평가 하위(미흡) 사업 구조조정 방식 개선

- (변경 전) 하위 세부사업별 금액을 '18년 대비 10% 감액  
⇒ (변경 후) 하위 사업들의 총액을 '18년 대비 10% 감액\*  
\* 하위 세부사업별 삭감률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
- (변경 전) 하위사업 예산은 '18년 대비 10% 감액  
⇒ (변경 후) 원칙적으로 '18년 대비 10% 감액하되, 하위사업 예산이 '17년 대비 '18년에 감소된 경우, '17년 대비 10% 감액\*  
\* '17년 대비 '18년 예산이 감소한 경우 기 구조조정된 것으로 간주

[표 4] 2021년 기준 시도 차등지원 평가항목(안)

'20년		'21년(안)	
① 균특회계 및 사업운영성과		① 균특회계 및 사업운영성과	
② 지역발전정책협조도		② 지역발전정책협조도	
	(생활SOC 투자)		(생활SOC 투자)
	(일자리사업 평가)		(지방이양사업 추진현황)
	(지자체 조기집행 실적)		(지자체 조기집행 실적)
③ 지역경쟁력향상사업지원		③ 지역경쟁력향상사업지원	
	(성장촉진지역 지원사업)		(성장촉진지역 지원사업)
④ 예산운용 성과 평가		④ 예산운용 성과 평가	

※ 기획재정부, 「2021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

## ■ 생활SOC 복합화 시설 적용대상 확대 및 보조율 인상

- 기존 균특회계 내 사업 간 복합화 시설뿐만 아니라 타 회계, 기금, 사업과의 복합화시설에 대해서도 보조율 인센티브 확대
- 기존 보조율에 추가로 +10%p 보조율 인상(정액보조의 경우 최대 +10억 원 증액 지원)

[표 5]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2018.2.28.)에 따른 균특회계 변경 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회 계 명	· 지역발전특별회계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 치 목 적	· 지역별 특성과 비교우위에 따른 지역의 특화 발전 지원 ·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경쟁력 강화 사업 효율적 추진	·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계 구 분	· 생활기반계정 · 경제발전계정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세종특별자치시계정	· 지역자율계정 · 지역지원계정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세종특별자치시계정
관 련 어 경	· 지역발전위원회·기획단 · 지역생활권 / 경제협력권 · 지역발전계획·시책	· 국가균형발전위원회·기획단 · 기초생활권 / 광역협력권 · 국가균형발전계획·시책
예 산 편 성 차		

※ 일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상 기한이므로 당해연도의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자료: 기획재정부(2020), 『2021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

■ 2020년 재정분권에 따른 군특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 주요 개정내용

- 2020년 중앙사무 지방이양에 따라 포괄보조 세부사업 목록 변경
- 2019년 43개(시도 37개, 시군구 6개)에서 2020년 20개(시도 15개, 시군구 5개)로 조정
- 2018년 10월 확정된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이양 대상사업은 2020년 예산안 편성 지침과 편성 세부 지침 및 보조금법 시행령에 반영

[표 6] 재정분권(2018년 10월)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지방이양 대상사업

부처		사업명	부처		사업명
농식품부	군특자율계정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li> <li>■ 농업기반정비</li> <li>■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li> <li>■ 반려동물산업육성 (공공동물장묘시설 설치지원) (반려동물지원센터 설치지원) (반려동물놀이시설 조성)</li> </ul>	농진청	군특자율계정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 (국내육성우수신품종보급) (농촌어르신복지생활실천시범) (농업활동안전사고예방생활화) (농업인가공사업장시설장비개선지원) (농업인조직체가공플랜트지원) (농업전문인력양성) (농가경영개선지원) (농업기계안전교육)</li> </ul>
	군특자율계정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농산어촌개발 (마을만들기) (기초생활인프라 정비)</li> <li>(농촌다움 복원) (농촌현장포럼) (농촌형공공임대주택) (농촌재능나눔) (기타협업)</li> </ul>			

※ 자료 : 기획재정부(2019), 『2020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 .

## 2) 포괄보조금제도의 개편<sup>7)</sup>

### ■ 포괄보조금의 개념 및 특성

- 포괄보조금 지원제도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자원 이전과 정책집행의 포괄성 및 자원배분의 재량과 자율성을 주요 가치로 지향
- 지출용도에 특별한 제한 없이 당초 사업목적에 따른 일반 재원으로 이용되는 일반 포괄보조금과 조건부 포괄보조금으로 구분

### ■ 용도지정과 지방정부의 부담금 여부에 따른 세 가지 유형 국가보조금

- **포괄보조금방식**은 중앙정부가 핵심 목표 또는 기능별 사업군을 포괄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배분받은 예산을 해당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선정하고 수행하는 방식
- 개별사업을 선정하고 가격을 설정하는 등 기존의 중앙정부가 담당했던 사업심의 및 운영과정의 핵심적인 결정기능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수행
-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을 대폭 확대하고 해당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사업운영을 가능하게 함
-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증진시킬 것으로 논의됨

### ■ 포괄보조금 방식의 주요 장점

- 기존 특별보조금방식에 비해 예산편성의 자율성, 사업 발굴 및 계획수립에서 자율성 확대. 지역에 적합한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고 계획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
- 지역에 적합한 사업 추진은 지역주민의 욕구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사업의 성과와 만족도를 향상시킬 가능성이 높음
- 사업조정 및 기획과정에서 유사 중복사업 예방 및 조정과 사각지대 해소가 가능하고, 조정과정을 통해 부처별 연계와 협력을 촉진함
- 기존 개별보조금 방식에서는 유사중복 사업을 조정할 유인이 적어 유사사업 추진으로 인한 예산낭비, 사업기획 및 실행과 관련된 인력의 비효율적 운용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지적됨

7)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8), 『포괄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을 참조하여 정리.

## ■ 부처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규모

-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이 가장 많은 부처는 국토교통부로 2,879,302백만 원으로, 지역자율계정 1,151,445백만 원, 균형발전계정 1,652,097백만 원임
- 농림축산식품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1,344,445백만 원으로, 지역자율계정 1,287,368백만 원, 제주특별자치도 계정이 42,107백만 원임
- 계정별로 살펴보면, 지역자율계정의 경우 총 5,264,103백만 원 중 국토교통부(1,151,445백만 원)와 농림축산식품부(1,287,368백만 원)가 46.3%를 차지

【표 7】 2018년 기준 부처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규모

(단위 : 백만원)

구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자율 계정	지역지원 계정	세종특별 자치시계정	제주특별 자치도계정
경찰청	4,027	0	0	0	4,027
고용노동부	82,522	72,608	0	809	9,10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91,286	0	189,439	963	884
교육부	783,562	0	783,562	0	0
국가보훈처	1,904	0	0	0	1,904
국토교통부	2,879,302	1,151,445	1,652,097	15,329	60,431
농림축산식품부	1,344,445	1,287,368	6,277	8,693	42,107
농촌진흥청	99,465	57,620	35,238	450	6,157
문화재청	27,697	27,197	500	0	0
문화체육관광부	776,980	578,599	173,113	7,374	17,894
보건복지부	278,742	226,999	42,634	1,579	7,530
산림청	349,211	267,579	75,998	751	4,883
산업통상자원부	785,284	90,653	676,094	18,200	337
새만금개발청	3,206	2,507	699	0	0
식품의약품안전처	4,716	0	4,580	0	136
여성가족부	87,931	80,117	0	5,682	2,132
중소벤처기업부	470,886	79,877	385,486	120	5,403
해양수산부	402,519	245,889	47,464	0	109,166
행정안전부	546,034	421,094	106,584	8,833	9,523
환경부	770,186	674,551	23,757	31,645	40,233
합계	9,889,905	5,264,103	4,203,522	100,428	321,852

※ 자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8), 『포괄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 .

[표 8] 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지방이양사업 포괄보조사업 내역(2019년 기준)

구 분	부 처	포괄보조사업명	국 고 보조율
계 (29개 사업)			
시도 자율 편성 사업	소계(26개 사업)		
	국토부	대중교통지원	70~90%
		지역거점조성지원	50~100%
		지방하천정비	50%
	농식품부	농촌 자원복합 산업화 지원	50%
		농업기반정비	80%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50%
		반려동물산업육성	30%
	농진청	지역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50%
	문체부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40%
		관광자원개발	50%
	문화재청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	50%
	산림청	산림경영자원 육성	80%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50%
		임도시설(국유림 제외)	70%
	산업부	지역특성화산업육성	50%
	여가부	청소년시설확충	30~88%
	중기부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 물류기반조성	60%
	해수부	어촌 자원복합 산업화 지원	30~50%
		어업기반정비	80%
해양 및 수자원 관리		50%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30~50%	
수산물안전검사체계구축		50%	
환경부	상수도 시설 확충 및 관리	70%	
	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	50%	
	생태하천복원	50~70%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100%	
시군구 자율 편성 사업	소계(3개 사업)		
	국토부	도시활력 증진 지역개발	50%
	농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	70%
	행안부	소하천정비	50%

※ 자료 : 기획재정부, 『2019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 .

### 3) 예산집행 방식의 변화가 농정추진체계에 미치는 영향<sup>8)</sup>

#### ■ 예산집행 방식이 공모 중심에서 협약, 포괄보조, 그리고 보편적 지불로 전환

- 향후 예산집행 방식이 공모 방식을 낮추고 계획협약, 포괄보조, 그리고 기준에 따른 보편적 지불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 전망
- 기존 정책을 집행하는 중앙정부, 즉, 공급자 측면에서 개별 분산적으로 집행하던 방식에서 탈피, 수요자 측면(지방정부와 농업인과 농촌주민 등)에서 전략적으로 조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관점
- 예산집행 방식의 전환은 수요자 측면에서는 예측가능성과 예산 운용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 지자체 농정목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업 기획과 실행시스템 구축 필요

- 2020년 재정분권에 따른 중앙사무 지방이양 대상 규모를 살펴보면, 예산 기준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지방분권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농정의 지역자율성·분권을 촉진하면서도 기존 예산 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농정 목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식을 찾는 것이 과제임
- 농림사업의 지방이양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지자체의 농림사업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어하는 한편,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기획과 실행이 이루어지도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8) 이명현 외(2020), 『농식품 재정구조 개편 및 농정추진체계 재편 방안』,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자료 참조.

### 3. 계획협약제도 도입의 의미와 주요내용<sup>9)</sup>

#### 1) 한국형 계획계약제도 도입 배경

##### ■ 문재인정부 지역주도 균형발전 지원을 한국형 계획계약제도 재도입

- 문재인정부는 지역주도의 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예산배분에 대한 균형위의 기능강화와 함께 한국형 계획계약제도의 재도입을 국정 과제화 함
- 지자체가 최적화된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부처와 계약을 맺으면 포괄보조형식으로 지원하는 계획계약 재도입을 천명함
- 우리나라가 참고한 프랑스의 경우 지방분권 시대에 부응하는 분권적 계획체계의 정립 및 계획적인 재정운영 수단으로서 계획계약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프랑스의 계획계약제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사업에 대하여 재정투자를 약속하고 일정 기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계획을 의미
- 계획계약제도는 지방분권 실시로 지역개발계획에 대한 권한이 지자체로 이양되면서 지역개발 권한의 조화와 안정화를 기하는 수단으로 '84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과 시책을 맞춤형, 차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권한과 재원을 점진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역의 정책적 자립과 재정적 자립, 그리고 기능적 자립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한국형 계획계약제도 도입

#### 2) 한국형 계획계약의 개념

##### ■ 한국형 계획계약의 정의

- 한국형 계획계약이란 지역주도의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가 최적화된 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와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에 대하여 협약

9) 김진범 외(2019), 『정부·지자체 협력기반 한국형 계획계약제 발전방안 연구』, 국가균형발전위원회·국토교통부.

을 맺으면, 정부는 **다부처·다년도 사업을 포괄보조 형식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정의함**

- 현행 부처 간 칸막이식, 다년간 산발적, 정부 주도형 하향식 지원방식을 다부처 묶음, 단기간 연속적, 지자체 주도의 상향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 즉, 정부 주도에서 지자체가 정책과 사업을 기획하고 비전·목표·세부사업을 담은 ‘종합적인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던 방식에서 탈피,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중앙정부 지원 여부에 따라 산발적으로 추진하던 사업방식에서 자치단체가 필요한 사업을 협약한 사업기간(3~5년)에 따라 ‘연속적으로 집중 지원’
- 부처 간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사업방식에서 지역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다부처 묶음 사업을 ‘공간 중심으로 통합’하며, 연계가 필요한 사업이지만 부처에 따라 사업기간에 따라 개별사업별로 ‘예산확보-집행-정산’하던 방식에서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세출예산의 용도·투입시기를 정할 수 있는 ‘포괄보조 방식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한국형 계획계약의 개념임

### ■ 기존방식과 한국형 계획계약의 차이

- 한국형 계획계약은 정부와 지자체간 행정적·재정적 협력관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기존방식 보완
- **첫째**, 균형발전정책을 정부 주도에서 지역 주도로 전환. 기존방식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정부의 감독과 지휘아래 지자체는 집행하는 수직적 구조. 한국형 계획계약은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수평적 관계 중시**
- **둘째**, 현재는 형식적 상향식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향후 실질적 상향식으로 전환. 현재는 지자체 계획 수립 후 이에 기초하여 부처별로 계획수립하고 이를 취합하여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면, **앞으로는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수립 후 협상을 통해 공동추진사업을 발굴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게 됨**
- **셋째**, 전국 획일적 사업을 지역 맞춤형 사업으로 전환. 현재는 부처별 지침 등에 따라 사업을 선정하고 매년 예산편성 후 시행하는 방식이라면, 앞으로는 **범정부의 통일된 지침(중점투자분야 등)에 따라 지자체는 지역실정에 맞는 다부처 패키지사업(소프트사업과 하드사업 결합)을 3~5년간 재정 확보 후 시행하**

는 방식으로 전환

- **넷째**, 재정지원 방식에 있어서는 따로따로 지원에서 묶음으로 전환함. 지금까지는 계정별·부처별·사업별 지침 등에 따라 사업단위로 지원하였다면, 한국형 계획계약에서는 여러 사업을 묶어서 포괄보조방식으로 지원
- **다섯째**, 성과관리가 개별 사업별 산출<sup>10)</sup>(output) 평가 중심에서 투자협약 전체의 성과<sup>11)</sup>(outcome) 평가 중심으로 전환. 현재는 사업별로 산출 중심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균형발전정책의 궁극적 목표라 할 수 있는 지방의 인구·일자리 창출 효과 분석이 미흡한 반면, 한국형 계획계약에서는 전체 사업의 공통된 성과(일자리 창출 등)를 평가함
- **여섯째**, 추진체계 측면에서는 부처별·지자체별 각개약진에서 균형위 중심 범정부차원에서 추진. 부처별 수직적 추진체계를 앞으로는 균형위의 부처 간, 부처~지자체 간 조정·중개기능을 강화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함

[표 9] 기존방식과 계획계약방식의 비교

구분	균특회계	한국형 계획계약
목적	·정부 주도 균형발전정책 추진	·지역 주도 균형발전정책 추진
계획수립방식	·형식적 상향식	·실질적 상향식
사업의 성격	·전국 획일적 사업	·지역 맞춤형 사업
재정지원	·공모중심 계정별·사업별·연도별 따로따로 지원	·공정배분·포괄보조·다년도 묶음지원
성과관리	·개별 사업별 산출(output) 중심 관리	·투자협약 전체의 성과(outcome) 중심 관리
추진체계	·부처별·지자체별 책임 아래 각개약진	·균형위가 부처와 지자체의 조정·중개

※ 자료 : 김진범 외(2019), 『정부·지자체 협력기반 한국형 계획계약제 발전방안 연구』, 국가균형발전위원회·국토교통부.

10) 사업완료 후 나타나는 1차적 결과 또는 산출물을 의미. (예시) 직업훈련수료자 수(명)

11) 사업완료 후 나타나는 궁극적인 결과를 의미. (예시) 취업자 수(명)



## 제3장

# 농정 틀 전환과 농정추진체계 논의 동향

1. 농어업·농어촌 분야 대전환을 위한  
그린뉴딜의 방향과 과제
2. 직접지불제 확산에 따른  
농정 추진체계 변화 방향
3. 정책 융복합(협치) 확산과  
중간지원조직 제도화 촉진
4. 농정거버넌스에 관한 논의 동향





### Ⅲ. 농정 틀 전환과 농정추진체계 논의 동향

#### 1. 농어업·농어촌 분야 대전환을 위한 그린뉴딜의 방향과 과제<sup>12)</sup>

##### ■ 농어업·농어촌의 위기 진단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는 농어업·농어촌의 위기를 크게 4가지로 진단
- 기후위기와 생태환경 악화, 국민 먹거리의 위기, 농어촌 소멸과 도시 과밀화의 위기, 농수산물 가격불안과 농어민 소득의 위기
- 생태환경 훼손형 산업(산업형 농식품체계)과 인간의 활동방식으로 초래된 기후·감염병 위기와 불평등한 사회경제체제에 의해 만들어진 양극화 위기 극복
- 탄소기반 경제를 탈탄소 경제사회로 전환하는 전사회적 국가주도 프로젝트 필요. 탄소배출에서 차지하는 농업·먹거리분야의 비중을 살펴보면, 생산 11~15%, 가공·운송·포장·판매 15~20%
- 과거 생산주의 농정으로 한국 농어업의 환경성 악화. 농약·화학비료의 과다 사용, 고밀도 축산 및 양식 등으로 한국 농어업의 환경부하는 세계 최고 수준

##### ■ 농어업·농어촌 대전환의 필요성

- 농어업·농어촌의 대전환 없이 기존 농정추진방식으로는 기후위기 해결이 불가능. 그동안 화석연료에 기반한 고투입 농업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기후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던 농어업을 환경친화적 저투입 농어업으로 전환함으로써 기후위기 해결에 주도적으로 나설 필요
- 과거 농정의 전환없이 농어업·농어촌은 지속불가능. 과거 농업발전전략(생산주의, 경쟁력주의)은 기후위기를 야기. 양적성장으로 국민경제에 기여했지만 경제·사회·환경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 발생
- 농어업·농어촌은 국가존립, 국민생존·행복 실현의 필수요소. 농어업·농어촌의 붕괴는 국민 행복실현에 필수요소인 다원적 가치의 상실로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 위협

12)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2020.8), 「농어업·농어촌 분야 대전환을 위한 그린뉴딜의 방향과 과제(초안)」와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비전과 전략(19.12.3)」 참조.

## ■ 농어업·농어촌 대전환을 위한 그린뉴딜의 방향

- 기후·먹거리·지역·가격 및 소득 위기의 해결을 주도하는 농어업·농어촌. 화석연료에 기반한 고투입 농업을 환경친화적 저투입·생태(유기)농업으로 대전환 필요. 기후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농업·먹거리 분야가 해결의 주축으로 전환
- 국민·농어민이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과거 농업발전전략(생산주의, 경쟁력주의, 설계주의)은 양적 성장으로 국민경제에 기여했지만, 경제·사회·환경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 발생
- 지속가능성, 포용성, 혁신성, 자치분권 등 미래 농정의 4대 지향을 담은 농정틀 전환의 비전과 전략의 실행계획 마련 및 추진 필요

## ■ 농어업·농어촌 대전환을 위한 그린뉴딜의 목표

- 온실가스 순제로(net zero) 배출 및 생태환경복원 기여(기후위기 극복)
-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으로 먹거리주권 확립(먹거리 위기 극복)
- 살고 싶은 농어촌 조성(농어촌 소멸과 도시과밀화 위기 극복)
- 농수산물 가격안정 및 농어가 소득 안전망 구축(농어민 경영 위기 극복)

[그림 2] 지속가능 농정 철학과 패러다임



※ 자료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2019),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비전과 전략」

■ 농어업·농어촌 대전환을 위한 그린뉴딜의 15개 과제 40개 세부과제

분야	목표	과제 (15개)	세부과제 (40개)
농어업	온실가스 순제로 배출 및 생태환경복원 기여 (기후위기극복)	① 화석연료 기반 농업을 탈탄소·생태(유기)농업으로 전환	① 화학비료(축분퇴비대체) 및 농약, 항생제 사용량 50%감축(30년) ② 논농업 친환경농업으로 단계적 전환 및 친환경농업 30%확대 ③ 공익형직불제 대폭 강화로 탈탄소·생태(유기)농업 전환지원
		② 경축순환농업 실현 및 탈탄소·친환경축산 전환	① 수입곡물(GMO)의존 축산전환 및 가축분뇨 자원화·이용확대 ② 토양양분관리제 도입 ③ 기업축산을 중심으로 가축사육두수 감축(적정사육두수관리) ④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전환
		③ 농어촌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고寶庫 (지역에너지 자립)	① 농어촌지역 재생에너지 확대 ② 농어업부산물 활용한 바이오에너지 비중 확대 ③ 주민참여 이익공유형으로 사업방식 개선 ④ 농어촌 재생에너지 이용확대 (RE100 단계적 도입)
		④ 산림분야 탄소저감 및 기후위기 대응 강화	① 숲가꾸기 등 수종갱신으로 산림생장 촉진 및 탄소흡수력 제고 ② 목재수요 창출 및 플라스틱·콘크리트 대체로 탄소저감 ③ 임도밀도 선진국 수준 확대로 지속가능 산림경영기반 구축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으로 먹거리주권 확립 (먹거리위기극복)	① 식량자급 확대	① 식량자급률 목표 제고 : 2030년까지 10% 증가 (밀15%, 콩50% 등 자급추진)
		② 농지제도 정비	① 비농민 농지소유 제한 및 임차농 이용권 보호 ② 농지소유·이용실태 전수조사 실시 및 디지털정보화
		③ 로컬푸드기반 국가먹거리 시스템 확립으로 먹거리기본권 보장	① 국가·지자체 푸드플랜 수립 및 먹거리시스템 대전환 ② 로컬푸드 공공급식 전면화 ③ 먹거리 양극화 해소 및 먹거리 정의 확대
		④ 먹거리 안전성 확보	① GMO완전표시제 도입 ② 축산식품안전관리업무의 농식품부 일원화

분야	목표	과제 (15개)	세부과제 (40개)
농어촌	살고싶은 농어촌 조성 (농어촌소멸 및 도시과밀화위기극복)	① 농어촌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 개발보전(공간 계획제도화)	① 농어촌 공간계획 제도화 : (가)농어촌재생특별법 제정 ② 숲을 활용한 탄소흡수, 치유서비스, 건강증진 확대
		② 농어촌 365생활권 구축 및 귀농어·귀촌 활성화	① 농어촌 365생활권 구축 ② 귀농어·귀촌 지원 통합 플랫폼 구축
		③ 청년·후계농 육성 및 여성농 지원	① 청년·후계농어업인 육성 ② 여성농어업인 공동경영주 지위보장 및 성평등인식개선
		④ 사회적경제 연계 농어촌 활성화	① 사회적경제 연계로 농어촌 소득·일자리 생태계 활성화
농어민	농수산물 가격안정·소득안전망 구축 (농어가경영위기극복)	① 농수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① 푸드플랜 연계 공적영역 공급체계 확립 (공공수매비축제 도입) ② 생산자 자율적 수급조절 기능강화 및 자조급조직 자율성 확보 ③ 디지털통합플랫폼 구축 등 수급 및 가격안정 종합체계 완비
		② 도농소득격차 및 농가 양극화 해소 위해 농어가소득안정망 구축	① 농가소득 안정 위한 수입보장보험제도 도입 검토 및 추진 ② 기본소득(농어민, 농어촌주민) 도입 검토 및 추진 ③ 임업직불제 도입 등 임업인 소득안전망 구축
		③ 농업·산림재해 종합대책 마련 및 농작업재해대책강화	① 농업재해종합대책 마련 (국가 보상체계 강화) ② 농업인 농작업재해대책 강화 (농업인안전보험 사회보험 전환) ③ 산림재해대책 강화(산림재해통합관리시스템, 산사태정보시스템)
추진 전략	예산 재정	① 직불중심 농정전환	① 공익형직불제(선택형) 대폭 확대로 전환 지원 (예산 1조원 증액) ② 농정예산에서 직불금 비중 선진국 수준 확대 (임가내 30%)
		② 예산 확충	①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을 전체예산의 5%수준 유지 ② 투입재 보조형 사업 축소 및 신규예산 확대로 직불재원 1조원 확충
	추진 체계	① 지방분권형 농정	① 농정분권종합계획 수립 ② 중앙-지방정부 계획협약제도
		② 민관 협치	①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② 농협·수협·산림조합 및 중앙회 개혁
	기술 혁신	① 4차산업혁명 첨단기술 적용	①농지정보디지털화 ②농어업 스마트화 ③농어촌 스마트화 ④임업산촌스마트화
사회 협약	① 국가-시민사회-농어민·주민간 협약	① 국가시민사회의 약속 ② 농어민주민의 약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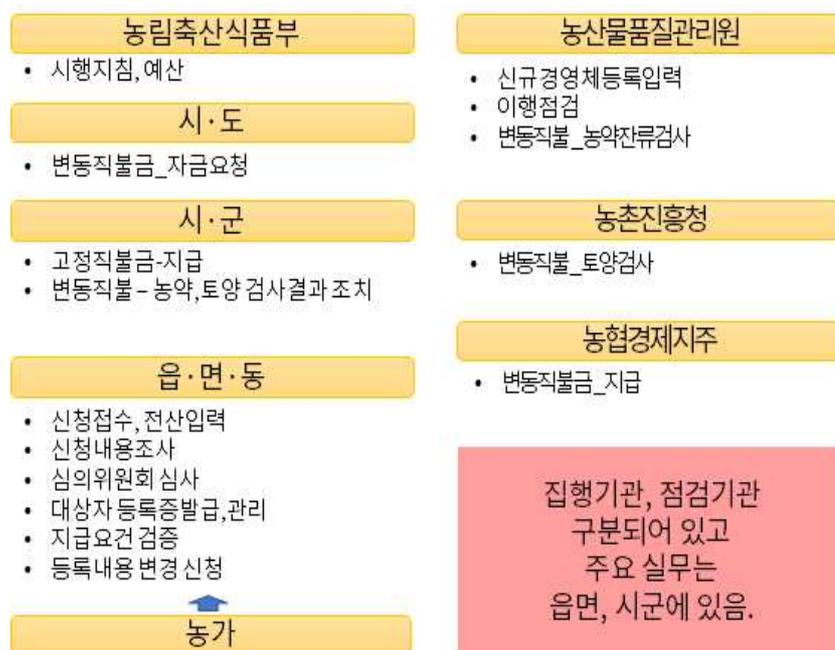
## 2. 직접지불제 확산에 따른 농정추진체계 변화 방향

### 1) 현행 직접지불 추진 체계의 과제<sup>13)</sup>

#### ■ 직접지불 형태에 따라 담당부서와 추진체계 상이

- 직접지불 관련 사업은 쌀소득보전직불, 밭농업직불, 경영이양직불, 조건불리직불 등으로 편성, 사업에 따라 담당부서와 추진체계에 차이가 있음
- 쌀소득보전 직불의 경우 농식품부 이외에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촌진흥청, 농협경제지주 등이 관여. 주요한 행정업무는 시·군 특히 일선 읍·면·동에서 이루어짐. 지급대상 자격확인과 현지조사, 정보 입력, 심사위원회 개최 등을 모두 읍·면·동 담당자가 처리.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자체와 함께 신청·접수 업무를 수행하고,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갱신, 조사대상 농지에 대한 이행점검 등을 시행

[그림 3] 2019년 쌀 직접지불 추진체계



\* 자료 : 이명현 외(2020), 『농식품 재정구조 개편 및 농정추진체계 재편 방안』,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13) 이명현 외(2020), 『농식품 재정구조 개편 및 농정추진체계 재편 방안』,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자료 참조.

- 변동직불금의 경우 이행조건과 관련하여 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약잔류검사, 농촌진흥청·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급업무도 농협경제지주가 담당함
- 현행 직접지불체계는 중앙-지방 행정체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집행하기 위한 상당한 인력·예산과 행정적 노력이 부가되고 있는 상황

## 2) 직접지불되는 방식 확대에 따른 추진체계 정비

### ■ 공익직불제의 개편에 따른 기존 농정추진체계 정비 필요성

- 직접지불제가 갖는 중요한 정책적 의미는 기존 산업정책으로 선별적 투입재에 대한 지원정책에서 공익적 기능 발휘에 따른 보편적 기준에 따른 지불방식으로 정책의 목표가 전환되었음을 의미
- 직접지불제는 정책의 중심목표를 ‘소득보전’에서 ‘공익적 기능에 대한 지불’로 분명하게 전환
- UR 수입개방으로 인한 농업소득 손실에 대한 보상의 개념으로 직불제가 도입된 것이 사실이지만, 그 후 이질적인 제도들이 모두 직접지불제의 이름으로 도입되면서 직불제의 정체성이 불분명해지고 농업생산자와 정책당국이 소득보전 또는 소득안정화 정책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
- 이로 인해 직불제와 결부된 농업생산자의 의무이행이 형식적으로 되었고, 직불제에 대한 재정당국과 납세자들의 인식이 부정적으로 작용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불대상과 단가가 다른 직불제(쌀에 대한 고정 및 변동형 직불제와 밭 직불제, 조건불리 직불제)를 통합하고, 공익의무를 실체화하고, 중소농을 배려하는 단가체계를 구성하기로 발표<sup>14)</sup>

### ■ 선택형 공익직불제 도입

- 가칭 ‘공익기여지불(公益寄與支拂)<sup>15)</sup>’이라 하고 기본형과 선택형을 구분
- 현재 진행 중인 ‘공익형 직불제’를 기본형으로 하여, 현재 존재하고 있는 농

14) <http://www.mafra.go.kr/2019plan/1727/subview.do>. 2019년 중점 추진과제 설명자료.

15)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용어는 ‘공익직불제’인데, 이에 대해 이명현 등 일부 학자는 ‘공익기여지불’로 명칭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업환경지원정책, 친환경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에 더하여 새로운 형태의 공익 제공에 대한 사회적 지불로서 선택형 공익기여지불제 확충

- 공익적 서비스에 대한 지불이 아닌 가격변동 위험대응 정책이나 구조조정 지원정책은 명칭을 달리하여 별도의 정책범주로 독립

### ■ 보편적 지불방식 확대에 따른 공모제 사업의 변화 불가피

- 공익직불제 개편에 따라 정책목표의 실현에 기여하는 주체들 특히, 농업생산자 및 농촌주민에게 재정지원이 직접적으로 행해지는 보편적 지불 방식 확대
- 보편적 지불이란 지원 대상을 정부가 여러 측면에서 ‘상대평가’하여 일부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정해진 ‘절대적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주체들에게 지원하는 방식
- 이러한 전환의 핵심은 일차적으로는 공익기여지불제를 확대하는 것임
- 현재 도입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농업농촌 공익증진 직접지불제’를 출발점으로 하여 그 지원대상과 투입 재원 확대
- 또한 공익기여지불제 이외 영역(예 : 농업다기능성 지원, 농업자원관리, 농업환경보존)에서도 중앙과 지방정부가 직접적으로 역할을 감당할 부분 이외에서는 생산자와 농촌주민이 기여할 수 있는 경로를 설정하여 직접적 지원 확대
- 공익기여지불제 등 보편적 지불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공모제 방식으로 운영되던 개별사업들은 기본적으로 축소하되,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시험, 새로운 정책 실험, 시범적 실행 등 부분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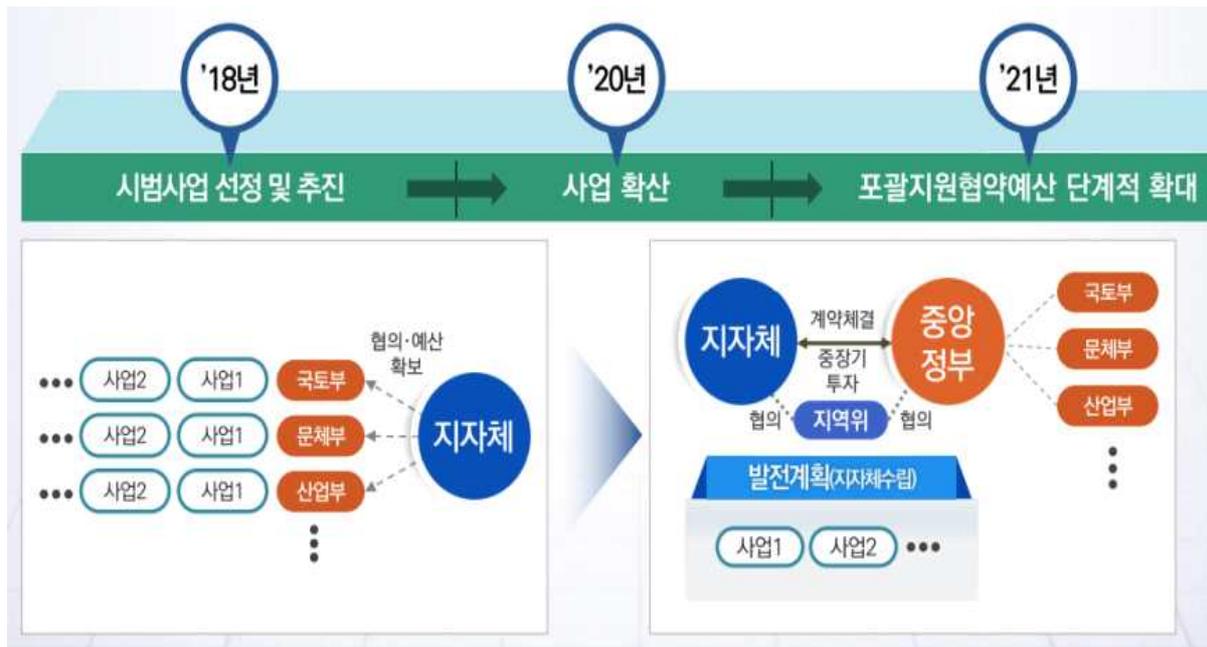
### 3. 정책 융복합(협치) 확산과 중간지원조직 제도화 촉진

#### 1) 계획협약(포괄지원협약)의 도입과 주요내용

##### ■ 개별 보조사업 중심에서 계획 중심으로 정책방향 전환

-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019년 「문재인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발표
- 현행 지역사업은 부처별 칸막이 식으로 기획되고 단년도·일회성 위주로 지원되어 지역에 최적화된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
- 지자체가 최적화된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부처와 계약을 맺으면 포괄보조형식으로 지원하는 계획협약(포괄지원협약) 도입 추진
- 단년도 일회성의 과제를 극복하고 지속적·안정적 추진
- 부처 간 칸막이식 사업기획을 개선하여 다부처 패키지로 사업 추진
- 지역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별 공정배분을 위해 포괄보조 형식으로 추진

[그림 4] 포괄지원협약(계획협약)제도 본격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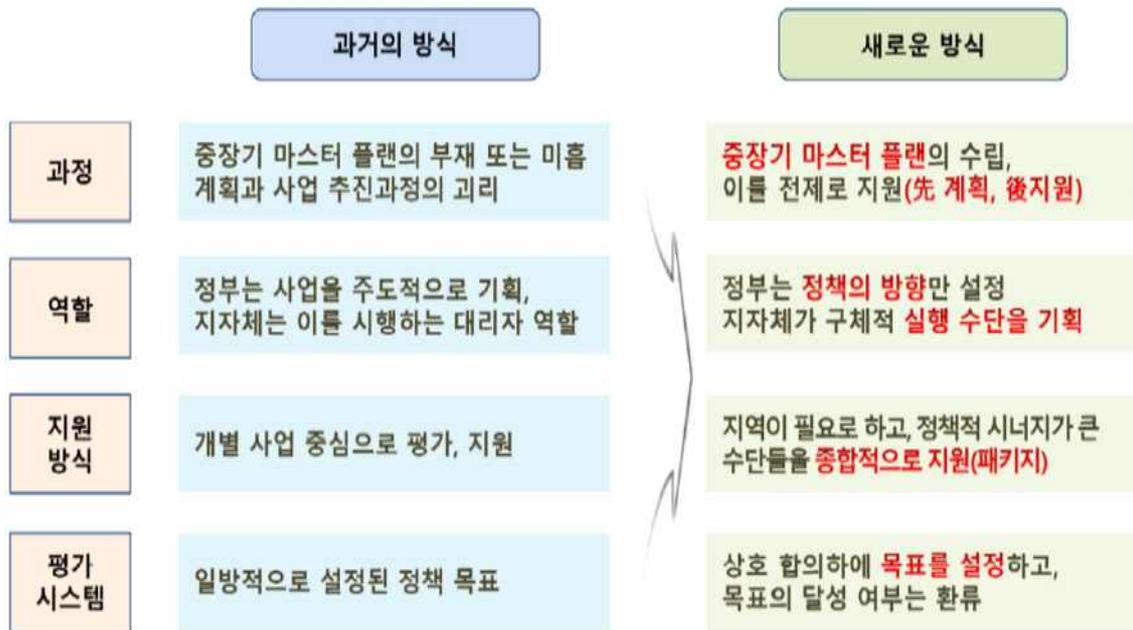


\* 지역발전위원회(2018),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 도입<sup>16)</sup>

-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균특회계 중 농정분야 사업이 대거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자치분권의 개념에 더욱 부합하는 국고보조사업 추진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계획협약 제도 도입’시작
- 계획협약 제도는 기존 보조사업 중심에서 지방의 계획 중심으로 정책지원을 전환한다는 부분에서 큰 의미가 있음
- 자치분권시대 새로운 농촌정책 추진체계로서 ‘농촌협약’제도 도입으로 중앙과 지자체가 협약을 통해 공동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실현

[그림 5] 농촌협약 정책의 기본방향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 『지방분권시대, 농촌정책이 가야 할 길, 제25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자료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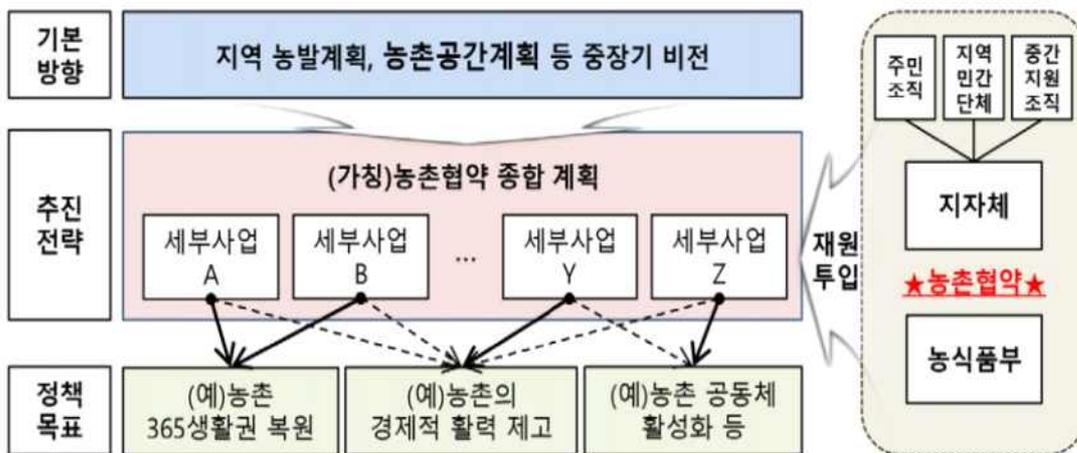
■ 농촌협약 추진 : 개별 아젠다 방식에서 통합적 패키지 방식으로 전환

- 부서별로 분산 추진되던 사업 방식을 극복하고, 다양한 역할을 아우르는 통합적 농촌정책 추진체계가 지자체 행정조직 내에서 형성되도록 유도

16) 농림축산식품부(2019). 『지방분권시대, 농촌정책이 가야 할 길, 제25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자료집』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9), 『지방분권시대 농촌지역개발의 거버넌스 정립방안 연구』를 참조하여 정리.

- 기존 중앙주도 하의 지역개발방식에서는 부서별 칸막이에 따라 보조금이 수직적으로 집행되는 형태인데, 앞으로 분권적 농촌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행정조직 내 수평적 연계를 통해 커뮤니티에 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 필요
- 장기적으로는 행정조직 내에 농촌계획 직렬을 도입하는 방안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모색할 필요가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계약직 민간전문가를 행정조직 내에 채용하여 활용토록 유도
- 충남 등 일부지역에서 시·군 행정조직에 농촌정책총괄 기구 설치 및 민간전문가 채용, 중간지원조직 형성을 통해 지역단위 농촌정책 역량 형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러한 체계적인 농촌정책 추진 전략의 확산 필요

[그림 6] 농촌협약의 기본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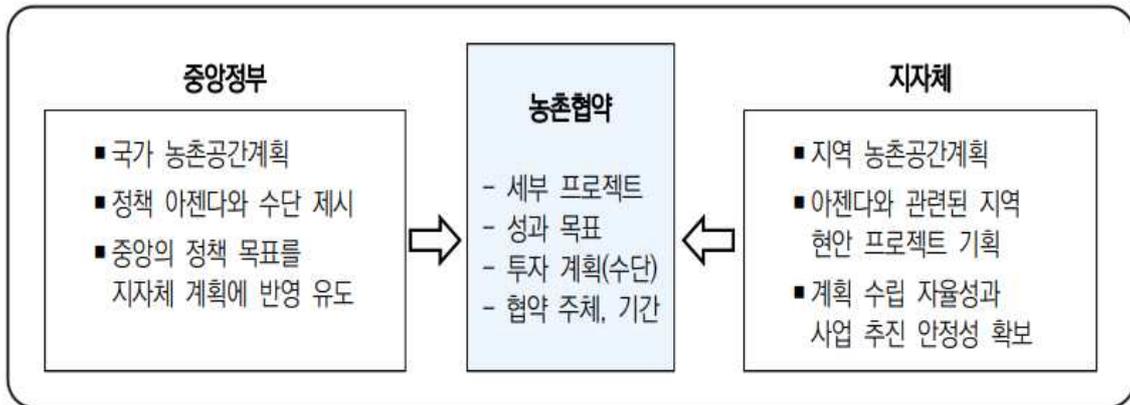


\* 농림축산식품부(2019). 『지방분권시대, 농촌정책이 가야 할 길』, 제25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자료집.

### ■ 농촌협약 체결 요건으로서 사업 계획 수립

- 농촌공간계획이 공식적으로 제도화된 이후에는 사전에 시·군 차원의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한 지자체가 농촌협약 체결 대상임
- 시·군 농촌공간계획에서는 충실한 사전실태 조사를 통해 협약 추진의 근거인 기초 데이터(Baseline data)가 제시될 필요가 있음
- 특히 중앙 단위에서 기존 통계자료로써 파악하기 힘든 마을 정주 실태 등의 자료를 담아야 함

[그림 7] 농촌협약 기본구조



\*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9), 『지방분권시대 농촌지역개발의 거버넌스 정립방안 연구』 .

[표 10] 아젠다별 협약대상 사업군

아젠다	협약 대상 사업군(안)
농촌 정주여건 개선	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 육성,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농촌다움 복원, 경관보전직불, 농촌 다원적 활용 지원, 농업환경프로그램 등
농촌 일자리 창출	신활력플러스,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 말산업 육성,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 우수종묘증식보급 기반 등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회적농업활성화,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 농촌축제지원, 귀농귀촌 활성화 도시농업활성화 등
지역 특화품목 육성	(식량)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 들녘 경영체 육성 (과수)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원예) 원예시설 현대화, 인삼 생산유통시설 지원 (축산) 축사시설 현대화, 축산물 수급관리, 직거래 활성화
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	APC지원,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국가 인증 농식품 지원 등
환경친화형 농식품산업 육성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주 :          은 핵심사업, 기타는 연계사업

\*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9), 『지방분권시대 농촌지역개발의 거버넌스 정립방안 연구』 .

### ■ 농촌협약을 위한 아젠다 제시

- 농촌협약은 농촌의 바람직한 미래상 내지 보편적인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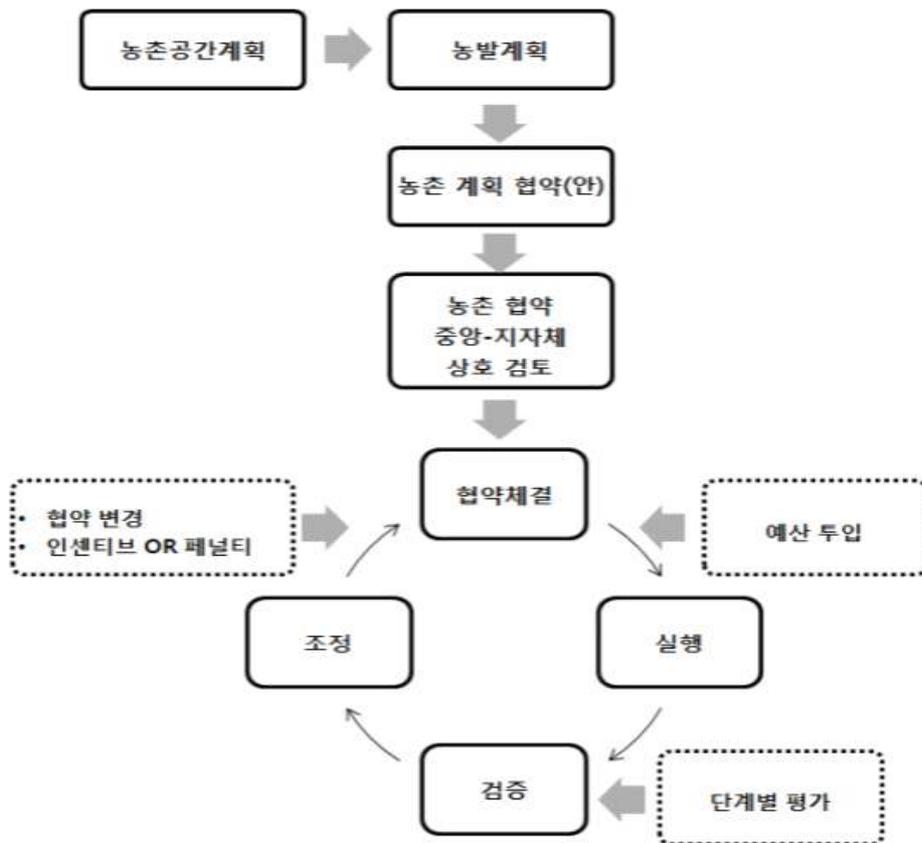
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발굴하고 협업하여 지원하는 협력체계

- 따라서, 중앙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삶터, 일터, 쉼터로서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달성해야 하는 과제(아젠다)를 제시해야 하며, 이는 크게 네 가지로 제안할 수 있음
- (삶터) 농촌 정주기반 및 서비스 공급망 확충, (일터)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자생적 경제활동 육성, (쉼터) 농촌다운 환경과 경관 등 공익적 가치 보전, (공동체터) 지속가능한 공동체 육성 등이 이에 해당됨

### ■ 농촌협약을 위한 사업 발굴

- 농촌협약을 위한 아젠다가 제시되면 지자체는 자체 농촌공간계획을 고려하여 정부 아젠다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 사업계획에는 기존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까지 모두 포함
- 또한, 각 사업들 간 연계성과 기대되는 시너지 효과 등이 제시되어야 함
- 사업 발굴 시 ‘농촌성(Rurality)’을 핵심적 기준으로 삼아 다음 원칙 고려
- 전국 어디에서나 일정 수준의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적 최소 목표치(National Minimum) 달성에 기여하는 사업 우선 추진
- 농촌다움을 유지하고 농촌자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활용하는데 기여하는 사업
- 지자체와 주민, 지역공동체의 농촌정책 추진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사업
- 현재 농림사업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협약 체결 시·군에 대해 정부가 협약을 통해 지원 가능한 사업(안)은 기존 농촌지역개발사업과 농촌정책과 관련된 사업은 농촌협약의 핵심 사업이 되며, 기타 농림사업들도 아젠다 구현과 관련될 수 있는 사업들은 연계사업으로 포함 가능

[그림 8] 농촌협약 추진 절차



\*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9), 『지방분권시대 농촌지역개발의 거버넌스 정립방안 연구』 ,

### ■ 농촌협약 지원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지자체 이행 사항

- 농촌협약 체결 시군에 대한 정부사업 지원의 대가로 지자체는 자체 예산(중앙 정부 사업에 대한 지자체 매칭 예산 제외)을 투입한 연계사업 추진 계획 제시
- 특히, 이러한 자체 예산사업으로 대표적인 분야는 다음과 같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없는 사업들이 중심
- 신규 조성되는 시설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 각종 사업 조직, 공동체 조직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 마을회관, 경로당 등 지자체 예산 투입이 필요한 시설 조성
- 후속 사업 추진을 위한 실태 진단, 지역 단위 실증 데이터 구축
- 연계 사업 추진 이외에 지자체에서 효과적인 협약 운영을 위해 다음 사항들을 이행

- 지자체 차원의 통합적인 행정 추진기구 구성(특히 여러 부서를 아우르는 전담 조직 형성)
- 사업을 이끌어가는 중간지원조직 구성·활용 등 민간 주체 활용
- 초기에는 행정지원 역할을 하는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여 활용하고, 향후 EU LEADER 프로그램 방식과 같이 지역의 다양한 주체, 공동체 조직에서 참여하여 사업을 이끌어가는 파트너십 구조를 형성하도록 하는 방안 제시
- 사업에 대한 지역 차원의 모니터링과 성과 점검 계획 제시

### ■ 농촌협약의 단계별 확대 방안

- 농촌협약을 전면 도입하기 전에 시범운영 과정을 일정 기간 거칠 필요가 있음
- 농촌협약이 온전히 작동하려면 국가 및 지자체의 농촌공간계획 제도가 공식 도입되고 관련 법령 정비가 이루어지는 등 준비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임
- 농촌협약은 다음과 같은 3단계 과정을 거쳐 전면 확대
- (1단계 : 2020~21년) 농촌공간계획 제도 도입 이전에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신활력 플러스 등 핵심 사업이 동시에 신규로 추진되는 지역에서 시범 적용하는 단계
- (2단계 : 2022~23년) 농촌공간계획을 시범 수립하고 그에 따라 농발계획의 신규 수립 또는 수정·보완 작업을 진행한 시군을 중심으로 협약 체결 본격화
- (3단계 : 2024년 이후) 전국 농촌 시군들이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완료한 이후 모든 농촌정책이 계획협약 방식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전면 확대하는 것으로 분권시대 농촌정책의 틀을 설정

## 2) 농림축산식품부 중간지원조직제도 촉진 방향<sup>17)</sup>

###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시 중간지원조직 설치 지자체 가점 부여<sup>18)</sup>

-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시 지자체 단위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그 근거로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 시 가점 부여
- **(중간지원조직)**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지자체 단위 자체 중간지원조직을 적극적으로 육성·운영하는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자체 중간지원조직의 운영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시군에는 평가 시 가점 부여
- 조례에 기초하여 자체 중간지원조직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군은 역량강화 사업비 한도를 최대 2억원 증액하여 지원
- \* 조례 제정 이후부터 '18년 말까지 해당 지원조직의 운영 실적을 증빙자료로 첨부한 시군에 한하여 사업비 한도 증액 여부를 판단
- **(전담 지원·총괄부서)** 지역개발사업을 총괄 기획·조정·사후관리까지 전담하는 부서를 마련한 시군에 가점 부여

### ■ 신활력플러스사업과 중간지원조직<sup>19)</sup>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신활력플러스사업은 그동안 구축된 지역자산과 다양한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산업 고도화,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농촌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함
- (지원내용) 다양한 민간주체가 참여하는 지역조직을 중심으로 지역 여건에 적합한 전략사업 기획·추진
- 재정사업으로 지원된 시설·조직·기반 등을 활용한 특색 있는 모델\* 발굴
- \* 특화산업 고도화, 지역순환경제, 앵커기업 유치, 사회적농업 육성 등

17) 농림축산식품부 이외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중간지원조직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역시 중간지원조직 또는 거버넌스 등 지원체계 구축 시 가점을 부여 등 중앙 부처별 각종 정책사업에서 지자체 단위 중간지원조직 설치를 의무화하는 제도가 확산되고 있음

18) 농림축산식품부(2019), 「2020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설명회 자료」 참조.

19) 농림축산식품부(2018), 「신활력플러스사업 설명자료」 참조.

- (추진방식) 신활력 플러스를 중심으로 산업·문화·복지 등을 연계한 통합계획을 수립하고, 포괄적 지원을 통한 실행력 제고
- 지역대학, 연구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신활력추진단' 구성
- 지자체는 역량 있는 추진단장(1명)을 위촉하고, 분야별 코디네이터(3~5명), 자문위원 등을 포함한 전담조직 운영
- (추진단장) 계획수립·사업시행 총괄, 다양한 액션그룹 발굴, 이해관계자 의견 조정, 자립형 산업기반·공동체 일자리 등 프로그램 기획
- (코디네이터) 교육·문화·공동체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고 주민 및 행정의 부족한 전문성 보완
- 기존 지역개발사업 추진주체(중심지 PM단 등) 및 시군단위 중간지원조직(공동체지원센터 등)과 연계하거나 통합운영 가능
- 협동조합, 마을기업, 복지단체, 농촌공동체회사 등 지역 내 사회적 경제조직 참여 유도

#### ■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사업과 중간지원조직<sup>20)</sup>

- 농림축산식품부의 주요 사업인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사업은 지자체로부터 제출된(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 및 실행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심의하여 선정
- 농식품부는 선정계획에 따라 선정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심사 진행
- 생산·소비 구조의 적합성, 추진체계(전담부서, TF 등)의 적정성, 지자체 장의 의지 및 로컬푸드·학교급식 등 유사정책 경험 등을 정성평가
- 주요 평가기준은 사업추진 의지 및 역량, 지역 푸드플랜 수립에 대한 지자체 의지, 지역 푸드플랜 수립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또는 TF조직의 적정성, 지역 푸드플랜 관련 최근 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 지역 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자체 추진 노력

20) 농림축산식품부(2019),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 3)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 운영 현황

#### ■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 2007년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지원기관을 시작으로 행정안전부 마을기업지원센터, 2012년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지원센터까지 중앙부처별 지원기관을 필요로 함
-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까지 포괄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부처별 지원기관 운영에 따른 유사 사업 간 중복지원에 대한 전문가와 현장의 비판에 따라, 세 부처별 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광역단위 통합지원기관 운영
- 사회적경제 통합지원기관은 광역단위로 운영되고 있어 실제 지자체 단위에서는 설치의 의무가 없지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주민의 관점에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사 지원기관을 운영하기도 함
- 아산, 서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중간지원조직에서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포괄적 지원
- 일부 지자체는 사회적경제조직 당사자들로 구성된 협의회 또는 네트워크 조직을 통해 일부 지원활동을 전개하기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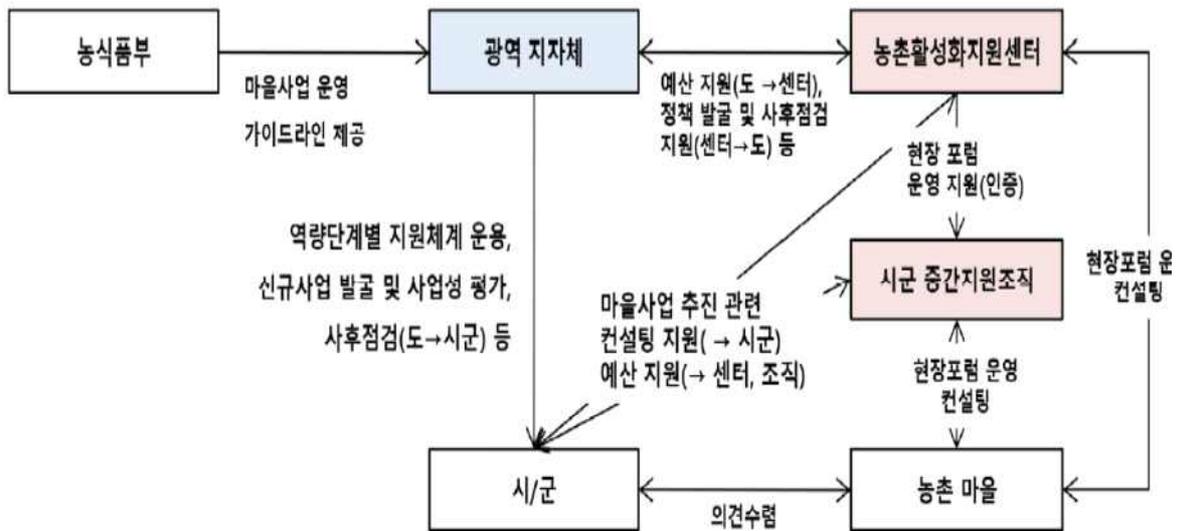
#### ■ 농림축산식품부, 6차산업지원센터와 귀농귀촌지원센터

- 농림축산식품부를 주무부처로 하는 6차산업지원센터는 지역 내 자원발굴을 통한 6차산업화 모델 확산과 현장지원을 위해 광역단위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충남의 경우 충남연구원 부설로 농업6차산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귀농·귀촌 활성화와 귀농·귀촌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광역과 지자체 단위에서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중
- 농촌진흥청에서 2012년 3월, 귀농귀촌종합센터 개관하여 2014년 6월까지 운영하였으나,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정원에 위임하여 2014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음

## ■ 농촌협약에 따른 광역 지자체 기능 강화와 광역 단위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지원 확대 구상

-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치분권에 따른 사무 이양과 농촌협약 등 중앙과 지방 간 계획협약 확대 등 정책 추진여건 변화에 대응, 광역 지자체의 관리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광역 단위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임
- 사후관리 체계 운용 등 광역 지자체가 활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함
- 농촌정책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현장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광역단위 사후관리와 현장 컨설팅 기능이 부가된 광역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임

[그림 9] 광역 지자체 기능 강화와 광역 중간지원조직 지원 확대 방향(예시)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 『지방분권시대, 농촌정책이 가야 할 길, 제25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자료집』

## 4. 농정거버넌스에 관한 논의 동향

### 1) 거버넌스의 이해

#### ■ 거버넌스의 개념

- 거버넌스(governance)는 사전적 의미로 ‘통치방식’이나 ‘관리양식’ 또는 ‘지배구조’ 등을 의미하며, 활동공간의 범위에 따라 글로벌거버넌스(global governance), 국가거버넌스(national governance), (광역)지역거버넌스(regional governance), (기초)지역거버넌스(local governance), 사이버거버넌스(cyber governance) 등으로 분류
- 로컬 거버넌스는 국가 내 일정 지역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거버넌스를 분석단위로 한 것으로 “ 한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이해관계 집단의 규모가 보다 한정적이고, 주민이나 NGO단체와의 접촉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특징으로 함
- 로컬(Local)의 의미는 기초 지자체 수준의 공간적 범위를 뜻함

#### ■ 농정거버넌스 구축의 의미<sup>21)</sup>

- 농정거버넌스의 필요성은 개방화시대에 농업·농촌 미래에 대한 위기감 확산과 사회적 갈등 증가, 농정의 지방화·분권화 진행, 농업부문의 직능별 및 품종별·업종별 권익단체의 설립 증가와 다양한 욕구의 조정 등에 있음
- 농정거버넌스는 정책의 결정 및 집행책임에 있어 민·관 수평적 및 유기적인 파트너십으로 정의. 농정거버넌스의 형성조건으로서 우선 정부, 농업인단체, 시민사회단체, 협동조합, 농업관련 산업 등 주요 참여주체의 사회적인 합의가 전제되어야 함. 그리고 민주성, 대표성, 전문성, 책임성이 수반됨. 또 법적·제도적인 기반 하에 기존 정책형성 및 집행과정 틀이 검토·재정비 필요
- 지방화·분권화 추세에 따라 로컬거버넌스를 중심축으로 변화가 확대
- 현재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농업회의소’가 바로 농정거버넌스의 한 축으로 주요활동은 중앙 및 지역에서 각각 농정 수립·집행·평가과정 등에 참여하여 정부의 협력적 파트너로서 공동으로 심의·결정하고 책임지는 역할을 담당하게 됨

21) 김호(2010.6), 「농정 거버넌스의 구축방안」, 시선집중 101-1호, GS&J, 참조.

- 국내외 농업 실태 및 추세 등에 대한 조사연구활동, 소비자 등 대국민 홍보활동, 맞춤형 지역농정 추진, 품목별 전문화 사업, 관계 전문가를 활용한 현장기술경영·유통 컨설팅, 교육훈련사업, 기타 정부 위임·위탁 사업 실시가 가능함
-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농업회의소는 지역농업인의 참여범위가 매우 한정적이고, 여전히 행정주도의 관변단체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어 실질화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2) 자치분권에 따른 지방농정 거버넌스 당면과제

### ■ 지방농정 거버넌스의 개선과제<sup>22)</sup>

- 농정 분권화·지방화는 분권을 통해서 지방정부와 지역 내 다양한 농업농촌 관련 주체들이 주체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중앙집권체제에서 형성하지 못했던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형성과 협력의 틀**을 만들어 나가는 것임
- 지방농정 거버넌스는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공익직불제의 설계 및 집행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
- 분절적 사업체계를 지양하고 **지역주체들에 의한 예산의 통합적 이용**이 확대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농정 거버넌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지방정부의 농업정책 형성과 집행과정에서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의 네트워크 형성과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 거버넌스 체계 필요
- 이를 위해 현 지방농정 의사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제도적 개선 필요
- 정책 의사결정이 비록 시범단계에 있지만 **농업회의소 법제화 논의 역시 큰 틀에서는 농정거버넌스의 일환으로 추진 중**
- 집행과 관련해서는 농산업 사업영역에서는 **부서별 개별사업 간 융복합**을 통해 사업을 내실화하고, 농촌사업 영역에서는 세부 사업별로 **분산된 추진체계를 통합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 구축 필요**

22) 유정규(2010.6), 「지방자치시대, 농정 거버넌스의 구축 방안과 역할 모색」, 시선집중 제102-2호, GS&J, 참조.

### 3) 농림축산식품부, 농정추진체계 개편 논의 동향<sup>23)</sup>

#### ■ 중장기적으로 지방분권에 따른 지자체 농정분야 재정 타격에 대응 필요

-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기조에 따라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기존 농정추진체계의 개편을 검토 중임. 현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통해 2018년 재정분권 추진과 함께 농정추진체계 개편 방향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였고, 내년에 추진체계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
- 현재까지 진행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려하고 있는 농정추진체계 개편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재정분권에 따라 **농정분야 재정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는 방식**을 현 상태로 계속 유지한다면, 이전 재원을 **지방자치단체가 농정사업에 사용한다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농정예산이 축소될 우려가 있음**
- 재정분권 1단계를 통해 이전된 **농정예산 대부분이 균특회계 예산**인데, 인구가 적고 **재정이 취약한 농촌지역일수록 그 비중이 높아**, 향후 지자체 농정예산 편성에 대한 대책 필요
- 둘째, 지방소비세율을 높이는 것을 주된 수단으로 삼는 재정분권은 농촌지역들 사이에서도 재정력 격차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음
- 이전되지 않는 국고보조 농정사업 예산을 배분할 때 이 점을 고려하여 차등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국고보조사업은 그 자체로 사업마다 고유한 목적을 지니므로, 단지 재정이 취약하다는 이유만으로 더 많이 할당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수평적 지방재정 조정 제도 도입 필요**
- 이때 제약요건으로 작용하는 것은, 농정분야 재정만을 두고 수평적으로 조정하기가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점임. 농특세 같은 농업 및 농촌 관련 목적세가 아니라 지방소비세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재정분권을 추진하므로, 세원 수준에서는 농정분야와 타 분야를 구분하기가 어렵게 됨
- 즉, 농정 분야만을 대상으로 하는 분권 교부금 제도를 마련하는 데에는 기술적 어려움이 있음

23)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9), 『지방분권을 위한 농정추진체계 개편 방안(2/3차년도)』 참조.

- 농정관점에서 볼 때 불완전한 재정분권 구상을 보완할 단기적인 대책은 재정이 이양되지 않는 국고보조 농정사업의 추진체계를 개선하는 것임
- 단, 재정 측면 외에 자치분권이라는 관점에서 국고보조 농정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이 더 많은 자율과 책임을 갖도록 추진체계 정비

### ■ 국고보조금을 중심으로 한 농정추진체계를 계획협약방식으로 전환

- 1995년 지방자치가 본격화된 이후 농정추진체계는 꾸준히 지방분권과 주민참여를 지향. 개별 국고보조 농정사업에서 주민참여형 농촌개발정책을 공모방식으로 추진
- 공모방식의 국고보조사업이 지니는 한계, 즉 농촌 지방자치단체 간 국고 확보 경쟁과 개별사업이 지니는 협소한 사업범위 문제를 해결하면서 더욱 분권적인 방식으로 추진체계 개편 중
- 균특회계에 포괄보조방식 도입으로 형식면에서 지방분권적인 농정추진체계로 개선 중. 특히, 최근 균특회계 중 농정분야 사업이 대거 지방 이양됨에 따라 자치분권 기조에 더욱 부합하는 국고보조사업 추진체계 개선이 필요하고, ‘계획협약 제도 도입’논의
- 계획협약제도는 ‘보조사업 중심에서 계획 중심으로 농촌정책 방향을 전환’한다는데 의의가 있음
- 첫째, 현재 알려진 농림축산식품부의 구상은 중앙정부와 농촌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을 근거로 협약을 맺어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므로 ‘계획협약 제도’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보조사업 기획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부분 제약이 따름
- 협약으로 보장되는 것은, 주요 정책 의제에 합의한 상태에서 개별 세부사업들을 지방자치단체가 설계하는 이른바 ‘아젠다 방식’이 아니라, 세부사업들이 메뉴방식으로 편성되어 그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선택하는 이른바 ‘패키지 방식’으로 전환
- 둘째, 지방분권의 두 축이 ‘재정분권’과 ‘자치분권’이라고 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들로부터 의제를 수렴해 사업계획과정에 반영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계획협약 제도에 포함시켜야 함

- 예를 들어, 현재 푸드플랜거버넌스,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추진단 등 주민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의무화하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지방농정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협치농정체계를 촉진하기 위한 것임
- 셋째, 농촌 지역주민이 제기하는 의제를 충분히 반영해 지방자치단체 농정이 펼쳐지도록 계획협약 제도가 기여하려면, 농정 관련 의제를 평소에 지역의 민간부문이 형성하고 정리해 둘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제도 설계 필요
- 현재 기초지방자치단체들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정의무 계획으로 편성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농발계획’을 수립할 때 면담, 토론회,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반영하라고 지침을 시달한 상태
- 그러나 ‘농발계획’은 시·군 전체 지역을 범위로 삼기 때문에, 설문조사 등을 통해 얻게 되는 주민의 정책 수요는 구체성 측면에서 약점을 지니고 있어, 민간 부문 행위자들이 집합적으로 활동하는 ‘지역사회의 장’안에서 가능한 한 밀도 높은 의사소통이 필요
- 최근 추진되고 있는 농업관련 이해당사자 조직인 농업회의소, 읍면단위 주민대표기구인 주민자치회 등 자치분권 기조에 부합하고 있다는 점을 향후 지방농정추진체계 개편 시 고려하여야 함



## 제4장

# 농림축산국-농업기술원 현황 진단

1. 농림축산국-농업기술원 기본 현황
2. 중앙 농정추진체계 재편 논의 동향
3. 충남 농정목표와 농정추진체계 분석
4. 충남 농정 운영의 특징과 과제





## IV. 농림축산국-농업기술원 현황 진단

### 1. 농림축산국-농업기술원 기본현황

#### 1) 농림축산국-농업기술원 기본현황

■ 5과 24팀 1사업소(107명)<sup>24)</sup> / 2국 8과8연구·관리소 55개팀(152명)

[표 11] 농림축산국 - 농업기술원 기능별 조직 현황

농림축산국		기능별	농업기술원	
팀명	팀수		팀수	팀명(연구소 포함)
합계	24		49	합계
농정기획	1	농업정책	2	성과관리, 기획홍보
-	-	경영소득	2	소득경영, 홍보
농촌복지여성	1	농촌인력	3	단체협력, 청년농업인, 농업인안전
-	-	농업교육	3	실용교육, 전문교육, 농산업기계
-	-	귀농귀촌	1	귀농귀촌
농촌정책	1	도농교류	1	농촌공감
농촌산업	1	농업자원, 농식품	3	생활농업, 자원활용, 농식품가공
농산물마케팅	1	농산물유통	1	수출지원
유통정책, 직거래지원	2	로컬푸드·안전성	-	-
지역식품순환	1	공공급식	-	-
농어가소득지원	11	직불금, 생산비	1	소득경영
식량산업/농업경영	2	식량작물/양곡관리	7	식량작물, 재해대응, 답작, 전특작, (연구소) 전작, 감자, 벼종자
친환경농업	1	친환경	4	기술실용화, 토양환경, 식물병리, 농업해충
원예산업/인삼약초세계화	2	원예특작	16	생명공학, 과수, 신소득작물, 벼섯, 스마트농업, (연구소) 토마토, 수박, 멜론, 딸기, 마늘, 달래, 고추, 생강, 인삼, 약초, 구기자, 잠업곤충, 국화, 백합프리지어
농지, 농업기반, 마을가꾸기, 농촌개발, 축산정책, 축산기술	10	농촌기반조성 축산정책 등	1	원예축산

\* 충남도의회 내부자료를 참고하여 정리

24) 농업기술원과의 비교 분석을 위해 축산과, 동물방역위생과 등 축산관련 부서와 연구소를 제외함.

## ■ 충남도 농업분야 인력 구성 현황

- 충남도의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충남도 농림어업분야 공무원 인력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공무원 정원 2,150명 가운데 626명으로 전체 공무원의 29.1% 차지
- 농림어업분야 공무원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농업분야 256명임. 이 가운데 **충남도 농림축산국** 농업정책 19명, 유통 17명, 식량원에 24명, 농촌활력 16명 등 **총 76명**이며, **농업기술원 180명**으로 연구원 95명, 지도직 30명, 기술직 55명으로 분류됨

## ■ 농림축산국과 농업기술원 사업 현황

- 충남도의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현재 농림축산국 사업 가운데 일반농업분야 사업은 311개이며, 농업기술원은 지도사업 278개, 연구과제 255개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부록에 제시한 농림축산국과 농업기술원 2020년 예산안을 기준으로 사업을 살펴보면, 지역농업인 등 외부인의 관점에서는 기관별 추진사업 간 **차별성과 연계성**을 찾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 이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조직 개편 논의에서도 주요하게 등장하는 과제로 사업 간 유사·중복성, 관련 부서 간 업무 연계와 협력 촉진이 과제로 제기됨

## ■ 농림축산국과 농업기술원 조직개편 동향

- 충청남도는 민선7기 들어 기존 농정국을 농림축산국으로 개편하는 한편, 농촌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기존 농촌마을지원과를 농촌활력과로 확대 개편함
- 최근에는 충남 농어민수당과 공익직불제 도입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가소득지원팀과 농촌복지와 여성 기능강화를 위해 농촌복지여성팀이 신설됨. 또한 푸드플랜 등 먹거리정책 확대에 대응하여 공공급식팀과 지역식품순환팀, 직거래활력팀 등 조직개편이 이뤄짐
- 한편, 농업기술원은 2015년 기능중심으로 연구와 지도 통합하는 조직개편을 시행하고, 기존 시험장을 연구소로 개편한 이후 현재까지 조직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 충남 농림축산국과 농업기술원 사무분장 내역

-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2020.4.1.)를 기초로 농림축산국과 농업기술원의 소관 업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12] 농림축산국 - 농업기술원 간 사무분장 내역

농림축산국 소관	농업기술원 소관
1. 농업정책 및 농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1. 농업과학기술의 개발을 위한 시험 연구
2. 농어촌 발전 종합기획·조정·평가에 관한 사항	2. 주요 농산물의 우량품종 선발 및 육성
3. 후계농어업 경영인의 육성에 관한 사항	3. 주요농작물 생산,유통,저장,가공에 관한 시험연구
4. 농업생산의 종합 기획·조정	4. 비료,농약,토양,수질 등 농업환경과 농산물 안전성에 관한 시험 연구
5. 농촌복지에 관한 사항	5.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작목발굴, 첨단기술 활용연구
6. 농축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6. 산업곤충 이용연구
7. 농산물 수출 지원 총괄	7. 농업경영정보 및 농산물 수출조사연구지도
8.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대책 수립·시행	8. 지속가능 친환경농업 기술개발 및 보급
9. 농식품산업 진흥 업무에 관한 사항	9. 미곡, 맥류, 기타 주요농산물의 우량종자, 종묘, 잠종 생산 보급
10. 식량작물생산 종합대책 및 친환경농업에 관한 사항	10. 시험연구사업에서 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보급에 관한 사항
11. 양장·양곡 관리 및 유통에 관한 사항	11. 식량, 원예, 축산 및 농업재해 대응 기술보급 지도
12. 잠업, 특용작물, 채소, 과수, 화훼에 관한 사항	12. 농업경영체의 경영진단 및 지원
13. 인삼 약초산업 육성 업무 총괄	13. 농업인 후계인력 및 농업인 조직육성
14. 농지의 보전·이용, 정주지원에 관한 사항	14. 농촌자원의 소득화 및 생활개선 지원
15. 농업진흥지역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15. 영농기술 보급을 위한 교육 및 농기계 훈련
16. 농어촌마을만들기, 지역전략산업육성	16. 그 밖에 농업·농촌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기술지원에 필요한 사항
17. 농업활동의 공익적 가치 보장 증진에 관한 사항 등	

\*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2020.4.1. 현재) 기준하여 정리.

### ■ 농림축산국-농업기술원 조직 및 인원 현황

- 농림축산국과 농업기술원의 조직과 인원 현황을 비교하면<sup>25)</sup>, 농림축산국 5과 1소 24팀 107명, 농업기술원은 2국 8과 5연구·관리소 4분장에 176명

### ■ 농림축산국-농업기술원 2020년 예산 현황

- 농림축산국 2020년 예산은 8,605억원이며, 이 가운데 국비가 4,431억원으로 전체예산의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비 2,869억원으로 33%, 기타 1,305억원으로 15%로 구성됨
- 농업기술원 2020년 예산은 721억원이며, 이 가운데 국비는 전체 예산의 31%인 220억원이며, 전체 예산의 69%가 도비로 지원되고 있음

### ■ 농림축산국-농업기술원의 주요기능

- 농림축산국은 충남 농업·농촌 정책과 관련된 종합기획 및 조정, 추진이 주요 기능이며, 농업기술원은 농업기술 연구개발 및 보급이 핵심 기능으로 분류됨

[표 13] 농림축산국 - 농업기술원 기본현황 비교

농림축산국	구 분	농업기술원
· 5과 1소 24팀 * 동물위생 제외 107명(행정28, 농업34, 축산15, 수의·연구, 시설, 기타 30) ※ 일반농업 : 59명(정책 19, 유통 17, 농산 23)	조직·인원	· 2국 8과 5연구·관리소 4분장 176명 (연구90, 지도27, 행정·기술·기타 59) ※ 농업분야 : 147명(연구 90, 지도 27, 기타 30)
<b>8,605억원</b> (국4,431(52%),도2,869(33%),기타 1,305(15%))	20년 예산	<b>721억원</b> (국비 220 (31%), <b>도비501 (69%)</b> )
·농업정책 및 농촌개발 종합기획·조정 ·농축산물 생산·가공·유통 등의 종합기획 추진	주요기능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보급 ·식량의 안정적 공급 및 농업 전문인력 양성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 15개 시군	중앙· 시군연계	농촌진흥청 / 시군 농업기술센터

\* 충남도의회 내부자료를 기초로 연구진이 정리

25) 농업기술원과의 비교 분석을 위해 동물방역위생과 등 축산관련 부분을 일부 제외한 것으로 농림축산국 실제 조직 및 인원과 차이가 있음

## ■ 농림축산국-농업기술원 사업예산 분석

- 농림축산국과 농업기술원 2020년 사업예산에서 기존 예산구조와 가장 큰 특징은 복지생활환경분야의 예산이 전체 예산의 51%나 차지하고 있는 점임
- 이는 2020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충남 농어민 수당 지원과 공익직불제 등 직접지불이 확대에 따른 예산구조의 변화임
- 농림축산국과 농업기술원 2020년 예산 가운데 농업기반시설분야는 농림축산국에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기술개발지원분야는 농업기술원에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점을 제외하면, 모든 분야에 농림축산국과 농업기술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사업 간 유사·중복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 농업기반시설과 기술개발지원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예산이 양 기관에 편성되어 있어 기관 간 사업영역과 사업 간 연계 강화방안 검토 필요

[표 14] 농림축산국-농업기술원 사업예산 분석(2020년 기준)

(단위 : 천원, %)

구분	농림축산국		농업기술원		합 계	
	예산액	비율 (분야/총액)	예산액	비율 (분야/총액)	예산액	비율(총액)
기술개발지원분야	-	-	15,644,376	100/2.67	15,644,376	2.67
농업기반시설분야	75,453,315	100/12.53	-	-	75,453,315	12.53
복지생활환경분야	303,485,048	99.93/51.79	210,000	0.07/0.04	303,695,048	51.83
생산분야	56,307,929	93.95/9.61	3,628,203	6.05/0.62	59,936,132	10.23
유통분야	90,879,349	97.92/15.61	1,941,670	2.08/0.33	92,821,019	15.94
역량강화분야	8,599,834	32.86/1.47	20,257,220	67.14/3.0	28,857,054	4.47
기타분야	6,779,388	56.2/1.16	5,283,271	43.8/0.9	11,094,234	2.05
행정운영 경비	268,695	16.12/0.04	3,402,034	83.88/0.24	1,666,929	0.28
합계	541,773,558	91.96	50,366,774	8.04	589,168,107	100

※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서(농림축산국, 농업기술원)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농림축산국 예산에서 산림 및 축산분야(운영비 포함) 사업 및 예산은 제외

※ 농업기술원 예산 중 총무과 예산(21,471,555천원)은 제외

※ 비율(분야/총액)는 분야: 분야별 농림축산국과 농업기술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  
총액: 농림축산국+농업기술원 총 예산 중 차지하는 비율 의미

## 2) 전라북도 농정조직 현황

### ■ 전북 농축산식품국과 전북농업기술원 기능별 조직 현황

[표 15] 전북 농축산식품국 - 농업기술원 기능별 조직 현황

농축산식품국		기능별	농업기술원	
팀명	팀수		팀수	팀명(연구소 포함)
합계	27		31	합계
농정기획, 삼락농정	2	농업정책	2	연구기획, 지원기획
-	-	경영소득	2	소득경영, 홍보
농업인육성	1	농촌인력/농업교육	2	인력육성, 생활자원
귀농귀촌	1	귀농귀촌	-	-
생생마을	1	도농교류	-	-
농식품6차산업, 농생명기획, 식품클러스터, 농식품마케팅	4	농업자원, 농식품	2	가공소재, 전통식품
-	-	농작물관리	5	식물의학, 농업생태, 작물보호, (연구소) 답작, 전작
농산물유통	1	농산물유통	2	미디어홍보, 경영유통
로컬푸드	1	로컬푸드·안전성	-	-
농민소득안정, 농자재종자	2	직불, 생산비	1	소득경영
식량산업	1	식량작물 양곡관리	4	고품질쌀, 전특작, 새만금농업, 식량작물,
친환경농업	1	친환경	1	토양비료
스마트원예	1	원예특작	10	화훼, 아열대작물, 채소, 과수, (연구소) 약초시험, 허브산채시험, 파프리카시험, 수박시험, 소득기술, 잠사곤충시험
농지관리, 농업기반, 농촌개발	3	농촌기반조성	-	-
축산정책, 동물방역 등	8	축산정책 등		

\* 전라북도와 전북농업기술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연구진이 정리

## ■ 전북 농축산식품국-농업기술원 사무분장 내역

- 전라북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2020.7.1. 현재)를 기준으로 전북 농축산식품국과 농업기술원 사무분장 내역 정리
- 전북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분장을 살펴보면, 충남 농림축산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농정기획과 농식품을 중심으로 기능이 집중되어 있음

[표 16] 전북 농축산식품국 - 농업기술원 사무분장 내역

농축산식품국 소관	농업기술원 소관
1. 농정기획·삼락농정·농업인육성·농지관리·농업기반에 관한 사항	1. 농업과학기술의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
2. 생생마을·귀농귀촌·농식품6차산업·농촌개발에 관한 사항	2. 주요 농작물의 우량품종 육성 및 선발·보급 연구
3. 친환경농업·농산물유통·식량산업·스마트원예·농자재·농민소득안정에 관한 사항	3. 기후변화 대응 및 농업환경 보전에 관한 시험연구
4. 농생명기획·식품클러스터·농식품마케팅·로컬푸드에 관한 사항	4. 비료·농약·토양 등의 친환경농업 연구 및 농자재 선발
5. 축산진흥·축산경영·친환경축산·축산환경개선·동물보호에 관한 사항	5. 농업경영 및 농업정보에 관한 분석·조사 연구
6. 동물방역·질병관리·축산물위생에 관한 사항	6. 주요 농산물의 저장이용 및 식품가공에 관한 시험연구
	7. 농촌청소년 및 농업인후계자 등 후계인력 및농업인 조직의 육성
	8. 농축산물의 우량종자·종축의 보급
	9. 시험연구 사업에서 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보급
	10. 지역농업의 개발과 농촌생활환경 개선 지도
	11. 농작물의 품질향상 및 가축질병 예방 방역기술 지도
	12. 농작물의 병충해 예찰방제 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 대비 기술지도
	13. 농작물 원원종 원종생산 공급
	14. 잠사곤충에 관한 시험연구 및 기술보급
	15. 그 밖의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농촌지도 및 취업알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전라북도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진이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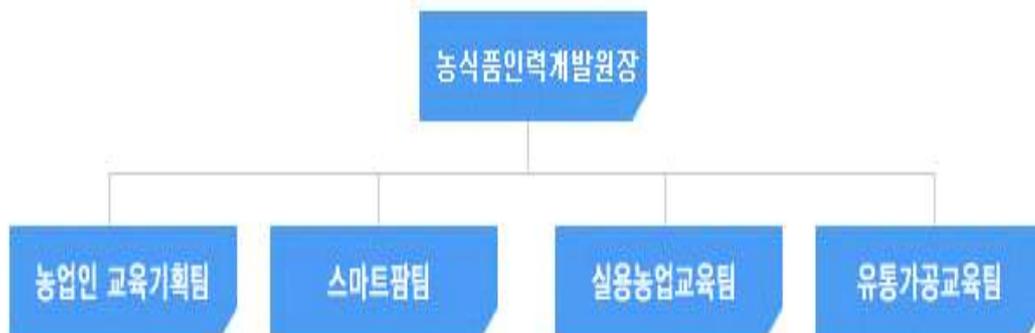
## ■ 전라북도 농식품인력개발원 현황<sup>26)</sup>

- 전라북도는 지난 2007년 농업기술원 산하 농민교육원을 전북도 농림국 관할 농업인력개발원으로 이관
- 전북도 농림국으로 이관된 농업인력개발원은 현재 지난 2011년 농식품인력개발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에 이름
- 전북 농식품인력개발원은 현재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북도에서 운영하는 농업인 관련 교육 전담조직이며, 최근에는 특히 로컬푸드와 농식품 유통 가공 관련 기능을 강화함

[표 17] 전라북도 농식품인력개발원 주요연혁

연도	내용
'70. 12. 17.	전라북도 새농민교육원 설치(익산 동산)
'81. 09. 22.	현 청사로 이전 개원(김제시 백구면 신모길 19)
'01. 08. 01.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농민교육원으로 직제 개편
'07. 08. 06.	<b>전라북도 농업인력개발원(2담당)으로 직제 개편</b>
'10. 08. 19.	전라북도 농식품사관학교(2담당)으로 직제 개편
'11. 08. 26.	전라북도 실용농업교육센터 준공(3,589㎡)
'11. 12. 16.	전라북도 농식품인력개발원(2담당)으로 직제 개편
'12. 07. 20.	전라북도 농식품가공교육관 준동(2,926㎡)
'14. 10. 22.	전라북도 농식품인력개발원(3팀)으로 직제 개편
'19. 01. 02.	전라북도 농식품인력개발원(4팀)으로 직제 개편

[그림 10] 전라북도 농식품인력개발원 조직



26) 전라북도 농식품인력개발원 홈페이지 참조

[표 18] 전라북도 농식품인력개발원 조직별 인원 현황

	농식품 인력개발원장	농업인 교육기획팀	스마트팜팀	실용농업교육팀	유기가공교육팀
계	1	8	10	6	6
	31명				

[표 19] 전라북도 농식품인력개발원 2020년 교육과정

구분	과정명	
삼락농정 미래인력양성	20개	□ 소규모 농식품가공 창업, 예비 후계농업인 육성 창업형 귀농, 승계형 귀농, 귀농인 농기계 입문 등
과학영농	35개	□ 병해충 종합관리, 온실 환경제어 입문, 채소 육종 입문, 시설오이 재배, 기계화 영농사 등
농식품가공	22개	□ 농식품가공 입문, 식품 영업허가 및 인증제도 이해, 식품가공기능사, 장류제조 등
농식품유통	19개	□ 농업회계프로그램 활용,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 인스타그램 마케팅, 공모사업계획서 작성 등
농촌체험관광	2개	□ 농어촌체험지도사, 치유농장기초 등
축산 및 수산	14개	□ 한우, 젓소, 양계, 곤충사육, 갑각류 양식 등
전북농업마이스터대학	14개	□ 수도작, 고추, 토마토, 친환경채소 등
수산기술연구소	4개	□ 내수면 신품종 양식, 수산업 경영인 등

### 3) 충남과 전북 농정조직과 기능 비교

#### (1) 충남과 전북 농업 기본현황 비교

##### ■ 충남과 전북 농가 및 농가인구 현황

- 충남과 전북 농가 및 농가인구를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충남은 119,903호 263,124명으로 전국대비 약 11% 비중을 보임. 전북은 94,735호 100,376명임
- 농가는 충남이 전북보다 25,168호 많고, 농가인구는 충남이 전북보다 162,748명이 많아 전북 농가인구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20] 충남, 전북 농가 및 농가인구 현황(2019)

(단위 : 가구, 명, %)

구분	전국	충남		전북	
		충남	전국대비	전북	전국대비
농가	1,007,158	119,903	11.9	94,735	9.4
농가인구	2,244,783	263,124	11.7	100,376	4.5

※ 자료 : 통계청

##### ■ 충남과 전북 경지면적 현황

- 충남과 전북 경지면적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충남은 210,428ha로 전국 경지면적의 13%수준이며, 전북은 195,191ha로 전국 경지면적의 12%로 충남과 전북 경지면적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충남과 전북 호당 평균 경지면적을 계산해 보면, 충남은 평균 1.75ha이고, 전북은 2ha로 전북 농가의 평균 경지면적이 0.3ha 가량 넓은 것으로 분석됨

[표 21] 충남과 전북 경지면적 현황(2019)

(단위 : ha, %)

구분	전국	충남		전북	
		충남	전국대비	전북	전국대비
2019	1,580,957	210,428	13.3	195,191	12.3

※ 자료 : 통계청

## ■ 충남과 전북 농업소득 현황

- 충남과 전북 농가소득과 농업소득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충남 농가소득은 44,019천원으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남. 농가소득 가운데 농업소득은 12,919천원으로 농가소득의 약 29%가 농업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됨
- 전북 농가소득은 41,214천원으로 전국 평균수준이며, 농업소득은 13,106천원으로 농가소득의 약 3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충남보다 농업소득이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22] 충남과 전북 농업소득 현황(2019)

(단위 : 천원)

구 분	농가소득	농업소득
전국평균	41,182	10,261
충남	44,019	12,919
전북	41,214	13,106

※ 자료 : 통계청

## ■ 충남 농가 농업소득보다 농외소득과 기타소득에 의존 경향

- 충남과 전북 농업 기본현황 비교 결과, 농가인구는 충남이 전북보다 2배 이상 많지만, 호당 평균경작규모는 전북이 충남보다 0.3ha 가량 많고, 농업소득 역시 전북이 충남 농업소득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충남 농가소득은 전북 농가소득보다 많지만, 농업소득은 적어 충남 지역농가들이 농업보다 농외소득과 기타소득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음
- 향후 충남 지역농가의 농업을 통한 소득안정방안 검토가 필요함

## (2) 충남과 전북 농정조직과 기능 비교

### ■ 충남 농림축산국 VS 전북 농축산식품국 조직 명칭

- 충남과 전북 농정조직을 살펴보면, 충남도는 농림축산국, 전북도는 농축산식품국으로 도 행정조직 명칭에서 강조점에 차이를 알 수 있음
- 충남은 산림을 포함하고 있고 생산을 강조하는 반면, 전북은 식품·유통 강조

[표 23] 충남도와 전북도 농정조직 현황 비교

(단위 : 개, 명)

분 류	충남도		전북도		
	농림축산국	농업기술원	농축산식품국	농업기술원	농식품인력개발원
과 수(연구소 포함)	7	17	6	10	4
인 원	137	278	125	200	31

### ■ 충남 농림축산국 인원 VS 전북 농축산식품국 인원

- 충남과 전북 농정조직 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충남도는 137명, 전북도는 125명으로 충남도가 12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분야별 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전북도는 농산유통과와 농식품산업과에 48명을 배치하여 전체 인원의 38%에 달함. 반면 충남도에서 유사기능을 갖는 농식품유통과와 식량원예과에 43명을 배치하여 전체 인원의 31% 수준으로 파악됨

[표 24] 충남 농림축산국 조직 인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국장	농업 정책과	농식품 유통과	식량 원예과	농촌 활력과	산림 지원과	축산과	동물방역 위생과	
계	137	1	20	19	24	16	27	14	16

※ 자료 : 충남도청 홈페이지

[표 25] 전북 농축산식품국 조직 인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국장	농업 정책과	농촌 활력과	농산 유통과	농식품 산업과	축산과	동물 방역과	
계	125	1	23	19	28	20	19	15

※ 자료 : 전북도청 홈페이지

[표 26] 충남 농림축산국 조직도



※ 자료 : 충남도청 홈페이지

[표 27] 전북 농축산식품국 조직도



※ 자료 : 전북도청 홈페이지

## ■ 충남 농업기술원과 전북 농업기술원

- 충남 농업기술원은 기술개발국과 농촌지원국 2개 국과 8개 연구·관리소로 구성되어 있고, 기술개발국에 총무과, 작물연구과, 원예연구과, 친환경농업과 등 4개 과가 속해 있고, 농촌지원국은 기술정책과, 기술보급과 농촌자원과, 역량개발과 등 4개 과가 속해 있음
- 전북 농업기술원은 행정지원과, 연구개발국과 농촌지원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 안에 관련 연구·관리소가 소속되어 있어 충남과 차이를 보임

[표 28] 충남 농업기술원 조직 인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원장	총무과	기술개발국	농촌지원국	과채연구소	딸기연구소	양념채소연구소
계	1	28	89	47	12	11	15

구분	화훼연구소	인삼약초연구소	구기자연구소	산업곤충연구소	종자관리소	논산분소
계	278	17	14	13	10	7

※ 자료 : 충남도청 홈페이지

[표 29] 전북 농업기술원 조직 인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원장	행정지원과	연구개발국 (작물식품과, 농업환경과, 원예과 약용자원연구소, 과채류연구소)	농촌지원국 (농촌지원과, 자원경영과 기술보급과, 종자사업소)	
계	200	1	24	103	72

※ 자료 : 전북도청 홈페이지

## ■ 전북, 농업기술원 역량강화 기능 분리 농식품전문교육기관으로 기능 강화

- 전북은 2007년 농업기술원 산하 농민교육원을 도 산하기관으로 직제를 개편한 이후, 2014년 “전라북도 농식품인력개발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농업관련 교육전담조직으로 기능을 강화함
- 전북도 차원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농식품’을 강조하여 기관명칭을 변경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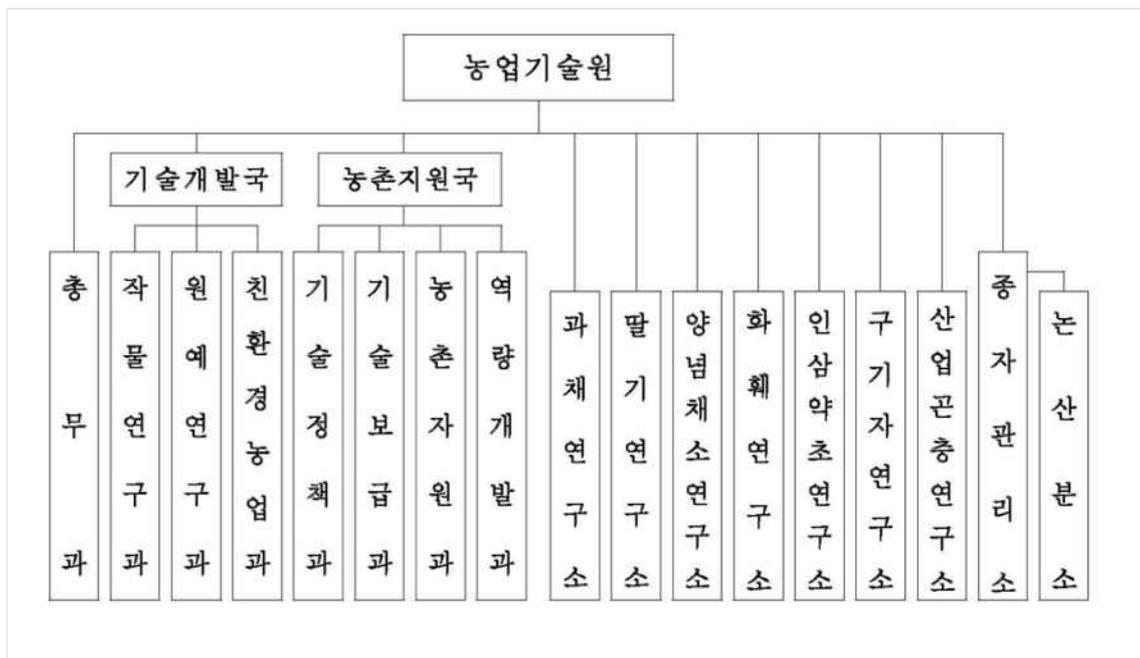
고, 스마트팜, 농식품 가공·유통, 귀농귀촌교육 등 농업관련 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충남은 농림축산국과 농업기술원 양 기관 모두에 역량강화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2020년 예산 기준으로는 농림축산국과 농업기술원 역량강화예산이 약 3:7의 비중으로 편성된 것으로 분석됨

### ■ 충남농업기술원 전통적인 생산기술 개발에 초점

- 충남농업기술원은 전통적인 농업 생산기술 개발에 여전히 초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농업·농촌 현장수요와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영역 개척과 기능 전환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표 30] 충남 농업기술원 조직도



※ 자료 :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 현황(2020. 7. 충청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표 31]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조직도



※ 자료 : 전라북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

## 2. 중앙 농정추진체계 재편 논의 동향

### 1) 농림축산식품부 추진체계 재편 논의 동향

#### ■ 지방분권과 농정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한 농정추진체계 재편

-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몇 년간 지방분권에 따른 중앙사무 지방이양이 확대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중앙단위 농정추진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 검토 중
- 향후 추가로 확대될 중앙단위 농정사무의 지방이양에 대비하여 중앙정부 전담 농정사무의 기준을 결정함

[표 32] 중앙정부 전담 농정행정 분야

기준	대상 사업 예시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소득보전 등 직물제 사업, 식량안보를 위한 생산기반정리 등
사업의 효과가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농정사업	농산물 수급안정사업, 농가소득 안정사업, 수출증대 소비지유통사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기준의 적용이 필요한 사업	이차보전 등 정책금융, 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식품안전관리 등
대규모 시범사업 등 초기 기획개발이 중요한 사업	스마트 팜 점단농업 등
인력육성 및 교육, R&D 사업	신규청년농업인육성사업, 농업부문, R&D지원사업 등
지방정부가 담당하면 지원이 되지 않는 사업	사회적 농업육성 등

\* 한국행정연구원(2019). 『지방분권화에 대응한 조직관리 방안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 ■ 농정사업의 유형화와 추진체계 방향

-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연구용역<sup>27)</sup> 을 통해, 사업의 지역적 특성범위(지역 차별성)와 책임주체(사회적 효과)를 고려하여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로 농정사업을 유형화하고 추진체계 정리

27) 한국행정연구원(2019). 『지방분권화에 대응한 조직관리 방안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참조.

[표 33] 농정사업의 유형화와 추진체계 방향

사업의 지역적 특성범위(지역 차별성)			
		지역(높음)	전국(낮음)
책임주체 (사회적 효과)	국가	국고보조사업 사업규모가 큰 농업기반시설 구축 및 지역개발사업	국고보조 중심 농정사업 직불제 사업, 수급안정사업 등
	지방	지방 자체 농정사업 로컬푸드사업 등	국고보조사업(공모사업 등) (세부지침의 지역 자율성 제고) 스마트 팜 농업, 사회적 농업

\* 한국행정연구원(2019). 『지방분권화에 대응한 조직관리 방안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 ■ 농림축산식품부 조직 재설계 : 중장기(1안)

- (現)농림축산식품부의 2실 4국 체제를 (新)4실 체제로 재편하고, 정책기획 기능 및 국제협력 기능 수행강화를 위한 (現)기획조정실 기능을 확대·강화
- 농촌 지역개발정책 선진화,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 안정화 그리고 농식품 및 농축산물 생산 및 유통 기능 등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新)농촌정책실을 신설할 필요
- 농식품 및 농축산물 안정성 확보, 식품생활 및 소비자 보호, 그리고 검역 및 방역 기능 강화를 위해 (新)안전정책실을 신설을 제안

### ■ 농림축산식품부 조직 재설계 : 중장기(2안)

- (現)농림축산식품부의 2실 4국 체제를 (新)4실 체제로 재편하고, 정책기획 기능 및 국제협력 기능 수행강화를 위한 (現)기획조정실 기능을 확대·강화
- 농촌 지역개발정책 선진화,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 안정화, 농식품 및 농축산물 생산 및 유통 기능 등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新)농촌정책실을 신설
- 농식품 및 농축산물 안정성 확보, 식품생활 및 소비자 보호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및 축산물 육성 기능 강화를 위해 (新)농식품생산안전정책실을 신설 제안

### ■ 농림축산식품부 조직 재설계 : 중장기(3안)

- (現)농림축산식품부의 2실 4국 체제를 (新)3실 2국 체제로 재편하고, 정책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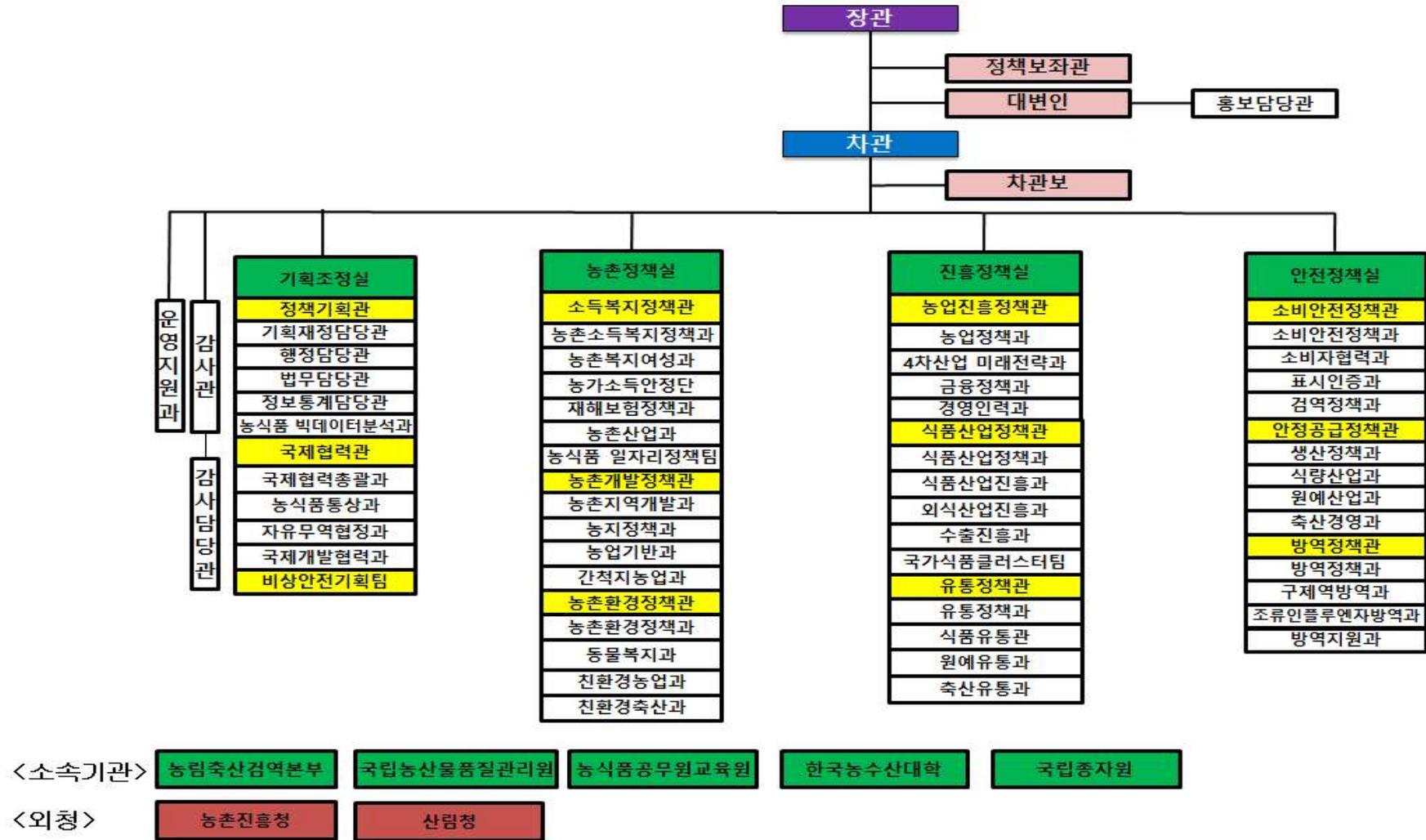
---

기능 및 국제협력 기능 수행강화를 위한 (現)기획조정실 기능을 확대·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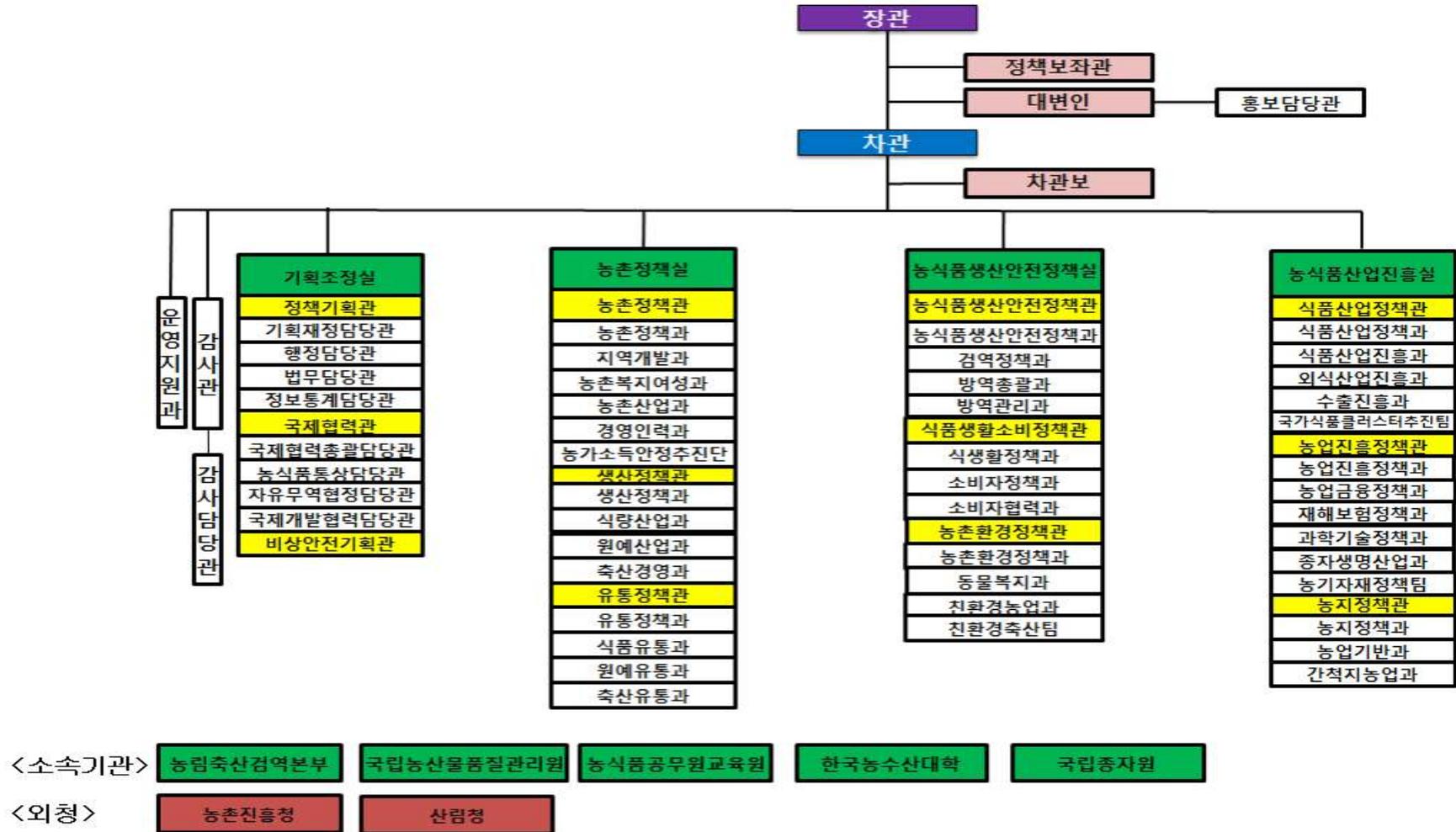
- 농촌지역개발정책 선진화,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안정화, 농식품 및 농축산품 생산 및 유통기능 등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新)농촌정책실을 신설 필요
- 농식품 및 농축산품 안정성 확보, 식품생활 및 소비자 보호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및 축산물 육성 기능 강화를 위해 (新)농식품생산안전방역정책국 및 (新)농촌환경정책국 신설을 제안
- 농식품 산업 및 농업 진흥 그리고 농지 정책 기능 수행 강화를 위하여 (現)식품산업정책실을 (新)농식품산업진흥실로 명칭변경하고 재편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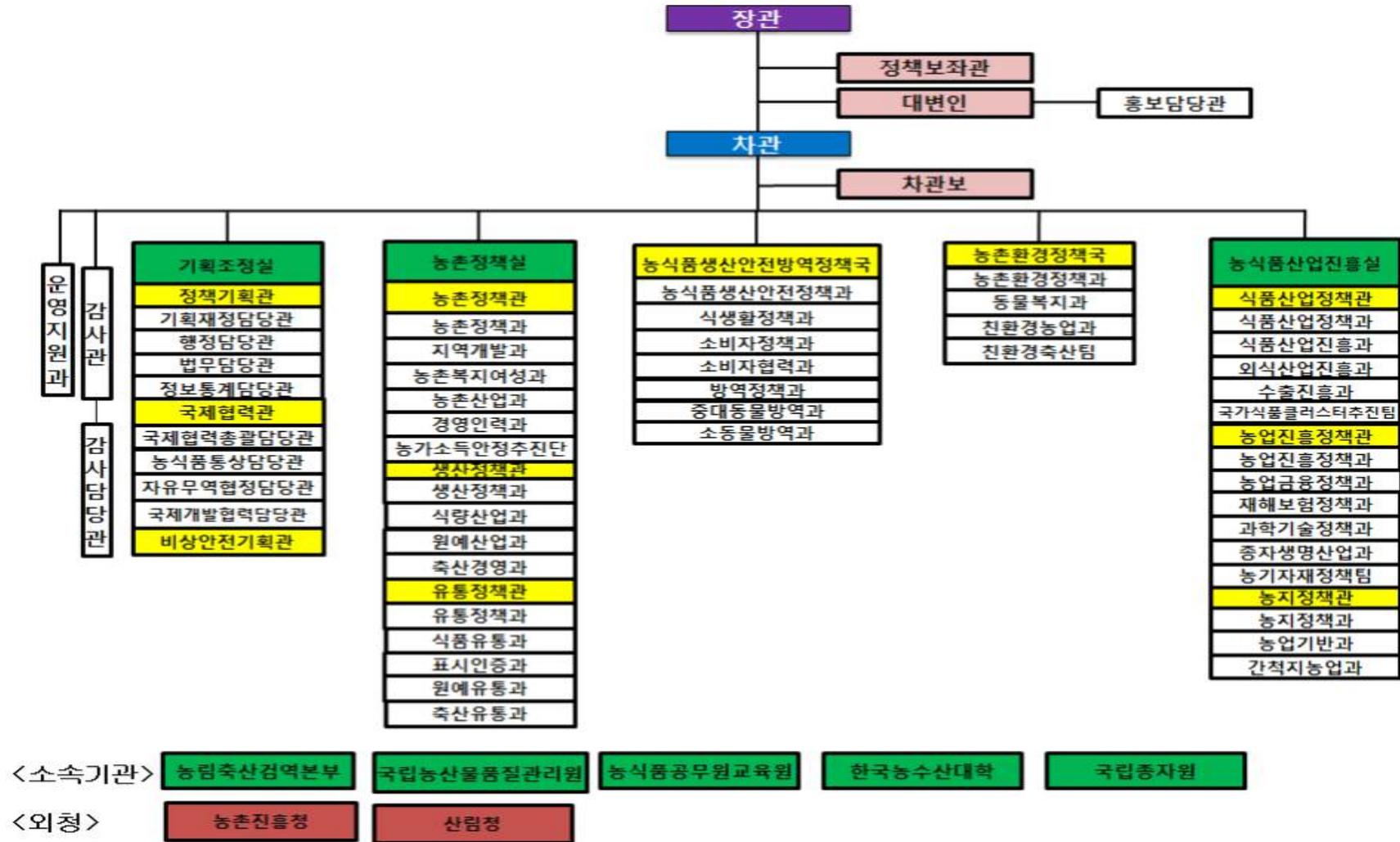
[그림 11] 미래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조직 재설계(중장기 1안)



[그림 12] 미래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조직 재설계 (중장기 2안)



[그림 13] 미래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조직 재설계 (중장기 3안)





[표 34] 농림축산식품부 조직개편 대안별 장단점(중장기 비교)

	장점	단점
중장기 (1안)	<p>농촌정책실 : 소득복지, 농촌개발, 농촌환경 중심                      진흥정책실 : 농촌진흥, 식품산업개발, 유통정책 중심                      안전정책실 : 소비안전, 안정공급, 방역 중심</p> <p>- ‘실-국-과’ 기능집중화로 구성된 조직형태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농촌의 낙후, 농작물단가 하락 등 농가소득, 농촌복지, 일자리, 4차산업, 유통, 검역, 방역, 동물복지 등에 중점을 두어 관련 이슈에 대하여 능동적 대처 가능                      - <b>과거 융합 및 협업이 요구되는 부서들을 통합 및 이관을 통해 협업 가능</b></p>	<p>- 기능집중화에 따른 실, 관, 과별 융합 및 협업에 대하여 미흡할 수 있음                      - 연계성과 실별 총괄조정기능 취약</p>
중장기 (2안)	<p>농촌정책실 : 농촌, 생산, 유통 중심                      농식품생산안전정책실 : 농식품생산안전, 식품생활소비관련, 농촌환경 중심                      농식품산업진흥실 : 식품산업, 농업진흥, 농지정책 중심</p> <p>- ‘실-국-과’로 기능집중화                      - 농식품생산안전, 과학기술 부각 등 농식품에 식품생산→유통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부합하는 조직개편임                      - 농촌과 농식품생산안전, 농식품산업진흥 중심재편, 미래4차산업 및 스마트농촌에 적극대응                      - <b>중복되는 농축산물안전정책과, 수입식품정책과 등을 이관 및 통합하여 효율성 제고</b></p>	<p>- 수평적 연계성 미흡으로 실간 협력문제 발생</p>
중장기 (3안)	<p>농촌정책실: 농촌, 생산, 유통 중심                      농식품생산안전정책국: 농식품생산안전, 방역 중심                      농촌환경정책국: 농촌환경, 동물복지, 친환경농업 및 축산 중심                      농식품산업진흥: 식품산업, 농업진흥, 농지정책 중심</p> <p>- ‘실-국-과’ 기능중심의 조직형태에 안전방역, 환경정책 등 집행중심부서는 ‘국’으로 유지, 집중과 선택뿐만 아니라 현실적 기능을 위한 조직개편 진행                      - 농식품생산안전, 과학기술부각 등 농식품생산→유통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부합한 조직개편임                      - <b>중복되는 농축산물안전정책과, 수입식품정책과 등을 이관 및 통합하여 효율성 제고</b></p>	<p>- 기존 조직구성과 마찬가지로 조직운영 및 효율성에 있어 ‘실-관-과’와 ‘국-과’가 혼재하여 애매모호성 발생될 수 있으며 의사결정에 있어 어느 정도 비효율적인 측면이 발견될 수 있음</p>

\* 한국행정연구원(2019). 『지방분권화에 대응한 조직관리 방안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참조.

## 2) 농촌진흥청 조직체계 개편에 관한 논의 동향<sup>28)</sup>

### ■ 농촌진흥청, 1962년 농업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을 위해 설립

- 농촌진흥청은 기존 농촌진흥사업, 농림부 지역사회국, 훈련원, 제주목장, 연초시험장 등을 통합하여 2국 11개 연구소와 시험장으로 1962년 발족
- 농업과학기술의 연구개발·보급·교육훈련 및 국제기술협력,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 향상, 농업인 복지·농촌활력 증진 등 농촌진흥에 관한 사무를 담당함

### ■ 1997년 지방농촌진흥기관 지방직화를 계기로 지속적인 체계 정비

- 1997년 1월 지방농촌진흥기관 소속 공무원(연구 및 지도직 공무원)을 지방직으로 전환(7,324명)
- 국가직이었던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1997년 지방직화 후 20년 이상 경과.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지방직화는 WTO체제 출범에 따른 농산물 수입개방과 1995년 지방자치시대의 개막 등 급속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됨
- 농촌진흥청은 변화하는 여건에 대응한 농촌진흥사업의 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능과 조직체계 정비 중

### ■ 4차 혁명에 대응한 미래 농축산업 선도 연구기능 강화

- ICT 및 융복합 기술 확산에 따라 첨단 농축산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도적인 연구를 지원하는 기능 강화 필요
- 4차 산업혁명을 통해 확보 가능한 기술(예: 드론,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스마트 팜 보급·확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팀을 신설(혹은 기능 강화) 필요

### ■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대응한 효과적인 유전자원 R&D 관리체계 구축

- 나고야 의정서에 대응하기 위해 농축산물 유전정보 생산, 관리, 활용 체계를 강화하고 연구 및 농가지원 과정에서 시장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유전자

28) 전주상 외(2017), 『미래비전 달성을 위한 농촌진흥청 조직체계 개편』, 농촌진흥청 자료 참조.

원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신제품 개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관리체계 확립

#### ■ FTA 대비 농업 부가가치 창출 지원체계 확립

- FTA 체결로 인한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응한 역량 확보를 위해 생산비 절감 및 관련 기술 보급을 위한 지원 체계 확립이 필요

#### ■ 인구·사회구조와 소비트렌드 변화에 대응 농업6차산업화 지원체계 강화

- 생활수준 등의 변화로 인해 자연친화적 농축산 식품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농촌이 보유한 다양한 사회·문화적 자원을 활용한 농업 6차 산업화 촉진 지원 기능 확보가 요구
- 저출산 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농가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농촌 공동화 현상 등에 대비한 지원 기능 구축 필요
- 도시농업, 생활농업, 반려동물 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대도시 및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생활밀착형 농업지원체계 구현 기반을 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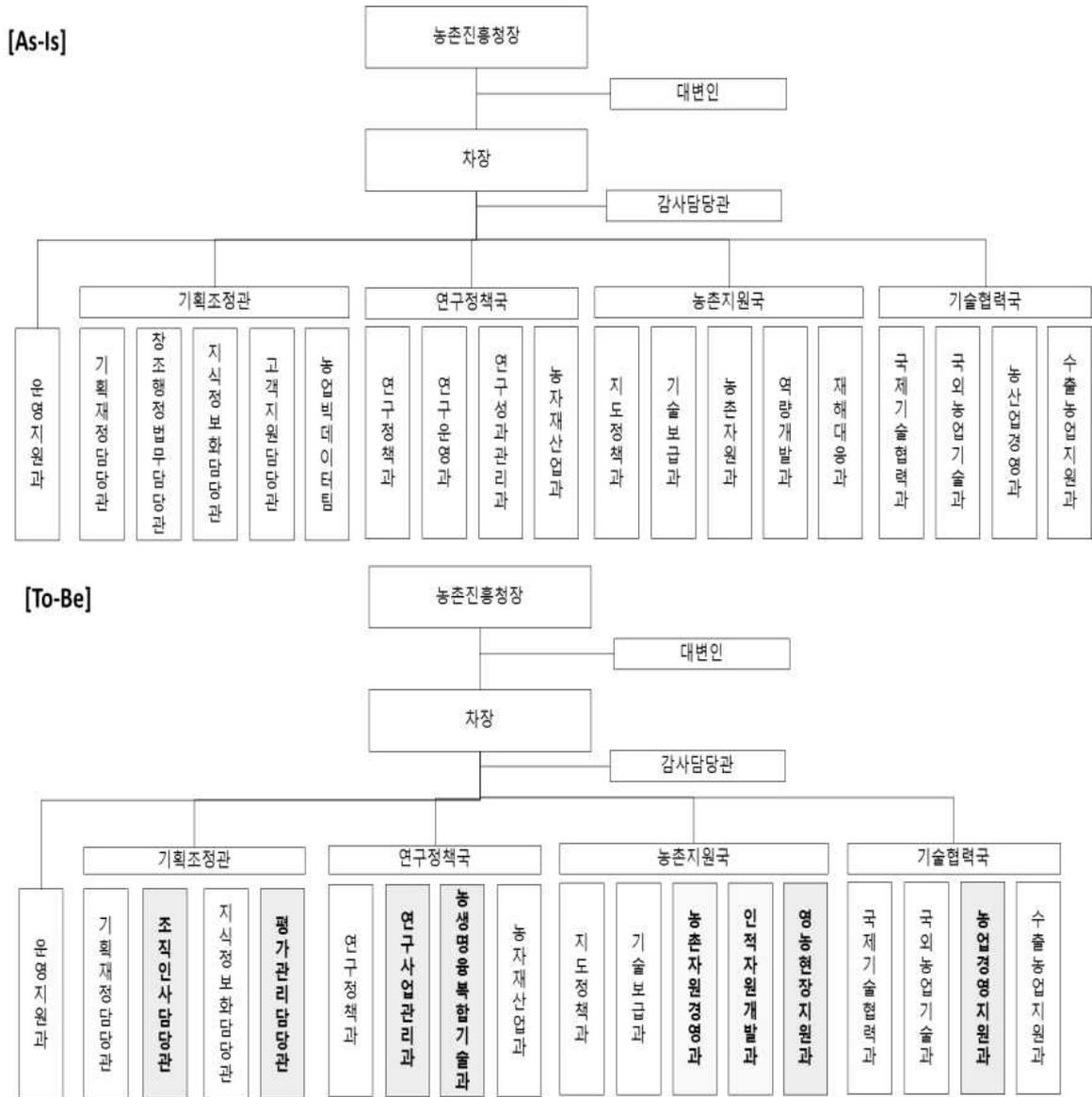
#### ■ 기후변화대응 및 생물다양성협약 등으로 인한 재해대응 역량 강화

- 기후변화로 인한 농축산 생산 환경의 변화 및 농산물 병충해, 가축질병 방지를 위한 연구 지원기능 강화

## ■ 농촌진흥청 조직개편 방안(1안)

- 조직개편 1안은 기술협력분야와 관련하여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의 안정적인 연구관리 지원 및 조직관리의 효율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어 기획조정관의 조직인사 및 법무 기능을 분리하고, 연구정책국의 융복합기술개발 지원 기능 강화에 초점

[그림 14] 조직 개편안(1안) : 1관 3국 5담당관 15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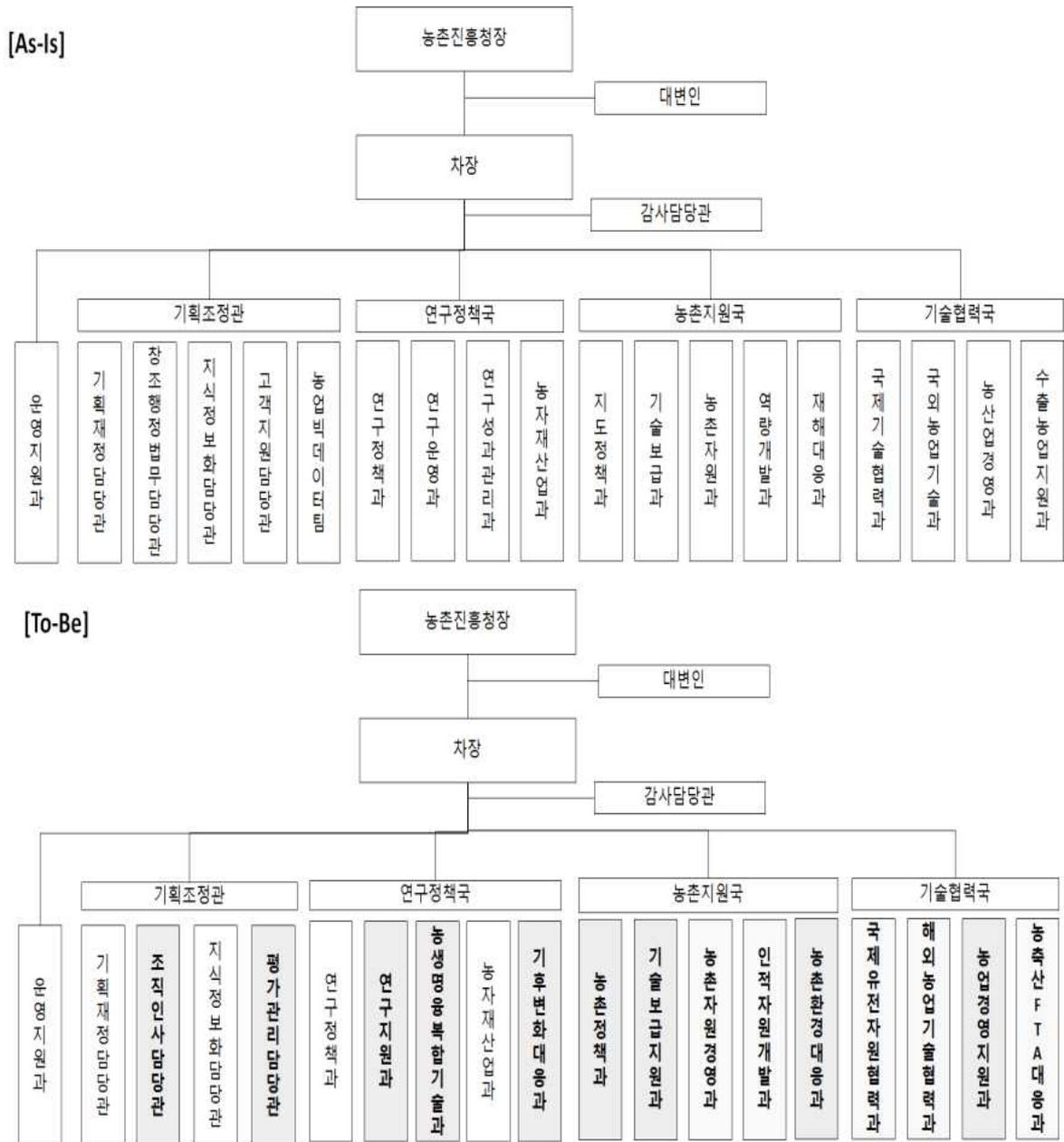


\* 전주상 외(2017), 『미래비전 달성을 위한 농촌진흥청 조직체계 개편』, 농촌진흥청.

## ■ 농촌진흥청 조직개편 방안(2안)

- 조직개편 2안은 기술협력 분야와 관련하여 나고야의정서 체결, 기후변화 협약 및 생물다양성 협약에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 간 기술협력 및 이용체계 구축을 안정화하는데 초점

[그림 15] 조직 개편안(2안) : 1관 3국 5담당관 16과



\* 전주상 외(2017), 『미래비전 달성을 위한 농촌진흥청 조직체계 개편』, 농촌진흥청.

### 3)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조직개편 논의의 시사점

#### ■ 농림축산식품부 조직개편 기본방향 : 분권과 협치, 통합적 접근

-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지방분권에 대응한 조직개편 검토 중
- 조직개편의 기본 방향은 분권과 협치, 통합추진체계, 포괄적 아젠다임. 기존 중앙의 설계주의 농정에서 탈피,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는 자치농정체계로 전환하는 한편, 중앙의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는 계획협약을 통해 협치를 강화한다는 계획임
- 통합적 추진체계로의 전환은 기존 부처별 단위사업으로 추진되던 것을 정책 목표별, 정책수단별, 정책내용별 통합추진체계로 전환하게 됨. 특히 중앙부처의 모든 사업이 모이게 되는 기초지자체에서는 통합적 정책추진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유도할 방침임
- 마지막으로 기존 단위사업별 공모방식을 단계별로 폐지하고, 중앙정부는 아젠다 발굴과 관리 중심으로, 지자체는 아젠다를 실현하기 위한 지역단위 프로젝트 개발로 역할을 분담해 나간다는 계획임

[그림 16] 지방이양과 농림축산식품부 조직관리의 방향

	방향	정의
<b>분권과 협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담보되는 분권과 협치의 농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행정과 민간 간의 분권과 협치, 민간과 민간 간의 협치 농정</li> </ul>
<b>통합적 접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목표간 통합, 정책수단간 통합, 정책내용의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단위의 정책을 지역단위에서 통합적인 추진을 위한 기초단위의 통합적 정책추진시스템 구축</li> </ul>
<b>포괄적 어젠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위정책사업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어젠더방식으로 전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정부는 농정어젠더의 발굴과 관리 중심, 지자체는 어젠더의 실현을 위한 지역단위의 구축 프로젝트 개발</li> </ul>

\* 자료 : 한국행정연구원(2019). 『지방분권화에 대응한 조직관리 방안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 ■ 농촌진흥청 조직개편 기본방향 : 기후변화와 사회수요에 대응구조로 전환

- 첫째,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 기후변화로 인해 농축산물 생태계가 급변하고 있으며, 新기후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
- 특히, 기상재해의 빈발로 인해 농산물 생산성 및 품질 저하 문제에 대응하여 기후변화대응과 등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수급체계를 확립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농축산물 및 가축 질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둘째, **새로운 사회수요에 대한 대응기반 확립**. 일자리, 반려동물, 도시농업, 치유농업 등 새로운 농축산 사회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조직기능 강화
- 도시농업 및 치유농업의 보급 확대를 통해 국민 보건증진에 기여할 수 있으며, 농업의 새로운 서비스 산업화에 기여
- 셋째,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중장기적인 연구관리 지원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로봇, 빅데이터 등의 신기술을 농기계, 종자관리, 관수, **생산예측**, 스마트팜 등의 개별 기술 등과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농업 및 축산업 유전공학 연구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하여 적용 가능한 분야를 발굴하고 신속한 연구 결과를 도출

## ■ 중앙 농정조직 개편 논의의 핵심 키워드 : 농촌, 환경, 식품

-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등 중앙 농정조직 개편 논의의 핵심 키워드는 농촌정책의 고도화, 기후위기에 대응한 환경문제에 대응 강화, 공익식불제 도입에 따른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증진, 안전한 식품 생산-소비 등 농식품 순환체계 등임

## ■ 중앙 농정조직 개편 논의의 기본 방향 : 융복합과 협치

- 자치분권에 따른 중앙 사무이양 확대로 중앙 농정조직 개편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농정조직 개편 기본방향은 연계·협력이 필요한 부문 간 융복합 촉진, 중앙과 지방, 그리고 농민과 주민 등 각 주체별 협치가 강조됨

### 3. 충남 농정목표와 농정추진체계 분석

#### 1) 2020년 농림축산국 주요 업무계획<sup>29)</sup>

##### ■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경영 안전망 확충

-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한 소득안정 장치 강화
- 식량산업 경쟁력 제고 및 스마트 원예산업 육성
- 친환경농업 확산 및 충남 안전인삼 실명제 본격 추진
- 재해로부터 안전한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 ■ 농식품 유통 혁신으로 충남 농산물 경쟁력 강화

- 안전하고 농가에 도움되는 학교급식 공급체계 개선
- 유통구조 변화 대응, 농특산물 마케팅 차별화
- 농식품 수출업체 지원 및 신규시장 개척
- 농산물 부가가치 창출로 선순환 농촌경제 구축

##### ■ 누구나 살고 싶은 미래지향적 복지농촌 조성

- 농촌형 복지체계 강화 및 사회적농업 가치 확산
- 여성·청년농업인 육성 및 농촌 일자리 창출
- 지속가능한 도농교류 및 농촌관광 활성화
-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소통을 통한 농촌 희망마을 조성

##### ■ 충남 농정 키워드 : 공익적 가치와 경영안전망, 유통혁신, 복지농촌

- 충남도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한 농가 소득안정 장치 강화를 첫 번째 농정 목표로 설정함. 이를 실현하기 위해 충남도는 2020년 충남 농어민 수당을 도입하고 예산 지원
- 이외에 유통혁신과 복지농촌 조성을 주요 농정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정책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조직과 예산이 연계되어야 할 것임

29) 충청남도 2020년 농림축산국 소관 주요업무현황 참조

## 2) 2020년 농업기술원 주요 업무계획<sup>30)</sup>

### ■ 농업 신기술 개발·보급을 통한 충남농업 성장동력 강화

- 신품종 육성 및 우량종자 보급
- ICT 융·복합 스마트 농업 확산
- 생명공학기술 개발·이용
- 미래형 경영모델 구축
- 농업·농촌을 이끌어 갈 청년농업인 육성

### ■ 생산자와 소비자 수요를 반영하는 맞춤형 기술지원

- 농업현장 실용화 기술 개발·보급
- 안전먹거리 생산 위한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안전정착
- 부가가치 향상 소규모 가공·창업 지원
- 수출농업 기술지원
- 농업인 전문교육

### ■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환경대응 능력 강화

-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운영 활성화
- 농업환경자원 변동 모니터링 및 민원 분석 지원
- 농업기상 등 농작물 재해 예방 강화
-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작목 개발

### ■ 더불어 행복한 함께하는 농업·농촌 만들기

- 지역민과 상생하는 귀농·귀촌 지원
- 농촌지역 저소득취약 계층 지원
- 도시민과 함께하는 농업·농촌 가치 확산
- 농업인학습단체 사회적 역할 강화

30) 2020년 충남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현황 참조

## 2) 충남 농업예산 분석

### ■ 충남, 농업예산 규모 9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4번째<sup>31)</sup>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9)에서 분석한 9개 광역지자체의 농정예산 합계를 살펴보면, 2019년 기준 4조 5,897억 원이며, 이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균특회계가 아닌 농식품부 소관 회계에서 나오는 국고보조금이 44.9% 차지, 균특회계 사업이 24.9%, 농업 관련 기금사업이 6.8% 순으로 분석됨
- 9개 광역지자체 농정 예산 중 중앙지원 재정이 76.6%를 차지하고, 도 자체 재원은 전체의 23.4%인 1조 729억 원 수준에 불과하여 중앙정부 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5] 도별 농업 부문 예산 규모와 비중(2019년 기준) (단위 : 억 원, %)

구분	균특회계 외의 회계	균특회계	기금	도	합계
강원	1,099(39.7)	681(24.6)	178(6.4)	812(29.3)	2,770(100.0)
경기	1,461(33.9)	549(12.8)	232(5.4)	2,066(47.9)	4,309(100.0)
충남	3,026(46.4)	1,325(20.3)	292(4.5)	1,872(28.7)	6,516(100.0)
충북	1,201(41.0)	1,050(35.9)	219(7.5)	460(15.7)	2,930(100.0)
경남	2,176(43.9)	1,604(32.4)	329(6.6)	843(17.0)	4,953(100.0)
경북	3,289(47.7)	1,641(23.8)	623(9.0)	1,342(19.5)	6,896(100.0)
전남	4,696(51.2)	2,482(27.1)	672(7.3)	1,320(14.4)	9,165(100.0)
전북	3,501(47.2)	1,906(25.7)	555(7.5)	1,450(19.6)	7,413(100.0)
제주	168(18.1)	162(17.4)	33(3.6)	564(60.8)	928(100.0)
<총계>	20,618(44.9)	11,402(24.9)	3,134(6.8)	10,729(23.4)	45,879(100.0)

\*주: 소방안전교부세는 제외한 금액

\* 김정섭 외(2019), 『지방분권을 위한 농정 추진체계 개편 방안(2/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1) 김정섭 외(2019), 『지방분권을 위한 농정 추진체계 개편 방안(2/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9개 광역지자체별 농정 예산에서 재원별 비중을 보면, 국고사업의 비율은 전남이 가장 높고(51.2%). 경북 47.7%, 경기도 33.9% 순임
- 균특회계 사업보조금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는 충북(35.9%), 경남 (32.4%), 전남(27.1%)순이며, 경기가 12.8%로 가장 낮음. **충남 균특회계 사업보조금 비율은 20.3%로 9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7번째로 나타남**
- 충남은 농업예산이 9개 도 가운데 4번째로 많았고, 도 자체 재원 비중 역시 제주, 경기, 강원 에 이어 4번째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 충남, 경영안정분야에 가장 높은 비중으로 농업 재정 투입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9) 연구결과에 따르면, 재원별로 균특회계 외 회계에서 세출 되는 농정분야 국고보조금의 경우 전북, 전남, 충남 순으로 호당 농정예산이 많은 것으로 분석
- 균특회계 보조금의 호당 농정 예산은 전북, 전남, 충북, 경남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경기도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남
- 도 자체 예산 규모를 보면, 제주와 경기가 크고 경남, 충남 등이 적은 편임
- 도별 사업유형별 농정 예산을 살펴보면, 도 전체 농정 예산 4조 5,879억 원 중 경영안정 28.0%로 가장 많이 지원되고 있음. 다음으로 생산기반정비 17.6%, 농촌활력증진 17.1% 순임
- 경영안정 분야에 가장 높은 비중으로 농업 재정을 투입하는 지역은 충남으로 그 비율이 31.6%임. 다음으로는 경북(30.6%), 전북(29.3%) 의 순임
- 생산기반에 많은 비중을 두는 지역은 전남(27.3%)과 제주(23.1%), 경남 (21.0%)
- 농촌활력증진 분야의 경우 경남(24.9%), 강원(22.5%), 충북(22.1%)이 큰 비중으로 재정 투입
- 유통소비 분야에서는 경기도가 37.3%로 가장 높은 비중을 두고 있고, 다음으로 제주가 24.6%로 나타남. 농정에서 자체 재정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유통소비 부문에 대한 지원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됨
- 도별 농정분야 예산 편성을 통해 도별 농정 중점과제에 차이를 알 수 있음
- 충남 사업유형별 농정예산 지원 순위는 경영안정(31.6%)로 가장 많고, 생산

기반(16.9%), 농촌활력(14.7%), 유통소비(10.8%), 친환경농업(6.0%), 축산업(5.5%), 인력육성과 농촌복지(각각 2.7%), 원예산업(2.2%) 순임

- 충남 농정예산은 경영안정 분야를 제외하고 여전히 생산기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36] 도별 사업유형별 재정규모(2019년 기준)

(단위 : 억 원, %)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계
경영안정	755 (27.2)	1,099 (25.5)	1,232 (24.9)	2,111 (30.6)	2,633 (28.7)	2,172 (29.3)	23 (2.5)	2,060 (31.6)	766 (26.1)	12,852 (28.0)
농자재	54 (1.9)	53 (1.2)	49 (1.0)	163 (2.4)	70 (0.8)	138 (1.9)	-	37 (0.6)	71 (2.4)	634 (1.4)
농촌복지	10 (0.3)	37 (0.9)	16 (0.3)	56 (0.8)	54 (0.6)	124 (1.7)	5 (0.5)	176 (2.7)	34 (1.2)	510 (1.1)
농촌활력	623 (22.5)	456 (10.6)	1,232 (24.9)	1,283 (18.6)	1,221 (13.3)	1,257 (17.0)	150 (16.2)	956 (14.7)	649 (22.1)	7,827 (17.1)
생산기반	269 (9.7)	402 (9.3)	1,040 (21.0)	944 (13.7)	2,505 (27.3)	1,076 (14.5)	214 (23.1)	1,098 (16.9)	510 (17.4)	8,058 (17.6)
식량생산	22 (0.8)	59 (1.4)	62 (1.3)	55 (0.8)	455 (5.0)	308 (4.2)	4 (0.4)	74 (1.1)	29 (1.0)	1,068 (2.3)
식품산업	16 (0.6)	143 (3.3)	18 (0.4)	31 (0.5)	13 (0.1)	43 (0.6)	14 (1.5)	20 (0.3)	14 (0.5)	312 (0.7)
원예산업	83 (3.0)	114 (2.6)	165 (3.3)	700 (10.1)	158 (1.7)	474 (6.4)	119 (12.8)	145 (2.2)	129 (4.4)	2,085 (4.5)
유통소비	386 (13.9)	1,607 (37.3)	222 (4.5)	241 (3.5)	230 (2.5)	461 (6.2)	228 (24.6)	706 (10.8)	93 (3.2)	4,175 (9.1)
인력육성	35 (1.3)	86 (2.0)	109 (2.2)	103 (1.5)	368 (4.0)	76 (1.0)	72 (7.7)	175 (2.7)	127 (4.3)	1,151 (2.5)
축산업	163 (5.9)	-	257 (5.2)	421 (6.1)	565 (6.2)	614 (8.3)	63 (6.8)	355 (5.5)	154 (5.2)	2,592 (5.6)
친환경농업	228 (8.2)	252 (5.9)	281 (5.7)	416 (6.0)	561 (6.1)	302 (4.1)	27 (2.9)	388 (6.0)	203 (6.9)	2,658 (5.8)
기타	127 (4.6)	1 (0.0)	269 (5.4)	372 (5.4)	332 (3.6)	367 (5.0)	9 (1.0)	326 (5.0)	152 (5.2)	1,956 (4.3)
합계	2,770 (100)	4,309 (100)	4,953 (100)	6,896 (100)	9,165 (100)	7,413 (100)	928 (100)	6,516 (100)	2,930 (100)	45,879 (100)

\* 김정섭 외(2019), 『지방분권을 위한 농정 추진체계 개편 방안(2/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4. 충남 농정 운영의 특징과 과제

### 1) 관행화된 연간 사업계획과 집행

#### ■ 단위사업별 세분화된 사업 추진으로 인한 운영·관리의 한계

- 충남도의회 내부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농림축산국 일반농업분야 사업은 총 311개이며, 농업기술원은 지도사업 278개, 연구과제 255개로 두 기관의 내역사업을 합하면 844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세분화된 사업과 운영·관리 주체 이원화로 인해 보조사업자의 유사중복 수혜 문제, 특정 수혜자에 보조사업이 집중되는 현상 등 운영·관리에 어려움
- 또한, 세분화된 사업은 현장의 특성과 사업대상자의 기존 수혜내용과 발전 정도 등을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어, 단년도 일회성 지원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사업에 대한 현장체감도가 낮아지는 결과 초래

[표 37] 농림축산국-농업기술원 사업예산 분석(2020년 기준)

구분	농림축산국		농업기술원		합 계	
	예산액	비율 (분야/총액)	예산액	비율 (분야/총액)	예산액	비율(총액)
기술개발지원분야	-	-	15,644,376	100/2.67	15,644,376	2.67
농업기반시설분야	75,453,315	100/12.53	-	-	75,453,315	12.53
복지생활환경분야	303,485,048	99.93/51.79	210,000	0.07/0.04	303,695,048	51.83
생산분야	56,307,929	93.95/9.61	3,628,203	6.05/0.62	59,936,132	10.23
유통분야	90,879,349	97.92/15.61	1,941,670	2.08/0.33	92,821,019	15.94
역량강화분야	8,599,834	32.86/1.47	20,257,220	67.14/3.0	28,857,054	4.47
기타분야	6,779,388	56.2/1.16	5,283,271	43.8/0.9	11,094,234	2.05
행정운영 경비	268,695	16.12/0.04	3,402,034	83.88/0.24	1,666,929	0.28
합계	541,773,558	91.96	50,366,774	8.04	589,168,107	100

※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서(농림축산국, 농업기술원)를 참고하여 연구진이 직접 작성

※ 농림축산국 예산에서 산림 및 축산분야(운영비 포함) 사업 및 예산은 제외

※ 농업기술원 예산 중 총무과 예산(21,471,555천원)은 제외

※ 비율(분야/총액)는 분야: 분야별 농림축산국과 농업기술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

총액: 농림축산국+농업기술원 총 예산 중 차지하는 비율 의미

## 2) 농정목표 - 계획 - 예산 - 실행조직 간 미스매칭

### ■ 농림사업 관련 법정계획과 예산, 실행조직 간 미스매칭 발생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농발계획)’을 농정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방향과 비전뿐 아니라, 지자체에서 5년 간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음
- 충남도 차원에서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법정·비법정 계획은 농발계획 이외에 농어촌정비종합계획,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 식생활교육기본계획, 푸드플랜 기본계획, 친환경농업 육성 기본계획,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기본계획,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계획 등 20여 가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됨
- 부문별·품목별 기본계획들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조직과 예산, 점검 등 구체적인 실행 항목과 연계되어야 하지만 관행적인 계획 수립에 그치는 경우가 많음

### 법정계획-예산-실행조직 간 미스매칭 사례 : 친환경농업 육성 기본계획

#### ■ 법정계획으로서 충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수립(2016년)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7조에 의거 매 5년마다 육성 계획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해야 함
- 충남도는 2016년 제4차 충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수립

#### ■ 친환경농업연구센터와 정책 연계 강화 주문

- 계획 수립 시(2016년) 충남농업기술원 내 친환경농업연구센터 개소가 확정되어, 지역 친환경농업인단체와 도 친환경농업팀에서 향후 충남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농업연구센터와 업무협력의 필요성 강조
- 친환경농업 육성 계획 수립 시 운영된 워킹그룹에 친환경농업연구센터 관계자가 참여하도록 하여, 향후 충남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농업연구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집중 토론

#### ■ 전국 최초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촉진 및 지원 조례’제정에 대응

## 한 농업·농촌 다원적 기능 촉진을 위한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역할 주문

### <충남 친환경농업 워킹그룹 추진경과 중 관련 내용>

분야	일자	참가대상(장소)	핵심내용
제5차 워킹그룹	16. 5.27	충남친환경농업 워킹그룹 참여자 (충남도청)	- 충남 농업환경보호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기본 실태파악 - 농업환경 지표의 개발 및 모니터링 방향 - 농업환경보호프로그램 도입 범위와 방법 - 충남친환경농업연구센터의 역할과 과제
제6차 워킹그룹	16. 6. 7	" (충남도농업기술원)	- 충남친환경농업연구센터 운영방안 설명 - 충남친환경농업연구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토의

### ■ 충남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에 근거, 친환경농업연구센터의 신규사업 제안, 운영실적‘0’

- 충남도의회는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계획에 근거, 전국에서 최초로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전을 위한 지원 조례’를 2018년 제정
- 충남 농업기술센터 내 친환경농업연구센터가 2018년 개소됨
-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전을 위한 지원 조례와 충남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에 근거, 친환경농업센터의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촉진프로그램 도입 되길 기대했으나 운영실적은 ‘제로’임

### <충남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계획에 담긴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사업제안>

4-3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촉진프로그램 도입	4-3-1 농업환경 개선 교육 및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 친환경농업연구센터] 농업환경교육 실시</li> <li>■ [신규 : 친환경농업연구센터] 농업 환경과 다원적 기능에 대한 시군 설명회</li> </ul>
	4-3-2 농업환경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 친환경농업연구센터] 농업환경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li> </ul>
	4-3-3 농업환경프로그램 실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농업환경프로그램 실천 지원사업</li> </ul>

### ■ 중앙정부 농정예산 구조조정에 대응한 자치농정 예산 재편 검토

- 최근 농특위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정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예산 구조조정의 원칙을 살펴보면<sup>32)</sup>, 첫째, 양적 생산증가를 자극하는 예산 사업을 우선적으로 축소. 둘째, 문재인 정부의 농정의 기본계획이라 할 수 있는 '18~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이하 농발계획)과 관련성이 적은 예산사업 축소. 셋째, 세분화되고 소액화 된 예산사업 정리
- 향후 농정예산 구조조정 시 핵심사항은 기존 산업육성 특히 양적 생산성 및 생산 증대를 목표로 하는 사업은 지속가능성과 농업농촌의 다기능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순위 조절이 불가피하다는 점임
- 기존 산업육성 특히 양적 생산성 및 생산 증대를 목표로 하는 사업 예산은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수요가 정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증가는 농업소득의 증가로 이어지지 못할 뿐 아니라, 그 혜택도 주로 상층농에게 집중되어 농가 양극화를 확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함
- 또한,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소액화 된 재정사업은 향후 중앙과 지방 간 계획협약 확대, 포괄보조 및 보편적 지불로 전환이라는 재정분권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소액 재정사업은 농정 목표보다는 특정 이익집단의 이익을 위해 활용될 유인이 클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3) 농정목표 실현을 위한 농정조직 간 업무협력 체계 미흡

#### ■ 자치분권으로 지자체 자율성과 책임성은 강화되고 있지만 업무협력 미흡

- 농림사업의 지방분권이 확대되고 있고, 범정부차원의 자치분권 기조가 확산되면서, 정책사업 실행 시 지자체의 자율성과 동시에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정책지향을 지자체에서 추진체계 속에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32) 이명현 외(2020), 『농식품 재정구조 개편 및 농정추진체계 재편 방안』,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 농정조직 간 세부·개별 사업단위로 사업 기획과 운영이 세분화되어 있어 현장과 농업인의 관점에서 종합적인 목표 설정과 추진이 이뤄지지 않음

### ■ 충남 농정조직 간 업무협력 모델 실험 필요

- 충남 농촌 현장과 농업인의 관점에서 기관별로 세분화된 사업 집행과 관리 체제를 재구성하고, 현장에서 사업 간 연계가 중요한 경우 농정조직 간 업무협력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전북에서는 청년 농업어업인 육성을 위해 농정조직 간 업무연계를 강화하고, 각 조직 간 지원내용을 명시함으로써 지자체 차원 농정목표 달성을 위한 농정조직 간 유기적 연계를 보여줌

## 전북 청년 농업어업인 육성 관련 사업 추진 사례

### ■ 청년 농업어업인 육성을 위해 농정조직 간 단계별 역할 분담

- 전북은 청년 농업인 육성단계를 예비단계와 입문단계, 정착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지원내용에 따라 농정조직 간 역할을 구분하여 명시
- 예비단계 교육과정은 교육전담조직인 전북 농식품인력개발원에서 전담하고, 입문단계에서는 청년들의 수요에 대응한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과정 역시 농식품인력개발원에 지원함
- 예비단계와 입문단계를 거친 청년 농업어업인의 정착을 지원하는 것은 전북도 농업정책과와 친환경유통과의 역할로 명시
- 동일한 청년 농업어업인 육성을 위해 농정조직 간 지원프로세스를 정립함으로써 정책 연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예비단계]

### ■ 삼락농정 농생명 진로소개 과정 교육(도 농식품인력개발원)

- 일시 / 인원 : 1기) 7.17.(화) 43명 / 2기) 7.23.(월), 39명
- 대상 / 내용 : 도내 중·고교 교사 / 농업·생명분야 현황과 진로 방향

### ■ 중학생 농업농촌 진로탐색 과정 운영(도 농식품인력개발원)

- 일시 / 인원 : 5월 ~ 11월 / 15개 학교 545명
- 내 용 : 농업·농촌의 가치 이해와 미래 비전(진로 탐색)

#### [입문단계]

■ 스마트팜 보육센터 운영 (도 농식품인력개발원)

- 스마트팜 보육센터 교육생 선발 (전북 20명 / '18. 3월)
- 교육과정 : 입문 (2개월) ⇒ 교육실습 (6개월) ⇒ 경영형 실습 (1년)

■ 스마트팜 청년인력 양성사업 (도 농업기술원)

-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 (희망농가 교육·컨설팅) : 11명
- 스마트 농업 전문가 양성(빅데이터 수집·분석, 역량강화 교육) : 11명

[정착단계]

■ 2018년 후계농업 경영인 450명 선발 지원(도 농업정책과)

- 청년 창업형 영농정착 지원 : 237명
- 월 80 - 100만원 최대 3년간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 일반 후계농 창업 자금 지원 : 213명
- 창업자금 최대 최대 3억원 지원(연2%,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청년희망(간편형) 스마트팜 확산 지원(도 친환경유통과)

- 사업량 및 사업비 : 78동(660m<sup>2</sup>/동) 17억원
- APP(앱)으로 자동 습도, 온도, 환기, 지습을 조절할 수 있는 간편형
- 스마트팜 시스템

\* 전라북도 청년 농어업인 육성 지원사업 보도자료(2018년 8월1일자)

4) 기초지자체 농정조직 개편에 대응한 광역단위 대응구조 시급

■ 기초지자체 농정조직의 융복합 추세에 광역단위 대응구조 필요

- 지자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최근 다부처 정책사업 통합추진 부서를 설치하는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음
- 충남 15개 시군 가운데 7개 지자체에서 농촌정책과 연계된 다부처 사업 통합추진 부서를 설치했거나, 설치 예정에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충남뿐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유사 사례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임. 전북 완주군은 푸드플랜과 로컬푸드, 식품가공, 식품산업, 위생안전 등 먹거리정책

관련 부서를 통합한 ‘먹거리정책과’를 2019년 신설하여 운영 중임

- 청양군도 2019년 주민자치와 농촌정책, 푸드플랜과 공공급식 등을 연계지원하기 위한 농촌공동체과를 신설 운영 중으로, 지자체 단위 다부처 정책 간 융복합 추세에 충남도 차원의 대응 필요

[표 38] 충남 도내 시군별 공동체 통합부서 신설 현황(2020년 기준)

시군명	통합부서명	통합부서업무
공주시	주민공동체과	자치분권팀, 새마을단체팀, 사회적공동체팀, 마을만들기팀
서산시	시민공동체과	주민자치팀, 혁신분권팀, 마을공동체팀, 사회적경제팀
논산시	마을자치분권과	자치새마을팀, 마을자치팀, 마을사업팀
당진시	공동체새마을과	주민자치팀, 마을공동체팀, 사회적경제팀, 새마을팀
부여군	공동체협력과	자치협력팀, 상권활성화팀, 마을공동체팀, 도시재생팀
청양군	농촌공동체과	공동체기획팀, 푸드플랜팀, 공공급식팀, 농촌개발팀, 농촌활력팀
태안군	공동체과 (2021년 예정)	주민자치팀, 공동체팀, 사회적경제팀 등 참여 예정

\* 지자체별 통합부서 설치사례를 연구진이 정리

### ■ 기초지자체, 농정부서와 농업기술센터 간 통합 추세

- 1998년 농업기술센터 지방화 이후 농정부서와 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 기술보급과 등)를 통합 운영하는 사례가 확대되고 있음
- 충남은 아산시, 공주시, 당진시, 서산시, 공주시 등이 농정부서와 농업기술센터가 통합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경남 거창군은 농정부서와 농업기술센터를 통합하고,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촌정책과 식품정책, 귀농귀촌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행복농촌과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전북 정읍시 역시 농정부서와 농업기술센터를 통합하고, 농촌정책과 사회적

경제 간 연계 통합부서인 공동체과를 2018년 신설한 것으로 나타남

-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농정부서와 농업기술센터 간 통합으로 농업정책과 현장지원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추세에 대한 충남도 광역단위 농정 추진체계 개편 검토 필요

### ■ 지역단위 농정 추진단위로서 중간지원조직 설치 확산

- 정책사업별 개별 대응체계로 작동하는 기존 농정조직으로는 농촌 현장의 복잡다기한 농정의제에 대응이 어렵고, 농촌 현장에서 유사 농정사업 간 융복합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음
- 이러한 농정 여건의 변화에 따라, 지자체 단위에서는 농정 추진체계로서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이 확대되고 있음. 농산업 분야 통합지원조직으로서 푸드플랜지원센터가 지자체별로 확산되면서 로컬푸드, 식품가공, 6차산업, 공공급식 등에 대한 통합지원체계 구축 확대
- 농촌 분야에서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신활력사업 추진단 등 중간지원조직이 기초지자체 단위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임.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경우 충남 15개 시군 가운데 계룡시를 제외한 전체 시군에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파악됨
- 시군단위 농산업 분야와 농촌분야 중간지원조직을 뛰어넘어, 주민의 입장에서 다부처 유사 정책사업 간 융복합을 위한 통합지원조직 설치로 이어지고 있음
- 충남에서는 청양군이 주민자치와 마을만들기, 푸드플랜, 향후 도시재생과 커뮤니티케어까지 연계를 염두에 둔 통합지원조직으로서 지역활성화재단을 설립하였고, 부여군과 서천군이 통합지원조직 설립을 앞두고 있음
- 이 밖에 서산시와 당진시 등 충남 도내 여러 지자체에서 통합지원체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개별 분산된 행정조직으로는 지역의 복잡다기한 의제에 대응하기 어렵게 됨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체계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확대되고 있어 행정조직 간 네트워크·협력형 추진체계에 대한 검토가 시급함

## 제 5 장

# 농림축산국-농업기술원 업무협력 활성화 방향

1. 충청남도 자치농정 틀 재정립
2. 농림축산국-농업기술원 업무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3. 농림축산국-농업기술원 업무협력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





## V. 농림축산국-농업기술원 업무협력 활성화 방향

### 1. 충청남도 자치농정 틀 재정립

#### 1) 충청남도 자치농정 기본방향

##### ■ 생산주의 농정에서 농업·농촌 공익적 기능 극대화로 농정목표 전환

- 충남 농정은 중앙정부의 농정 방향에 따라 그 대상이 농업과 농업인에 한정되어 있었고,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를 농정의 핵심목표로 하여 왔음
- 이러한 생산주의 농정은 농업생산성 향상에는 기여했지만, 도농 간 소득격차, 농촌 기초생활여건 악화, 환경악화, 농산물 과잉생산, 농가 간 양극화의 심화 등 농업·농촌 문제 해결에는 기여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농업과 농업인 대상 생산주의의 좁은 틀에서 탈피, ‘지역’과 ‘환경’의 관점에서 농업·농촌 공익적 기능 극대화를 농정목표로 설정해야 함

##### ■ 부문별 개별정책에서 지역별 통합정책으로 전환

- 충남 3농정책은 ‘농업정책·농촌정책·농민정책’의 유기적 연계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현재는 정책 뿐 아니라 농정조직 상호간 유기적 연계·협력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향후 충남 자치농정은 농업정책·농촌정책·농민정책이라는 부문별 개별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농촌지역이 지닌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극대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농업·지역·환경을 포괄하는 통합적 농촌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임
- 농업발전은 다양한 개별정책들로 구성된 패키지의 일부로서 개별정책 간 상호 연계를 통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 확산 필요
- 이를 위해서는 충남 자치농정 목표 실현을 위해 추진되어야 할 다양한 분야의 개별정책과 관련 농정조직 간 유기적 연계·협력 방안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함을 의미함

## ■ 자치분권에 대응한 농정 추진체계의 혁신

- **첫째, 정책목표 간 통합.** 충남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그동안 개별 분산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농업·농촌 관련 정책들을 통합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함. 예를 들어, 도정의 방향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이 핵심 목표인 반면, 농업기술원은 여전히 농업 신기술 개발을 통한 농업성장을 주요 목표로 제시함으로써 농정조직 간 농정철학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농정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충남도 농정 비전이라는 큰 틀에 맞춰 개별정책들이 구상되고 상호 연계성을 마련하도록 제도적 기반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 **둘째, 정책수단 간 통합.** 농정목표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마련하고, 지역여건과 농민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각자에게 맞는 정책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할 것임. 예를 들어, 현재는 생산기술과 기반조성, 유통과 가공 등 농업생산과 관련된 정책 내에서도 농정조직 간 어떤 정책수단을 활용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없음.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유사한 사업을 농정부서와 농업기술원, 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모두 지원함으로써 중복지원의 사례가 발생하기도 함. 이처럼 농정조직 간 세분화되어 개별 분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책들이 상호 연계·통합될 때 농정목표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음
- **셋째, 농정조직 간 정책 통합.** 농정조직(농정부서와 농업기술원 등) 간 개별 정책 수립과 실행 구조는 매우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농정 목표 실현을 위한 통합적 접근을 방해할 수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정조직 간 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담당할 컨트롤 타워 설치 방안 검토 필요. 충남도 농정의 통합적 기획 및 실행을 위한 총괄기구를 별도로 설치하거나, 기존 농정부서 가운데 총괄조정기능을 담당할 부서를 지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음

## 2) 자치농정 추진체계로서 농정 통합지원조직 검토

### ■ 충남 자치농정 종합계획 체계 마련

-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실현을 위해 우선 부서별 단편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사업들을 농정 목표 아래 통합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개별 부서와 농업기술원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농업·농촌 관련 기능들을 관련 부서와 농업기술원이 유기적인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인 토대가 검토되어야 함
- 예를 들어, 농업기술 관련 사업은 농업기술원, 농업생산기반 관련 사업은 농림축산국에 집중되어 있지만, 상호 연계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 있음. 이외에 유통, 가공, 역량강화 등 대부분의 사업들이 농림축산국 내 농정부서와 농업기술원에 분산되어 있어 상호 연계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 농정조직 간 정책 기획 및 집행 연계 강화로 효율적 업무 수행 촉진

- 농정조직 간 통합적인 업무조정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사업이 중복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농림축산국과 농업기술원에게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을 분야별로 분류(생산, 유통, 가공, 역량강화, 문화, 복지, 생활여건 등)하고 각 분야로 농정조직에 흩어져 있는 사업들 간 유사 중복성 검토
- 더 나아가 관련분야 사업 간 상호 연계 강화를 통해 통합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 업무 수행 촉진

### ■ 정책단계별 농정조직 간 기능분담

- 정책은 크게 “정책(policy)-프로그램(program)-사업(activity)-실행(action)”4 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 예를 들면, “유통혁신-푸드플랜패키지사업-로컬푸드활성화-로컬푸드직매장”의 형식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음. 과정에서 로컬푸드와 관련된 개별 사업들이 농림축산국 내 농정부서는 물론 농업기술원에 분산되어 실행되고

있지만, 상호 연계성을 찾기 어려운 부분이 발생하고 있음

-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농정조직 모두 개별“성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상위단계와의 연계성 또는 종합적인 성과창출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음. 즉, 지역단위 로컬푸드 생산자 조직화와 품목 확대를 통해 전반적인 로컬푸드 활성화에 대한 성과보다 직매장 몇 개, 농산물 안정성 검사 몇 건 등 개별성과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게 됨
- 따라서, 농정조직별 특성과 자율성은 보장하되, 도차원에서 의도하는 정책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정책단계별로 농정조직 간 기능 재조정을 통해 충남도의 농정목표에 부합한 정책사업이 현장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기능 연계 강화 필요

#### ■ 기초지자체와의 연계성 고려, 통합적 지원체계 보완 검토

- 현재 충남도차원에서 집행되는 농정관련 업무들은 도 농림축산국과 농업기술원에 분산되어 있지만, 시군으로 내려가면 지자체의 실정에 따라 농정과에서 담당하고 지역, 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하는 지역 등 지자체마다 소관 부서가 상이한 경우가 발생하여 상호연계가 원활하지 못함
- 예를 들어, 로컬푸드사업 전반을 충남도 농식품유통과에서 담당하고, 농업기술원에서는 로컬푸드 생산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는 과별로 분장사무를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청양의 경우처럼 농촌공동체과에서 로컬푸드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게 됨
- 동일한 정책사업에 대해 충남도 내부 농정조직, 그리고 지자체 다양한 형태의 집행부서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통합적 집행관리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을 경우 정책관리에 비효율성이 초래될 수 있음
- 안정적인 농정 추진을 위해서는 광역지자체로서 충남도 차원의 통합적 지원 체계에 대한 검토 필요

#### 광역단위 통합지원체계 구축 사례 : 전라북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

##### ■ 설립배경

- 지역 농정 추진과 관련 광역 지자체의 역할과 시군 지자체에서 자립적 기획

및 추진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있었음

- 주요한 초점은 참여형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하여 지방 농정의 주요한 과제의 발굴과 우선순위의 책정에 있었음
- 기존 지자체가 수립하는 연간 업무계획 방식에서 탈피하여, 민관이 참여하는 별도의 위원회 체계를 구성하고, 중기 수준의 농정 과제들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주로 진행되었음

### ■ 전라북도 도 단위 통합중간지원조직 구성

- 전라북도는 농촌 분야의 다양한 사업을 통합하여 현장에 적용하고, 사업지원과 역량 지원을 결합하기 위해 2010년 초기부터 농촌분야 광역 중간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왔음
- 2009년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중간지원조직으로 마을만들기협력센터를 설치한 것이 시초
- 마을만들기 협력센터는 이후 귀농·귀촌 및 농촌경제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합하여 수행하면서 [농어촌종합지원센터]로 확대되었음
- 향토산업마을, 체험휴양마을, 귀농귀촌지원센터,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등 농촌분야 지원사업을 순차적으로 통합하였음
- 2014년 향토산업마을협동조합, 2015년 마을통합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조직을 정비하여 2017년 중간지원조직을 통합하여 전라북도농어촌종합지원센터를 출범시켰음
- 도단위 통합된 중간지원조직이 활동하면서 시군단위에도 농촌사업을 통합한 중간지원조직으로 농어촌종합지원센터가 설립되고 있음

\* 자료 : 이명현 외(2020), 『농식품 재정구조 개편 및 농정추진체계 재편 방안』,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 2. 농림축산국-농업기술원 업무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1) 행정협회의 개념과 협업의 성공요인<sup>33)</sup>

#### ■ 행정협업의 개념

- 한국행정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행정협업이란 “자율적인 정부부처 간, 중앙과 지방 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정보 및 다양한 재원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며, 나아가 공공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함.
- 이 외에도 “다수의 부처(서)들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거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합적 업무 수행”으로도 정의됨

#### ■ 행정협업의 장애요인 : 기회비용과 소요시간

- 행정협업이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는 기존의 조직 운영방식과는 다른 형태의 조직 운영방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협업체계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비되며, 협업의 참여자는 협업과 관련한 업무 외에 자신이 속한 조직의 업무도 수행해야 하므로 협업참여의 기회비용 발생
- 두 번째는 단일 조직 내 일사불란한 명령체계가 아니므로 부처(서) 간 협업 시 의사결정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음
- 세 번째는 참여조직 간 권력의 차이가 크고, 참여조직의 자발적 자원공유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협업은 편익보다 비용이 더 클 가능성이 있음
- 네 번째, 협업을 추진하게 된 본래의 취지나 목적, 필요성, 상대 부처(서) 사업에 대한 합의 또는 공감 미형성 시 협업과정에서 불필요한 마찰 발생 우려가 있음

#### ■ 행정협업의 성공요인

- 문화와 가치 측면에서 행정협업의 성공요인

① 협업에 대한 참여기관 최고관리자의 관심과 지지

33) 정소윤(2016), 『부처 간 협업강화를 위한 평가제도 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자료 참조

- ② 협업의 추진과 활성화를 위한 제3기관의 적극적 지지와 지원
- ③ 협업 운영에 있어 선도기관의 존재와 역할
- ④ 협업을 공식적·비공식적으로 적극 주도할 관리자들의 존재
- ⑤ 협업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조직 내·외부 지지자들의 존재
- ⑥ 협업으로 인한 각 참여기관의 역량 및 성과 강화
- ⑦ 행정협업 추진에 적합한 인재 육성
- ⑧ 협업에 대한 정부 내외에서의 홍보

• ‘업무방식’에서 고려해야 할 성공요인

- ① 협업을 지원하는 예산의 합리적 배정과 배분
- ② 협업 참여기관 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예방과 관리
- ③ 협업 파트너 기관 조직문화에 대한 이해
- ④ 협업 관련 외부환경(지지자 등)의 요구에 대한 적극적 대응

• ‘책임성 확보’를 위해 고려해야 할 성공요인

- ① 협업에 대한 참여기관 간 명확한 책임과 권한의 분담
- ② 협업 프로그램 운영 절차의 투명성
- ③ 협업 업무 담당자를 위한 합리적 성과관리 및 인센티브 부여
- ④ 협업 성과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 ⑤ 협업의 투입·과정·산출 등을 추적할 수 있는 다양한 기법의 개발과 활용

■ 농업인과 현장의 관점에서 충남 농정조직 간 행정협업 문화 촉진

- 일반적으로 협업은 참여자들의 관계나 조직 통합 수준에 따라 그 단계를 구분할 수 있음
- 가장 낮은 수준의 협업은 ‘의사소통’으로 협업 참여자 또는 조직 간 의사소통이 진전되고 일상적인 의사소통이 이뤄지는 것이 협업의 첫 번째 단계로 볼 수 있음
- 두 번째는 ‘협력<sup>34)</sup>’이 이뤄지는 단계로 일상적인 협력이기 보다는 특정 사안이나 사업에 대해 참여자 또는 조직 간 협력이 이뤄지는 것을 의미함

34) 협력의 사전적 의미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 힘을 합쳐서 돕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

- 세 번째 단계는‘조정’으로 참여자 또는 조직 상호 간 집합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업무 또는 사업에 조정이 이뤄지는 단계로 협업에 참여자 간 중간정도의 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의미함
- 네 번째 단계는‘협업<sup>35)</sup>’단계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체과정을 여러 전문적 부문으로 나누고, 여러 사람 또는 조직이 각 부문별로 맡아서 사업을 완성하는 형태를 의미함
- 다섯 번째 단계는‘융합’으로 참여자 또는 조직이 가진 자원이나 인력 등을 합쳐 하나의 통합적 접근을 시도하는 것을 의미하며, 매우 높은 수준의 협업단계로 볼 수 있음
- 마지막 단계는‘통합’으로 말 그대로 둘 이상의 조직이나 기구를 하나로 합치는 것을 의미함

[표 39] 충남 도내 시군별 공동체 통합부서 신설 현황(2020년 기준)



\* 정소윤(2016), 『부처 간 협업강화를 위한 평가제도 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 ■ 본 연구는 농정조직 간 협업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에 중점을 두고 정리

- 충남의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실현을 위해 해결해야 할 다양한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농정조직 간 업무협력을 통한 정책성과 도출에 초점을 두고 정리함
- 특히, 충남의 대표적인 농정조직인 농림축산국과 농업기술원 간 업무협력을 위한 기반조성을 통해 향후 충남도 농정 추진체계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35) 협업은 사전적 의미로 많은 사람이 일정한 계획 아래 노동을 분담하여 협동적, 조직적으로 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협력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 2) 농림축산국-농업기술원 업무협력을 위한 제도 개선방향

### ■ 농림축산국-농업기술원 업무협력 패러다임 설정 필요

- 급변하고 있는 대내외 여건변화 속에서 충남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별 분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농정조직 간 업무협력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됨
-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이미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분산된 정부조직의 협업행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 행정안전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주요내용

- 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발굴한 행정협업과제를 행정협업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사전협의를 받은 기관의 장은 협조하도록 함
- 행정자치부 장관은 행정기관의 장이 발굴한 행정협업과제 외에 행정협업과제를 추가로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관련된 행정협업의 수요, 현황, 애로사항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조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학회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행정기관 간 이견에 대한 협의지원을 신설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은 행정협업과제의 발굴 및 수행 과정에서 관련 행정기관 간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행정기관의 협업책임관 간의 회의 등을 통하여 원활한 협의회가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협업책임관 규정을 마련하여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기획조정실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해당 행정기관의 행정협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협업책임관(당연직)으로 임명해야 하며, 이를 행정협업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함
- 마지막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행정협업성도가 우수한 행정기관을 선정하여 포상 또는 홍보할 수 있고,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협업에 이바지한 공로가 뚜렷한 공무원 등을 포상하고 인사 상 우대할 수 있도록 조치함

- 중앙정부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수혜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행정 효율성을 높이도록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음

[표 40]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주요내용

분류		조 문		주요내용
제3장 행정업무 의 효율적 수행	제1절 행정협업 의 촉진	제41조	행정협업의 촉진	행정협업 정의, 과제 발굴 및 지원
		제42조	행정협업과제의 등록	협업시스템 등록과 등록시 포함사항
		제43조	행정협업과제의 추가 발굴 등	행안부 장관의 추가 발굴, 조사 및 인정사항
		제44조	행정협업과제의 점검·관리 및 지원	진행상황 점검의무, 협업책임관 협의지원 등
		제45조	협의체 구성 및 업무협약 체결	협업과제 수행을 위한 협의체 및 업무협약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	협업책임관	협업책임관의 지위와 업무
			협업행정시스템 구축·운영	실시간 의사소통, 공동작업, 실적관리를 포함하는 전자적 협업지원시스템 구축과 운영
			행정협업시스템의 활용 촉진	활용실태의 평가·분석
			행정정보시스템의 상호 연계 및 통합	행정정보시스템의 연계나 통합추진
			행정협업조직의 설치	사무 목적, 대상, 관할이 유사한 경우 기능, 업무처리절차, 정보시스템 등을 연계하거나 시설·인력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행정협업조직 설치 가능
			행정협업 관련 시설 등의 확보	행정협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타 행정기관에서 시설, 공간, 설비 제공 가능
			행정협업문화의 조성 및 국제협력 등	행정협업 우수사례 포상 및 홍보 제도개선사업 지원
		행정협업우수기관 포상 및 홍보 등	행정협업 기여 공무원 포상 및 우대	

\* 자료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305호 일부개정 2018. 11. 27.) 요약

## ■ ‘협업포인트’와 연계한 업무협력 촉진

- 2015년 당시 행정자치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정부 협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 범정부 협업 활성화 실천방안은 정부의 조직·인사·예산·평가제도 및 관련 시스템과 정부 내 의사소통시스템을 협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함
- 행정자치부는 범정부 협업 활성화 실천방안을 토대로 협업포인트의 목적과 적용대상, 사용과 관리, 성과평가 및 인사 상 우대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협업 포인트 운영규정’을 행정자치부 훈령 제61호로 제정하여 2016년 1월29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 중앙정부는 물론 전국 55개 지자체에서 훈령으로 ‘협업포인트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행정부서 간 효율적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협업포인트 실적을 직무성과계획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함
- 충남도 농정조직 간 업무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협업 포인트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 검토

[표 41] 협업 포인트 운영 규정 주요내용

분류	조 문		주요내용
사용과 관리원칙	제1조	목적	협업 잘하는 공무원 우대하여 협업 활성화
	제4조	운영자	협업포인트 운영자 지정, 개인협업포인트, 부서 협업포인트, 특별협업포인트 부여
	제5조	기본 협업포인트 배정	배정시기와 총점
	제6조	사용 및 제한	1회 사용 포인트 지인 및 제한 규정
	제7조	배정 및 사용기준의 조정	제5조, 제6조의 조정 기준
	제8조	협업포인트 관리	협업포인트 관리규정과 지원규정
	제9조	특별협업포인트	특별포인트 관리규정과 지원규정
보상 및 성과평가	제10조	협업포인트 메시지 공개 원칙	협업포인트 메시지 내용의 공개와 예외사항
	제11조	우수자·우수부서 포상 등	우수 직원 및 우수부서 포상 규정
	제12조	성과평가 및 인사 상 우대조치	공무원 성과평가 지침과의 연계 근무성적평적 중 가점평가 특별승급 기준의 반영

\* 자료 : 협업포인트운영규정(행정안전부훈령 제70호, 2019.1.1. 일부개정)

[참고자료]

## 경상남도 협업포인트 운영규정

(제정) 2016-08-25 훈령 제 1339호  
(일부개정) 2019-07-01 훈령 제 1407호 경상남도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세부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다른 규정의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경상남도 협업포인트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협업포인트를 잘 활용하여 협업 잘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고 협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업’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도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기관 간 또는 부서 간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인력·재정·정보 등 행정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말한다.
2. ‘협업포인트’는 협업하는 직원 간 협업포인트 시스템을 통해 주고받는 포인트를 말한다.
3. ‘협업시스템’은 협업포인트를 주고받으며 협업포인트 실적 관리를 하는 ‘온-나라 이음 시스템’ (이하, 협업시스템)을 말한다.
4. ‘특별협업포인트’는 경상남도 협업포인트 운영자가 도소속 직원 중 협업에 기여하였거나 성과를 낸 직원에게 특별히 부여하는 협업포인트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경상남도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로서, 온-나라 이음 아이디를 부여받은 직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 (협업포인트 운영자)** ① 경상남도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도정책신추진단장으로 한다. <개정 2019.7.1.>

- ②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개인 협업포인트와 부서 협업포인트를 운영·관리하고 특별협업포인트를 정하여 부여한다.
- ③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시스템을 운영하며, 인사업무, 성과평가업무 등 관련 부서장과 협의하여 협업포인트의 적절한 운영·관리를 통해 협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 협업포인트 배정)** ①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매월 1일에 제3조에서 정한 직원 누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기본 협업포인트 200포인트를 배정한다.

- ② 제1항의 기본 협업포인트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포인트는 매월 말일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제6조 (협업포인트 사용 및 제한)** ① 제5조에 따라 기본 협업포인트를 배정받은 직원은 상대방 1인에 대하여 1회 10포인트씩 나누어 줄 수 있다.

- ② 협업포인트는 동일 부서(과) 소속 직원 간에는 주고받을 수 없고 동일인에 대해 월 2회까지만 줄 수 있다.
- ③ 협업포인트는 도 소속 직원 뿐 아니라, 다른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 누구에게나 줄 수 있으며 동일인에 대해 월 2회까지만 줄 수 있다.

**제7조 (협업포인트 배정 및 사용 기준의 조정)**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포인트 사용 현황을 분석하고 사용자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하여 제5조 및 제6조에서 정한 협업포인트 배정 및 사용 기준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협업포인트 관리)** ①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제6조에 따라 받은 협업포인트를 제5조 기본

협업포인트와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개인 협업포인트 현황과 부서 협업포인트 현황을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부서 협업포인트 현황은 각 부서의 현원(‘현원’은 제3조에서 정한 직원을 말한다.)이 받은 포인트의 합으로 매일 집계하여 확정·관리하여야 한다.

③ 전보·과전·휴직 등 인사로 인해 부서 소속 현원이 변동되어도 제2항에 의하여 매일 확정된 부서 협업포인트 실적은 유지된다.

④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매년 12월 31일에 개인별·부서별 연간 협업포인트 실적을 정리하여 연도별 실적으로 이관하고, 다음 해 1월 1일에 모든 협업포인트를 갱신한다. 다만, 1월 1일이 공휴일일 경우 협업포인트 갱신일을 다음연도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할 수 있다.

⑤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시스템의 전자문서, 메모보고, 담벼락 등의 ‘좋아요’ 댓글이나, ‘온-나라 지식관리’ 지식마일리지 등 협업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른 유사한 인센티브와 협업포인트 실적을 통합하여 인센티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통합·환산 기준은 협업포인트 운영자가 해당 인센티브 소관 부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⑥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시스템을 통해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정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특별 협업포인트)** ① 특별 협업포인트는 협업포인트 운영자가 협업에 특별히 기여하여 성과를 낸 개인 또는 부서를 선정하여, 그 개인 또는 해당 부서 소속 직원 전원에 대해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특별 협업포인트는 연간 총 3,000포인트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1명에게 1회 부여할 수 있는 기준 및 항목은 별도로 정한다. ③ 특별 협업포인트 실적은 제6조에 따라 공무원 개인 간 주고받는 협업포인트 실적과 별도로 관리한다.

**제10조 (협업포인트 메시지 공개 원칙)** ① 협업포인트를 보낼 때에는 상대방에게 협업을 통해 받은 도움의 내용을 간단히 기재한 감사메시지를 함께 보낸다.

② 제1항의 메시지는 협업시스템의 협업포인트 현황 게시판에 공개한다. 단,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메시지를 비공개로 전환 할 수 있다.

**제11조 (우수자 및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 등)**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포인트 성과가 우수한 직원 및 부서를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12조 (성과평가 및 인사 상 우대 조치)** ①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성과평가 담당관과 협의하여, 협업포인트 성과를 과장급 직무성과계약 지표나 부서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인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도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지침에 따라 협업포인트를 근무성적평정 중 가점평가, 특별승급 기준 등으로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 (재검토 기한)** 경상남도지사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규정 시행 전에 협업시스템으로 주고받은 협업포인트는 이 규정에 의해 주고받

은 것으로 본다.

부칙 <훈령 제1407호, 2019.7.1, 경상남도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세부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다른 규정의 개정>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① 「경상남도 공문서 표준화 관리시스템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행정과” 를 “도정혁신추진단” 으로 한다.

② 「경상남도 협업포인트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행정국장” 을 “도정혁신추진단장” 으로 한다.

③ 「경상남도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행정과장” 을 “인사과장” 으로 한다.

④ 「경상남도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정보통계담당관” 을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으로 한다.

### 3) 농림축산국-농업기술원 업무협력 기본방향

#### ■ 충남도 농정 추진체계 패러다임의 전환

- 농업·농촌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개별 분산적 농정 추진체계로는 충남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음
- 충남도 농정 비전과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농정조직 간 업무협력을 넘어 농정조직 간 협업과제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음
- 가장 바람직한 방식은 협업의 주체인 농정조직(특히, 농림축산국 내 농정부서와 농업기술원 간)들 간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농정조직 간 관행화된 업무 추진방식과 이해관계 등으로 자발적 협력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충남도의회 또는 충남도 차원에서 농정조직 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충남도 농정조직들은 도 농정비전과 목표 실현을 위해 필요한 계획의 수립·시행 시 공동으로 참여하여 협업의 대상과 방법, 필요한 자원동원 등 사업 전반에 걸쳐 농정조직 간 합의를 통해 추진되도록 함
- 충남도는 농정조직 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정보공유 및 지원 등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고, 협업과정과 결과에 대해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농정조직 간 협업을 촉진하고 장려함으로써 농정 추진체계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 마련

#### ■ 농림축산국-농업기술원 업무협력 제도화 필요성

- 충남도 대표 농정조직인 농림축산국과 농업기술원 간 업무협력은 향후 충남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실현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임
- 그러나, 오랫동안 개별 분산적인 정책추진체계에 익숙해진 두 조직 간 자발적 업무협력을 기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충남도의회와 충남도 차원에서 농정조직 간 업무협력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이미 행정안전부에서 행정기관 간 업무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관한 훈령이 제정·운영되고 있고, 광역과

기초단위 많은 지자체에서 행정기관 간 업무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협업 포인트’와 같은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충남도 역시 농정조직 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도내 농정조직 간 협업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 농림축산국-농업기술원 업무협력시스템 구축

- 오랫동안 독자적인 시스템에 따라 운영되어 오던 농림축산국과 농업기술원 두 농정조직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제도화된 업무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두 농정조직에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어야 할 것임
- 일반적으로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참고
- 첫째,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참여자 또는 참여기간 간 의견수렴 및 소통채널을 확대하여, 협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참여조직 간 충분한 사전소통을 통해 합의 도출
- 둘째, 공동의 목표 하에 협업과제 선정. 참여 조직 간 인력과 재원 등 자원 공유 방안 마련
- 셋째, 협업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피드백으로 협업을 통해 얻은 성과는 강화하고, 개선방향은 피드백을 통해 새로운 협업과제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업무협력시스템 구축 필요
- 업무협력시스템 구축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은 참여조직 간 업무협력의 전 과정을 총괄하고 협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조정, 협업 추진 시 필요한 행정업무 지원 등을 위해 ‘협업책임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함

### ■ 농림축산국-농업기술원 업무협력을 위한 조례 제정(안)

- 충남 농정조직 특히, 농림축산국과 농업기술원 간 업무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대통령령으로 정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하는 ‘충청남도 농정업무 협력 및 협약에 관한 조례’제정을 제안함
- 조례 제정 시 향후 농림축산국과 농업기술원에 한정하기보다 충남 도내 다

양한 농정조직 간 업무협력 촉진을 위해 조례 명칭을 ‘농정업무 협력 및 협약에 관한 조례’로 검토

- 조례에는 적용범위, 협업 촉진을 위한 행정의 역할, 협업과제 발굴, 협업과제의 점검·관리 및 지원, 협의체 구성 및 업무협약 체결, 협업책임관 신설, 정보시스템 연계 및 통합, 의회 보고, 평가 및 인센티브 등의 내용이 포함 되도록 함

## 충청남도 농정업무 협력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 2021.00.00 조례 제000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305호)』을 근거로 충청남도 농정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정조직 간 업무협력 및 협약 체결을 통해 농정업무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충청남도 농림축산국 소속 농정부서와 농업기술원의 업무 운영에 관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협업촉진)** ① 도지사는 농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도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도내 농정조직 간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해당 농정조직 상호간의 기능을 연계하거나 시설·장비 및 정보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식의 농정조직 간 협업을 촉진하고 이에 적합한 업무과제(이하 "협업과제"라 한다)를 발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발굴한 협업과제 수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협업과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1. 도정 실현을 위해 도내 농정조직이 공동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2. 농정조직 간 정보공유 또는 정보시스템의 상호 연계나 통합이 필요한 업무
3. 그 밖에 농정목표 실현을 위해 다른 농정조직과의 협의 및 의견수렴 등이 필요한 업무

**제4조(협업과제 발굴 등)** ① 도지사는 농정조직 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정조직의 협업과제를 발굴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업과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업인 및 단체, 소비자,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농정협업의 수요, 현황 및 애로사항 등을 조사할 수 있다.

1. 농정목표 달성을 위하여 다수의 농정조직이 함께 협력할 필요가 있는 정책 또는 사업
2. 농정조직 간 협력을 통하여 비용 또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정책 또는 사업
3. 농정조직 간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아 이견에 대한 협의·조정이 필요한 정책 또는 사업
4. 그 밖에 관련 농정조직과의 협의 결과 협업과제 발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협업과제의 점검·관리 및 지원)** ① 협업과제를 수행하는 농정조직은 상호 협조하여 그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정조직의 협업과제 수행성과를 평가·분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련 농정조직이 요청한 경우에는 협업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협의체 구성 및 업무협약 체결)** 협업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농정조직 간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협업과제의 목적, 협력 범위 및 기능 분담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협업책임관)** ① 도지사는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농정조직 간 협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협업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할 수 있다.

② 협업책임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농정조직의 협업 과제 발굴 및 수행의 총괄
2. 해당 농정조직 간 정보시스템 연계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총괄 관리
3. 해당 농정조직 간 협업 촉진을 위한 업무 절차, 관련 제도 등의 정비·개선
4. 해당 농정조직의 협업과제 수행과 관련된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조정
5. 그 밖에 농정조직 간 협업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8조(정보시스템의 상호 연계 및 통합)** ① 협업과제를 수행하는 농정조직의 장은 협업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관 간 정보시스템의 상호 연계나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협업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관련 기관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시스템의 연계·통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협업우수기관 포상 및 홍보 등)** ① 도지사는 협업성도가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여 포상 또는 홍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협업에 이바지한 공로가 뚜렷한 공무원 등을 포상하고 인사 상 우대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10조(의회 보고 등)** ① 도지사는 농정 협업이나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충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한 후 업무 협업이나 협약을 체결한다. 단,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한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도의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는 경우
3.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이 필요한 경우

② 충남도의회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사전에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농정업무 협업이나 협약을 체결한 이후 추진상황에 대하여 매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업과제가 소기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협업과제가 불가피하게 중단 또는 취소해야 하는 경우
3. 그 밖에 협업 또는 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협업과제를 취소하는 경우

부칙(2021. 00. 00. 조례 제00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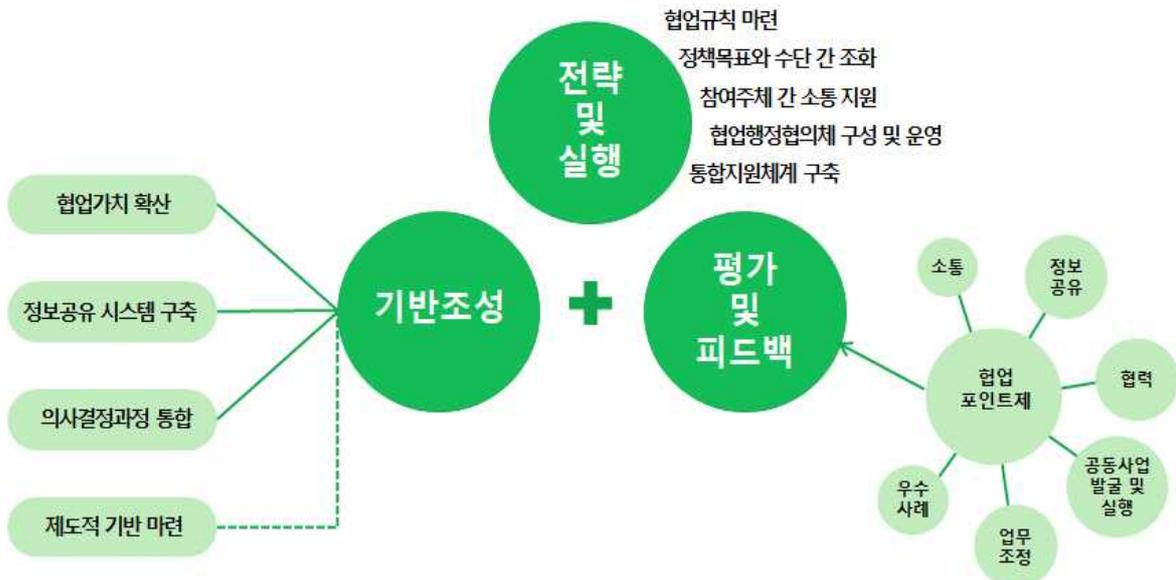
### 3. 농림축산국-농업기술원 업무협력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

#### 1) 농림축산국-농업기술원 업무협력 모델

##### ■ 농림축산국-농업기술원 업무협력 기반조성

- 농림축산국과 농업기술원 간 업무협력 촉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충남도 농정조직 간 협업에 대한 공감대 확산이 중요함
- 협업의 첫 번째 전제조건은 참여자 또는 기관 간 소통과 정보공유이며, 이를 위해 농림축산국과 농업기술원 간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여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임
- 충남도 농정 목표에 맞춰 개별 정책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국과 농업기술원 간 사전 업무협의를 통해 의사결정과정을 통합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농림축산국과 농업기술원 간 업무협력을 위해서는 앞서 서술한 조건들이 충족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충남도 자치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표 42] 농림축산국-농업기술원 업무협력 모델



## ■ 농림축산국-농업기술원 업무협력을 위한 전략 및 실행방안

- 큰 틀에서는 충남도 운영지침에 따르지만, 개별적인 운영관리규칙에 따라 운영되던 농림축산국과 농업기술원 간 업무협력을 위해서는 협업 시 지켜야 할 ‘협업규칙’을 마련하고 따르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농림축산국과 농업기술원 간 업무협력을 위해서는 우선 충남도 농정 목표에 대한 공감대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농정조직 간 정책수단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고 연계 강화에 대한 두 조직 간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함
- 특정 사업 또는 일상적인 소통 강화를 위해 농림축산국과 농업기술원 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업행정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고 정기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함
- 또한, 행정부서 순환보직제에 따른 참여자와 사업 간 불연속성에 대응하여 협업책임관을 신설하여 농정조직 간 협업 전체를 총괄하도록 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임
- 이와 함께 순환보직에 따라 농정조직 관계자의 변화와 무관하게 충남도 농정 통합지원조직을 설립, 개별 농정조직의 사업을 정책수요자의 입장에서 통합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의 대상이 될 것임

## ■ 농림축산국-농업기술원 업무협력 평가 및 피드백

- 농림축산국과 농업기술원 간 업무협력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참여 공무원들에 대한 동기부여와 인센티브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협업포인트’를 도입하여, 각 분야별로 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공무원 또는 조직을 격려하고 향후 업무평가에도 반영하도록 제도화가 필요함
- 또한, 농림축산국과 농업기술원 간 업무협력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도내 행정부서와 대외 홍보를 통해 충남도 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농정조직 간 협업을 확산시키는데 기여하도록 함

### 3) 농림축산국-농업기술원 업무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로드맵

2021년~2022년 (1차 년도)	2021~2022년 (2차 년도)	2022~2023년 (3차 년도)
<p><b>&lt;협업가치 확산&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림축산국-농업기술원 관계자 교육</li> <li>- 농림축산국-농업기술원 합동TF 구축 및 워크숍</li> <li>- 농림축산국-농업기술원 관련분야별 상호학습모임 구성 및 운영</li> </ul> <p><b>&lt;정보공유시스템구축&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림축산국-농업기술원 정보시스템 공유</li> <li>- 정보공유 범위와 내용 협의</li> </ul> <p><b>&lt;의사결정과정 통합&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림축산국-농업기술원 관련 부서 간 사전협의 제도화</li> <li>- 농림축산국-농업기술원 간 정기적인 소통 채널 운영</li> </ul> <p><b>&lt;제도적 기반 마련&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남 농정조직 협력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제정</li> <li>- 협업포인트 운영 규정 마련</li> <li>- 협업책임관 신설(행정부지사 직속)</li> <li>- 관련 매뉴얼 및 지침 마련</li> </ul>	<p><b>&lt;협업규칙 마련&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림축산국-농업기술원 간 업무협력 규칙 마련</li> <li>- 협력 규칙에 따른 평가 시행</li> </ul> <p><b>&lt;정책목표와 수단 간 조화&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림축산국-농업기술원 간 공동사업계획 수립</li> <li>- 농정목표와 주요사업, 관련 사업 간 농정조직 간 역할과 협력관계 명시</li> </ul> <p><b>&lt;참여주체 간 소통 지원&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림축산국-농업기술원 협업과제에 대해 별도의 소통 강화를 위한 추가지원 마련</li> </ul> <p><b>&lt;협업행정협의체 구성 및 운영&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정 주요 분야별 일상적인 행정협의체 구성 및 운영</li> <li>- 행정협의체 회의 정례화</li> </ul>	<p><b>&lt;통합지원체계 구축&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분야(농업생산, 6차산업, 귀농귀촌, 농촌정책 등)사업 추진체계 통합</li> <li>- 충남 농정 통합지원조직 설립</li> </ul> <p><b>&lt;평가 및 피드백&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통, 정보공유, 업무협력 단계 등을 고려하여 협업포인트 부여</li> <li>- 평가결과 인사에 반영</li> </ul> <p><b>&lt;제도 업그레이드&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제도 및 추진과정 시행착오에 대한 피드백</li> <li>- 조례 및 규정 개정 검토</li> </ul>

### 3) 기대효과

#### ■ 충남도 농정 목표에 대응한 농정조직의 공동 대응

- 충남도 전체 농정 목표와 비전 실현을 위해 각 농정조직 간 연계·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대응함으로써 충남도 농정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추진방향을 도민들에게 제시

#### ■ 정책수요자(농업인과 농촌 현장 등) 대상 농정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 그동안 개별 분산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각종 정책사업들을 농정조직 간 업무협력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수요자인 지역 농업인과 농촌 현장의 입장에 맞춰 서비스지원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정책수요자 만족도 제고
- 예를 들어, 매우 세분화된 개별사업들이 농정조직별로 시행되면서 농촌 현장에서 중복 수혜자 발생, 또는 일부 수혜자에게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농업보조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 발생

#### ■ 농정조직 간 인력과 예산 등 자원 연계를 통한 효율적 농정 추진

- 충남도 농정 목표 실현을 위해 관련 농정조직 간 인력과 예산 등 동원 가능한 자원을 연계함으로써 좀 더 안정적인 예산 내에서 농정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농정조직 간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일자리 등 지역주민이 최대한 원하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

#### ■ 충남 통합적 농정계획으로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공동대응

- ‘자치분권’확산에 따라 중앙정부는 부처별로 설계한 개별 공모방식보다 지자체와 포괄적 협약을 통해 부처별 정책사업의 융복합을 촉진하고 있음
- 충남도는 중앙부처의 계획협약 도입에 적극 대응, 농정조직 간 통합적 계획 수립을 통해 안정적으로 국비를 확보함으로써 농정사업을 체계적으로 사업 추진 가능

#### 4) 향후 과제

##### ■ 농정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 충남 농정추진체계 전면 재검토

- 자치분권의 지속적인 확대와 지역주도 균형발전정책이 본격화됨에 따라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이 가속화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농정 분권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충남차원의 대응은 아직 미미한 상황임
- 향후 재정분권에 따른 포괄보조 확대, 중앙부처별 계획협약제도의 본격 도입에 대응한 도내 농정 추진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 충남도 광역단위 농정조직 간 업무협력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기초지자체와의 농정추진체계의 전환도 시급한 과제임
- ‘지역주도·다부처·다년도 패키지사업’을 원칙으로 하는 중앙부처의 계획협약제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정조직 간 업무협력은 물론, 농촌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행정부서와의 업무협력 또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됨
- 본 연구는 농림축산국과 농업기술원 간 업무협력을 통한 충남도 농정 추진체계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지만, 향후 충남도 전체 행정부서 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의 효율적·안정적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제도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 ■ 중장기적으로 광역과 기초 간 농정 추진체계 혁신방안 마련 필요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등 중앙부처에서는 새로운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추진체계 재편에 대한 검토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음
- 특히, 중앙사무의 지방 이양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업무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계획협약제도의 도입 등 새로운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지원과 점검이 필요한 상황임
- 이러한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충남도 차원에서도 기존 농정추진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농정분권화에 대응하여 광역과 기초 지자체 간 농정 추진과정에서 역

---

할분담 및 수행체계, 지자체 단위 농정 성과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향후 충청남도 차원에서 재정분권 측면에서 광역과 기초 지자체 간 농정 추진 체계 개편방향과 중앙단위 계획협약 확대에 따른 충청남도 차원의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임
- 본 연구는 기존 개별 분산적으로 운영되던 농정 추진체계를 혁신함으로써 정책 수요자인 지역주민과 농업인, 농촌 현장의 관점에서 농정추진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농정조직 간 새로운 협업사업 기획·실행을 촉진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임

## ◆ 참고문헌 ◆

1. 한국행정연구원(2017). 『미래환경 변화와 농식품부 기능 재설정 방안 연구』 .
2. 김정섭 외(2019), 『지방분권을 위한 농정 추진체계 개편 방안(2/3)』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이명현 외(2020), 『농식품 재정구조 개편 및 농정추진체계 재편 방안』 ,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4. 정소윤(2016), 『부처 간 협업강화를 위한 평가제도 개선방안』 , 한국행정연구원.
5. 조세현(2015), 『협업행정 활성화를 위한 조직진단에 관한 연구』 , 한국행정연구원.
6. 전주상 외(2017), 『미래비전 달성을 위한 농촌진흥청 조직체계개편』 , 농촌진흥청.
7. 김진범 외(2019), 『정부·지자체 협력기반 한국형 계획계약제 발전방안 연구』 ,  
국가균형발전위원회·국토교통부.
8.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9), 『지방분권시대 농촌지역개발의 거버넌스 정립방안 연구』 ,  
농림축산식품부
9. 이현우(2019),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과 지방정부의 재정혁신 전략 연구』 ,  
경기연구원.
10. 농림축산식품부(2019). 『지방분권시대, 농촌정책이 가야 할 길,  
제25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자료집.』
11. 한국능률협회(2020), 『효율적 조직관리를 위한 자체 조직진단 연구』 ,  
농림축산식품부.
12. 안혁근(2015), 『중앙-지방 간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방안』 , 한국행정연구원.
13.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8), 『포괄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 .
14. 서정민 외(2019), 『청양군마을만들기기본계획』 , 지역재단 지역순환경제센터.
15. 서정민 외(2019), 『청양군마을만들기실행계획』 , 지역재단 지역순환경제센터.
16.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2020.8), 「농어업·농어촌 분야 대전환을 위한 그린뉴딜이  
방향과 과제(초안)
17. 기획재정부(202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 .
18. 기획재정부(2019),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 .
19. 기획재정부(2018),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 .

- 
20. 농림축산식품부(2019), 「2020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설명회 자료」 .
  21. 농림축산식품부(2019),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사업 시행지침서」
  22. 농림축산식품부(2018), 「신활력플러스사업 설명자료」 .
  23. 김호(2010.6), 「농정 거버넌스의 구축방안」 , 시선집중 101-1호, GS&J,
  24. 유정규(2010.6), 「지방자치시대, 농정 거버넌스의 구축 방안과 역할 모색」 , 시선집중 제102-2호, GS&J,
  25. <http://www.mafra.go.kr/2019plan/1727/subview.do>.2019년 중점 추진과제 설명자료

## 부록

# 농림축산국-농업기술원 사업예산 분석(2020년 기준)

1. 기술개발/지원 분야
2. 농업기반시설 분야
3. 복지/생활환경 분야
4. 생산 분야
5. 유통 분야
6. 역량강화 분야
7. 기타 분야





[부록] 농림축산국-농업기술원 사업예산 분석(2020년 기준)

1) 기술개발/지원 분야

연번	부서명	정책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예산(천원)
1	농업기술원 기술개발국	첨단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	식량작물 안정생산기술 개발	농업기술개발지원	457,133
2				연구개발 실용화	102,100
3				벼 품질 고급화 기술개발	112,561
4				밭작물 경쟁력 향상기술 개발	117,000
5				벼섯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	78,850
6				지역농업연구기반고도화(작물연구)	62,652
7				간척지 적응 사료용 벼 품종선발	49,500
8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작목기술 개발	176,050
9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과 재배기술 개발	고품질 과실생산기술 개발	410,250
10				농업생명공학 이용 신품종 육성	130,250
11				지역농업연구기반고도화(원예연구)	475,000
12				스마트팜 빅데이터 활용 기술 개발	94,485
13				농업환경 종합관리기술 개발	210,250
14			친환경 농업기술 개발	작물 병해 종합관리기술 개발	126,479
15				작물 해충 종합관리기술 개발	225,000
16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마늘주요병해충제이기술개발)	40,000
17				친환경농업 현장 실용화 연구개발	124,674
18				토종 자생식물 활용 천연살충제 개발	155,000
19				농업 신기술 시범	3,931,000
20			친환경 고품질 안전 농축산물 생산기술 보급	축산물 품질고급화와 안전성 향상 기술보급	310,200
21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	22,000
22				최고품질 원예작물생산 기술지원	1,282,500
23				다원적 부가가치 실용기술 보급	99,150
24				농업인교육 및 과학영농시설 운영	54,700

연번	부서명	정책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예산(천원)
25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농업기술보급 및 전문농업인 육성	농촌지도 기능강화 및 농업인력육성	농업기술보급사업 활성화 지원	98,788
26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 실증포 운영 지원(시군자본)	100,000
27				경영합리화 연구개발	11,050
28				농촌자원활용체험기술보급(시군)	25,000
29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기술 개발	84,850
30				지역농업연구기반고도화(농식품가공)	76,000
31				지역특화작목개발(생강가공)	25,000
32	농업기술원 과채연구소	일등품질 과채 생산기술 연구활동 육성	경쟁력 있는 과채산업 육성	과채 신제품 육성	425,500
33				과채산업 경쟁력 강화	22500
34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과채)	800
35				지역연구기반고도화	157,000
36	농업기술원 딸기연구소	일등품질딸기생산기술 •연구활동육성	경쟁력 있는 딸기산업 육성	딸기 신제품 육성	477,475
37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딸기)	800
38				지역농업연구기반고도화(딸기)	48,000
39				고품질 딸기 생산 연구활동 지원(관리)	20,000
40				딸기산업 경쟁력 강화	18,180
41	농업기술원 화훼연구소	일등품질 화훼생산기술, 연구활동 육성	경쟁력 있는 화훼산업 육성	화훼 신제품 육성	550,830
42				학술회의 참석 및 선진농가 견학	8,100
43				지역농업연구기반고도화(화훼)	375,000
44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지원(화훼)	800
45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보조)	85,000

연번	부서명	정책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예산(천원)
46	농업기술원 양념채소연구 연구소	일등품질 양념채소 생산기술, 연구활동 육성	경쟁력 있는 양념채소 산업육성	양념채소 신품종 육성	250,123
47				농촌진흥사업 현장기술지도활동 지원	800
48				양념채소 우량종주 생산 보급	123,202
49			지역특화 작목 기술개발 및 지역농업 연구기반 고도화 사업	지역특화 작목 기술개발(한지형 마늘 종구생산 보급체계 구축 및 병해충 방제기술개발)	80,000
50				지역농업연구기반고도화	240,000
51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생각고품질 재배기술, 저장기술 및 식미개선 차개발)	55,000
52	농업기술원 인삼약초연구 연구소	일등품질 인삼약초 생산기술 및 연구활동 육성	경쟁력 있는 인삼약초산업 육성	고품질 인삼약초 생산기술 개발	449,400
53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인삼 논 직파재배 안정 생산기술 개발)	80,000
54				지역농업연구기반고도화(지역연구기반 조성)(인삼)	245,000
55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지원(학술회의 참석 및 선진농가 견학)	800
56	농업기술원 구기자 연구소	일등품질 구기자 품종육성, 생산기술 연구	경쟁력 있는 구기자산업 육성	구기자 신품종 육성	317,000
57				지역농업연구기반고도화(지역연구기반조성)(구기자)	205,000
58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지원(학술회의 참석 및 선진농가 견학)	800
59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맥문동 안정생산 연구)	100,000
60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구기자 수확노력 절감연구)	80,000
61	농업기술원 종자관리소	우량종자 생산기술, 연구활동 지원	우량종자 생산 및 연구	원원종 및 원종생산비 지원(본소)	258,527
62				벼 우량종자생산	278,500
63				우량 씨감자 생산 및 연구	412,588
64				원원종 및 원종생산비 지원(논산분소)	237,255
65				수도종사 보급종생산	225,974
66	농업기술원 산업곤충연구 연구소	잠사 곤충 경쟁력 강화	우량잠종육성 및 유용곤충 연구	우량잠종 생산 보급 및 연구활동 지원	288,250
67				유용 곤충자원 육성 및 기술개발보급	99,900
68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지원(학술회의 참석 및 선진농가 견학)	800
69				지역농업연구기반고도화	155,000
<b>농업기술원 계(2.66%)</b>					<b>15,641,376</b>
<b>농림축산국+농업기술원 소계(2.66%)</b>					<b>15,641,376</b>

## 2) 농업기반시설 분야

연번	부서명	정책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예산(천원)
1	농림축산국 농업정책과	농업경쟁력 강화	농지보전 및 관리운영	농지관리 및 농촌지역개발 등 정책사업 육성	69,000
2				농지이용실태 조사원 인건비 지원	549,948
3			농촌지역개발	배수개선	35,000,000
4				농촌 소규모 양배수장 설치	950,000
5				빗물활용 농업용수 확보사업	50,000
6				농업기반정비(대구획경지정리)(전환사업)	3,014,000
7				농업기반정비(수리시설개보수)(전환사업)	3,106,000
8				농업기반정비(소규모배수개선)(전환사업)	1,440,000
9				농업기반정비(밭기반정비)(전환사업)	1,290,000
10			농업기반시설 확충	국가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	5,000,000
11				국가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시군자본)	910,000
12				한발대비용수개발	5,400,000
13				가뭄극복 농업용수개발	1,000,000

연번	부서명	정책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예산(천원)
14	농림축산국 식량원예과	고품질농산물 생산기반구축	식량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업무추진	14,957
15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20,383
16				농작물 기반시설 확충	1,447,875
17			원예특작 생산기반 시설 확충	시설원예현대화 지원	757,577
18			친환경농업기반 조성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 사업	104,000
19			인삼산업기반구축 글로벌마케팅추진	인삼산업 기반구축 지원	2,969,873
20				특용작물시설현대화 지원(인삼)	862,202
21	농림축산국 농촌활력과	농촌생활환경 기반확충	농촌지역개발	기계화경작로확포장지원	1,439,500
22			농업기반시설확충	편안한 물길조성	10,058,000
농림축산국 계(12.84%)					75,453,315
농림축산국+농업기술원 소계(12.84%)					75,453,315

### 3) 복지/생활환경 분야

연번	부서명	정책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예산(천원)
1	농림축산국 농업정책과	농업경쟁력 강화	농촌복지 증진	농촌마을 주민 공동시설 지원	450,000
2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	35,620
3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331,800
4				충남형 사회적농업 선도모델 개발 추진	221,000
5				농촌마을 공동급식 도우미 지원	450,000
6				청년농업인 연구복지 동아리 육성 지원	30,000
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60,500
8			여성농업인 육성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4,335,000
9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360,000
10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60,000
11	농림축산국 식량원예과	고품질농산물 생산기반구축	식량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충청남도 농어민 수당 지원	29,850,000
12				농작물 안정생산 보험료 지원(국가직접지원)	5,895,250
13				발농업직불금 행정비 지원(도)	16,000
14				발농업직불금 행정비 지원(시군경상)	346,000
15				발농업직불금	20,400,000
16				조건불리직불금	860,000
17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	148,000,000
18				쌀직불금 행정경비 지원(도)	58,000
19				쌀직불금 행정경비 지원(시군경상)	590,000
20				논 타작물 재배지원	12,345,128

연번	부서명	정책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예산(천원)
21	농림축산국 식량원예과	고품질농산물 생산기반구축	원예특작 생산기반 시설 확충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585,000
22				개방화 대응 과수원예농가 지원	1,350,000
23			친환경농업기반 조성	친환경농업직불	2,370,000
24				경관보전직불	830,000
25	농림축산국 농촌활력과	농촌생활환경 기반확충	농촌생활환경 정비	농촌중심지활성화(선도지구)	5,716,000
26				농촌중심지활성화(일반지구)	27,367,000
27				농촌중심지활성화	1,835,000
28				취약지역 개조(농어촌)	1,659,000
29				예당호 주변 귀농귀촌 예술인촌 형성	200,000
30				정주환경개선	16,447,250
31				기초생활거점육성	11,939,000
32				신활력플러스	4,410,000
33				청년농촌보급자리조성사업	2,395,000
34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	1,200,000

연번	부서명	정책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예산(천원)
35			도농상생 기반 구축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체험휴양)(전환사업)	230,000
36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전환사업)	57,500
37					지역단위 상생협력 추진본부 구축 지원
<b>농림축산국 계(51.66%)</b>					<b>303,485,048</b>
38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농업기술보급 및 전문농업인 육성	농촌지도 기능강화 및 인력육성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전환사업)	150,000
39			농업인 및 농산업기계교육	농촌 빈집 리모델링 지원	60,000
<b>농업기술원 계(0.04%)</b>					<b>210,000</b>
<b>농림축산국+농업기술원 소계(51.69%)</b>					<b>303,695,048</b>

#### 4) 생산 분야

연번	부서명	정책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예산(천원)
1	농림축산국 농식품유통과	선진 유통체계 구축	농산물안전관리기반조성 및 활성화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	420,000
2				GAP 안정성 분석 지원	525,200
3				GAP 인증 확산 지원	4,500
4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산지 직거래 기반조성	329,000
5	농림축산국 식량원예과	고품질농산물 생산기반구축	식량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농작업지원단 육성 운영	1,646,100
6				재해대책 경영자금 이차지원	650,000
7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안전관리 지원	18,900
8				주산지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	650,000
9				농기계임대사업소 지원	650,000
10				여성친화형농기계 구입지원	195,000
11				농기계등화장치 부착지원	185,600
12				노후농기계 대체지원	487,500
13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409,200
14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	1,300,000
15				논 타작물 단지화(시설장비)	1,860,000
16				식량작물 안정적 생산 지원	832,000
17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 지원	999,000
18				우리밀재배 생산지원	42,750

연번	부서명	정책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예산(천원)	
19			고품질 브랜드 쌀 소비촉진기반구축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4,045,000	
20	농림축산국 식량원예과	고품질농산물 생산기반구축	원예특작 생산기반 시설 확충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572,469	
21				과수 스마트팜 확산사업	11,600	
22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	348,000	
23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2,320,000	
24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870,000	
252				시설채소 고품질 생산시설 확충	1,350,000	
26				원예작물 경쟁력 강화	2,928,000	
27				고품질화훼 생산 및 수출시설지원	300,000	
28				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지원(버섯)	220,110	
29				친환경농업기반 조성	유기농업자재 지원	407,000
30					유기질비료 지원	17,228,000
31					토양개량제 지원	12,264,000
32					친환경농업 지구사업	1,340,000
33					친환경농업 인프라 구축	899,000
<b>농림축산국 계(9.58%)</b>					<b>56,307,929</b>	

연번	부서명	정책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예산(천원)
34	농업기술원 기술개발국	첨단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	식량작물 안정생산기술 개발	원원종 및 원종생산비 지원(작물연구)	58,878
35			친환경 고품질 안전 농축산물 생산기술 보급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보급	1,355,045
36				재해대응 기술지원	858,280
37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250,000
38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850,000
39				스마트영농지원체계 구축	256,000
농업기술원 계(0.62%)					3,628,203
농림축산국+농업기술원 소계(10.20%)					59,936,132

## 5) 유통 분야

연번	부서명	정책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예산(천원)	
1	농식품유통과	선진 유통체계 구축	농식품 수출 경쟁력 강화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	442,708	
2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1,020,000	
3				수출용 포장디자인 및 포장재 지원	110,000	
4				농산물 수출 도 선도조직 육성	100,530	
5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산지유통조직 육성	1,228,700	
6				산지유통시설지원(자치단체)	1,365,000	
7				충남 농특산물 홍보 및 광고	135,000	
8				충남오감 안정정착 지원	738,800	
9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충남오감 육성)(전환사업)	1,500,000	
10				농산물유통시설현대화지원	981,500	
11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농사랑)(전환사업)	500,000	
12				농특산물 TV홈쇼핑 지원	54,000	
13				농산물마케팅지원(자치단체)	98,800	
14				공동선별비(자치단체)	1,484,600	
15				농특산물 파워브랜드 육성지원	267,750	
16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생산자직판장 구축사업)(전환사업)	600,000
17					로컬푸드 소비활성화 지원	50,000
18			농수산물 홍보 및 판촉 지원		130,000	
19			학교급식 추진	학교급식지원	60,650,533	
20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원	1,406,338	
21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시군자본/학교급식)(전환사업)	1,601,000	

연번	부서명	정책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예산(천원)		
22			계획생산소비체계구축	계획생산소비체계구축	28,500		
23				푸드플랜 구축 지원	199,500		
24				바른식생활교육 지원	260,000		
25				식생활교육 운영(네트워크 구축 운영)	18,000		
26	식량원예과	고품질농산물 생산기반구축	고품질브랜드쌀 소비촉진기반구축	고품질 쌀브랜드 육성사업	3,548,300		
27				고품질쌀 생산 및 유통 지원	1,152,000		
28				충남쌀 홍보 및 판촉 추진	153,000		
29	식량원예과	고품질농산물 생산기반구축	원예특작 생산기반 시설 확충	저온유통체계구축(산지저온시설)(자치단체)	479,700		
30				저온유통체계구축(저온수송차량)(자치단체)	47,190		
31			친환경농업기반 조성	친환경농업 유통 활성화	388,000		
32			인삼산업기반구축 글로벌마케팅추진	지역산업마케팅지원(전환사업)	573,300		
33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전환사업)	390,000		
34				인삼가공산업 육성	90,000		
35				농촌활력과	농촌생활환경 기반확충	농촌산업육성	지역단위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도)
36			농촌융복합산업지구조성사업(시군자본)				520,000
37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국)(전환사업)	630,000					
38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시군자본)(전환사업)	4,849,600					
39	향토산업육성사업(도)(전환사업)	34,000					
40	향토산업육성사업(시군자본)(전환사업)	1,362,000					
41	소규모 제조가공업체 HACCP 인증지원	126,000					
42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485,000					
<b>농림축산국 계(15.47%)</b>					<b>90,879,349</b>		

연번	부서명	정책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예산(천원)
43	기술개발국	첨단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	식량작물 안정생산기술 개발	고품질 브랜드쌀 품질관리	19,000
44				수출농업 활성화 기술개발 지원	391,600
45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수출 화훼류 마케팅 전략개발 및 실증)	35,000
46	농촌지원국	농업기술보급 및 전문농업인 육성	농촌지도 기능강화 및 농업인력육성	농업기술 홍보강화	53,070
47				농촌활용 융복합화	613,000
48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605,000
49				농가형 가공상품 마케팅 기술지원	100,000
50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전환사업)	25,000
51				농경문화자원 소득화 모델 구축	100,000
농업기술원 계(0.33%)					1,941,670
농림축산국+농업기술원 소계(15.80%)					92,821,019

## 6) 역량강화 분야

연번	부서명	정책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예산(천원)
1	농림축산국 농업정책과	농업경쟁력 강화	미래 농정발전 구현	미래농정 현장포럼	150,000
2				농촌공감 현장체험	4,500
3			농업인단체육성 및 정보지보급	후계농교육 지원	90,360
4				농업경영컨설팅	43,200
5				농업인단체 육성	270,000
6			여성농업인 육성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	33,000
7	농림축산국 식량원예과	고품질농산물 생산기반구축	식량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	55,800
8				논 타작물 단지화(교육컨설팅)	241,800
9			친환경농업기반 조성	친환경농업 인력 육성	447,450
10	농림축산국 농촌활력과	농촌생활환경 기반확충	농촌생활환경 정비	주민주도마을만들기 지원(자치단체)(도)	130,000
11				살기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1,907,700
12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농촌테마공원)(전환사업)	908,000
13				시군창의	423,200
14				시군역량강화	2,348,500
15			도농상생 기반 구축	체험마을리더 교육 지원	24,658
16				농촌체험관광육성	468,708
17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	1,052,958			
<b>농림축산국 계(1.46%)</b>					<b>8,599,834</b>

연번	부서명	정책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예산(천원)
18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농업기술보급 및 전문농업인 육성	농촌지도 기능강화 및 농업인력육성	농촌지도 활력화 및 전문화	1291575
19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도)	7,200
20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시군경상)	52,500
21				농업기술원 농촌지도 기반조성(시군자본)	4,129,000
22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지원(도)	47,800
23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지원(시군경상)	146,300
24				과학영농 신기술 실용연구활동 지원(시군경상)	20,000
25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1,381,100
26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도)	4,000
27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시군)	30,000
28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민간)	50,000
29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도)	19,600
30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시군)	35,500
31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민간)	8,000
32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농업기술보급 및 전문농업인 육성	농촌지도 기능강화 및 농업인력육성	청년농업인 육성	1,137,300
33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시군경상)	90,000
34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도)	24,000
35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도운영)	2,815,000
36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	1,200,000
37				강소농 육성지원	238,000
38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도)	24,000
39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시군경상)	70,000
40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도)	31,500
41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도)	30,000

연번	부서명	정책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예산(천원)	
42				농촌생활 자원개발 지원	2,900,050	
43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농업기술보급 및 전문농업인 육성	농촌지도 기능강화 및 농업인력육성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지원	75,000	
44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도)	7,000	
45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시군경상)	23,500	
46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지원	30,000	
47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540,600	
48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농업기술보급 및 전문농업인 육성	농업인 및 농산업기계교육	실용농업인교육	208,375	
49				귀농대학 운영	20,250	
50				농업인대학(시군센터) 운영 지원	191,000	
51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	38,000	
52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	165,500	
53				전문 농업인교육	103,075	
54				ICT 스마트팜 활용기술 교육	18,794	
55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지원	960,648	
56				농업기계 운영지원	281,853	
57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시군경상)	75,000	
58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도)	61,000	
59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시군자본)	150,000	
60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도)	92,000	
61				귀농귀촌지원	290,100	
62				신규농업인(귀농귀촌)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도)	30,000	
63				신규농업인(귀농귀촌) 현장 실습교육 지원	306,000	
64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도)	28,000
65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시군)	96,600
66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682,500
농업기술원 계(3.45%)					20,257,220	
농림축산국+농업기술원 소계(4.91%)					28,857,054	

7) 기타 분야

연번	부서명	정책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예산(천원)	
1	농림축산국 농업정책과	농업경쟁력 강화	농업농촌발전기반향상	농업정책개발사업육성	122,835	
2			농정혁신 업무추진	3농정책 업무추진	2,464,800	
3			농업인단체 육성 및 정보지보급	농업정보지 보급	738,779	
4	농림축산국 식량원예과	고품질농산물 생산기반구축	고품질 브랜드 쌀 소비촉진기반구축	정부양곡관리비(지자체) 지원(직접)	68,000	
5				정부양곡관리비(지자체) 지원(시군경상)	950,974	
6			원예특작 생산기반 시설 확충	FTA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비 지원	70,000	
7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자치단체)	1,240,000	
8				채소류생산안정지원(국가직접지원)	360,000	
9			친환경농업기반 조성	인삼산업기반구축 글로벌마케팅추진	농산물생산정보시스템 유지보수	5,000
10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195,000
11					농촌다원적자원활용	130,000
<b>농림축산국 계(1.08%)</b>					<b>6,345,388</b>	

연번	부서명	정책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예산(천원)
12	농업기술원 기술개발국	첨단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	식량작물 안정생산기술 개발	지역전략작목산학연협력	540,000
13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과 채배기술 개발	도시농업의 활성화	55,571
14				충남권역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지원 사업	100,000
15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생산성 향상 모델 개발	294,050
16				친환경 농업기술 개발	지역농업연구기반고도화(친환경농업과)
17		첨단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	친환경 고품질 안전 농축산물 생산기술 보급	농업기술원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도)	48,000
18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시군경상)	260,500
19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지원(도)	16,000
20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지원(시군경상)	146,000
21				농작물병해충 관찰포 운영지원	37,050
22	국가관리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시군)			180,000	
23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농업기술보급 및 전문농업인 육성	농촌지도 기능강화 및 농업인력육성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시군자본)(전환사업)	2,440,000
24				농업경영종합정보시스템 구축	193,725
25				농산물 소득조사분석(도)	48,000
26				농산물소득조사분석(시군경상)	133,200
27				지역농업기술정보화지원(시군)	52,000
28				지역농업기술정보화지원(민간)	13,750
<b>농업기술원 계(0.81%)</b>					<b>4,748,846</b>
<b>농림축산국+농업기술원 소계(1.89%)</b>					<b>11,094,234</b>